

#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땡땡  
LGBTQ Youth Crisis Support Center DDing Dong

**이채** 법률사무소  
LAW FIRM ICHAE

연구수행기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핑통,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책임연구원	송지은, 정명화
감수	정민석, 민지희, 박상훈, 선호찬, 유승희(보통), 윤다혜(윤성현), 정용림(아멜)
자문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초등성평등연구회
번역	권동훈, 도터, 류희정, 임두리, 초이

#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 목차

### I. 서론

### II. 한국의 성소수자 학생인권보장 현실

#### 1. 이슈별 법·정책 및 제도

- 1) 차별금지 원칙과 구제
- 2) 학교시설·제도
- 3) 교육·교육과정
- 4) 보호자
- 5) 또래집단
- 6) 교직원
- 7) 혐오·차별 대응
- 8) 프라이버시·비밀보호
- 9) 기타

#### 2. 현장의 상황과 욕구 분석: 교육청, 교사, 지원기관, 청소년 인터뷰를 바탕으로

- 1) 조사 개요 및 초점집단별 특성
- 2) 주제별 조사 결과

### III. 해외 사례 검토

#### 1. 국제기구의 권고와 가이드라인

- 1) 유네스코 가이드라인 - 동성애 괴롭힘 없는 학교
- 2) UN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 성명

## 2. 학교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례

- 1) 미국 - 학교 괴롭힘 방지법
- 2) 미국 - 학교 성차별금지법(Title IX)
- 3) 영국 - 2010 평등법
- 4) 캐나다 온타리오주 - 학교 괴롭힘 방지법(Bill 13, Accepting Schools Act)
- 5) 필리핀 - 괴롭힘 금지법 및 동 시행규칙

## 3. 트랜스젠더 포용적인 학교환경을 위한 실천 지침들

- 1) 미국 교육부 -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실천의 예시
- 2) 미국 NGO -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Schools In Transition) -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
- 3) 미국 NGO - 트랜스젠더와 젠더퀴어 학생들을 위한 학교정책 모델
- 4) 캐나다 앨버타주 - 학교현장 실천 가이드라인: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존중하는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 5) 일본 문부과학성 -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세심한 대응의 실시
- 6) 일본 대학 - 오차노미즈대학 트랜스젠더 학생 입학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
- 7)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정부 - 지원 및 위험관리 플랜

## 4. 성소수자 포용적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구들

- 1) (영국) LGBT YOUTH SCOTLAND
- 2) (미국) GLSEN - 성소수자 포용적 학급 자원 개발하기
- 3) (일본) ReBit - Ally Teachers tool kit
- 4) (미국) WE ARE TEACHERS
- 5) 미국 보건복지부 - 학교의 성소수자 포용성: 자가 진단 툴
- 6)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 - '안전한 학교': 성소수자 학생들을 포용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

## 5. 요약과 함의

- 1) 관련 법령 및 제도 - 성소수자 포용적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한 토대
- 2)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 학교시설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차별 완화
- 3) 교육, 교과과정 - 성소수자 포용적 교과과정
- 4) 또래집단 및 혐오·차별 대응
- 5) 교직원의 책임과 역할
- 6) 보호자에 대한 대응
- 7) 프라이버시 및 비밀보호

## IV. 제언

- 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 나. 학교에서의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 V. 덧붙이는 글

## VI. 부록

- 해외 법·제도, 가이드 번역본

# I. 서론

---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 I. 서론

‘성소수자’란 ‘성적인 특질로 구별되어 차별받는 집단’<sup>1)</sup>을 뜻하며 이때 성적인 특질로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성별표현을 들 수 있다. 먼저 성적지향이란, 성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동성애자, 이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 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성별로서 트랜스젠더, 중성, 양성, 젠더퀴어, 여성, 남성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성별표현이란 복장, 머리스타일, 목소리, 말투 등 특정 문화 속에서 여성스럽거나 남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이나 행동을 의미한다.<sup>2)</sup>

1997년 한국의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 혐오표현이 사용된 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펼쳤다. 해당 교과서에는 ‘동성 간의 사랑이나 성행위는 에이즈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포함한 성소수자 차별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한국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보장을 촉발하는 다른 움직임으로 이어졌다.<sup>3)</sup> 그러나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한국의 성소수자 학생들은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차별에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중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관련 법·제도 및 인터뷰를 통해 살피고, 해외의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보호 사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항목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한인섭·양현아·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2002). 성적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 장서연. (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3) 휴먼라이츠워치. (2021).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한국의 학교들. 제5면. 원문 링크: <https://www.hrw.org/ko/report/2021/09/14/379591>

## II. 한국의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장 현실

---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 II. 한국의 성소수자 학생인권보장 현실

### 1. 이슈별 법·정책 및 제도

#### 1) 차별금지 원칙과 구제<sup>4)</sup>

##### 가) 법률

한국에서 현재 시행되는 교육 관련 법률 중 성적지향·성별정체성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된 법률은 없다.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률 중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각급 학교에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해당 절차는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 외 다른 법률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선언적 규정이 삽입된 것에 불과하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성소수자 학생과 관련한 부분을 보다 자세히 살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서 성별·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 등의 교육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성희롱 행위를 규정하고(제2조 3호),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서, 또는 법인, 단체, 사인에 의해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0조 제1항). 또한 진정이 없더라도 차별행위 근거가 상당하고 중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제30조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와 같이 조사를 하고 차별행위가 인

4) 장서연. (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정된 경우 구제조치, 시정, 징계 등을 조정, 권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0조, 제42조, 제44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sup>5)</sup>상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과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20. 2. 4.>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

5) 법률 제16928호, 2020. 2. 4., 타법개정

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 제40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19.]

○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2022. 1. 4.>

[전문개정 2011. 5. 19.]

## 나) 조례

한편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은 인권 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를 제정하면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방지를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sup>6)</sup>,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sup>7)</sup>,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sup>8)</sup>에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과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1.>

○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서울특별시조례 제7888호, 2021. 3. 25., 일부개정

7) 서울특별시조례 제8172호, 2021. 9. 30., 타법개정

8) 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2019. 12. 31., 타법개정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일하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9.>

② 제20조 제1항의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부서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 제7조(차별금지의 원칙) ① 어린이·청소년은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세 차례에 걸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sup>9)</sup> 중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학교교육과정에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를 돕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라. 성적소수자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내용의 수정·보완 - 2007년부터 시행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에서 특정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 또는 편견과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함<sup>10)</sup>

그러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되었고, 이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역시 마찬가지이다.

## 라) 서울시교육청 정책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성소수자 학생’을 구체적인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해당 계획안은 소수자 학생 중 하나로 성소수자 학생을 명시하고 성소수자 학생이 차별·혐오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이 조사 및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sup>11)</sup>

9) 제1차 계획 2007-2011년, 제2차 계획 2012-2016년, 제3차 계획 2018-2022년.

10) 대한민국 정부. (2007).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7쪽.

1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서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 종합계획. 8쪽.

- 1-1. 차별·혐오 없는 학교  
 1-1-1.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  
 - 차별 및 혐오 등 인권침해 사안 상담 지원  
 - 각종 교육자료, 홍보물 대상 지속적인 성평등 모니터링 강화

또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2020년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제작하여 게시하였는데, 여기에도 학생이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sup>12)</sup>

### 1. 학생생활규정

####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③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위 예시안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하여 2017년도에 마련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학교현장에 맞게 일부 개정한 것이다.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규정의 주체는 각 학교이며, 해당 예시안은 각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제작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 2) 학교시설·제도

서울시교육청은 트랜스젠더나 젠더퀴어 등 성소수자 학생이 주민등록상의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에 따라 학교, 반에 배정되거나 화장실, 탈의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나 교육을 마련하고 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원문 링크: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8399&ctgCd=209>

지 않다.

### 3) 교육·교과과정

교육부는 2015년 성교육 표준안을 수립하고 이를 2017년 개정하였는데, 해당 표준안에는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중 윤리 등과 관련한 교과목에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존재 및 개념은 거의 다뤄지지 않는데, 실제로 ‘사회’ 및 ‘도덕’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고등학교 「사회」 검정 교과서 5종 및 고등학교 「사회·문화」 검정 교과서 3종을 분석한 결과, 성소수자라는 단어 자체가 공식적인 교육과정의 텍스트로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았다.<sup>13)</sup>

또한 교과서에 포함된 성소수자에 대한 기술이 차별적인지 여부 등 대한 검정기준 역시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일례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가 성소수자를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 동성애를 ‘동성 간 성적 접촉’으로 정의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기술되지 않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표명한 바 있다.<sup>14)</sup>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에 시행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하여 배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

13) 조대훈. (2014). 학교에서의 성소수자에 관한 인식과 혐오에 대한 대응. 제3회 SOGI 콜로키움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폭력과 학교 측의 책임. 24-26쪽. 원문 링크: <http://sogilaw.org/27>

14) 서울신문. (2021). 성소수자 ‘독특한 취향’ 가졌다”는 교과서…인권위 “차별 조장”. 원문 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31500029>



자의 48.0% (96명)으로 절반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으며, '성적소수자가 있다는 것만 배웠고 존중이나 차별 같은 내용은 배우지 않았다'는 응답도 38.5%, '성적소수자인 사람이 성공한 사례'를 배운 경우는 8.3%에 불과하였다.<sup>15)</sup>

#### 4) 보호자

서울시교육청은 성소수자 학생의 보호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체계나 교육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 5) 또래집단

서울시교육청은 또래집단 내에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괴롭힘 등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체계나 교육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괴롭힘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sup>16)</sup>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경우 이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교직원

교육부는 교사양성과정(상담교사 포함)에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교육부는 2021년부터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여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을 권고가 아닌 의무화하였다.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

15) 장서연. (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58쪽.

16)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대·사대 등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필수로 편성하고 각 기관에서 활용할 성인지 감수성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sup>17)</sup> 그러나 해당 교육에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 7) 혐오·차별 대응

서울시교육청은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한 혐오나 차별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하거나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혐오나 차별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경우 이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따라, 학생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 8) 프라이버시·비밀보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지만, 보호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교직원 등이 성소수자 학생의 동의 없이 해당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을 보호자에게 알리는 경우가 인권침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 외 성소수자 학생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비밀 정보로 처리하는 절차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17) 한겨레신문. (2021). 성인지 교육 안 받으면 교사 못 한다. 원문 링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3715.html>

## 9) 기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성소수자를 위한 지지 표식 부착이나 지지모임 지원 등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 2. 현장의 상황과 욕구 분석: 청소년, 교사, 지원기관, 교육청 인터뷰를 바탕으로

### 1) 조사 개요 및 초점집단별 특성

#### 가) 조사 목적

초점집단 인터뷰는 대상 집단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성소수자 학생이 실제로 경험하는 환경 및 차별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초점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해당 의견을 ‘학교에서의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 나) 연구절차

초점집단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심층 면담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각 집단별 면담 시간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포함된 인터뷰의 주요 질문은 아래와 같다.

- **성소수자 학생과 관련한 경험:** 성소수자 학생을 만나거나 지원한 경험(교사, 지원기관, 교육청), 성소수자 학생으로서 가진 고민(청소년 성소수자)
-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 성소수자 학생이 겪는 어려움(차별·혐오피해, 괴롭힘, 정신건강상 어려움, 시설이용상 어려움, 진로 고민, 탈학교, 정체성 고민 등)
- **인권보장을 위한 의견:**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한 변화 방향

초점집단은 성소수자 학생을 실제로 접하거나 혹은 그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집단을 다양한 층위에서 포섭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소수자, 교사, 지원기관, 교육

청 등 총 4개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초점집단 참여자 목록]

구분	집단	연번	인터뷰 일자	
청소년 성소수자	-	A	2021. 9. 18.	
		B		
		C		
		D		
		E		
		F		
		G		
		H		
교사	교사집단 1	I	2021. 9. 13.	
		J		
		K		
		L		
		M		
		N		
		O		
		P		
	교사집단 2	Q	2021. 9. 24.	
		R		
	교사집단 3	c	2022. 6. 25. <sup>18)</sup>	
		S		
	지원기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땃동	땃동 <sup>19)</sup>	2021. 6. 11.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Y	2021. 9. 2.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Z	2021. 9. 30.	
		a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b	2021. 10. 17.	

18) 교사집단 3은 2021. 9. 27. zoom을 통해 1차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나 연구자의 실책으로 인해 해당 인터뷰 기록이 누락되어 2022. 6. 25. 서면을 통해 2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9) 땃동 활동가 5인의 의견을 개인 구분 없이 일괄 기술하였다.

각 초점집단별 특성은 항을 바꾸어 아래에 서술할 예정이다.

## 다) 연구대상 및 특성

### (1) 청소년 성소수자

- **참여자 특성**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에서 진행한 ‘평동 식당’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이다. 인터뷰 초반에 자신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커밍아웃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소년 성소수자 참여자 특성]

연번	본인이 소개한 정체성	비고
A	FTM 팬섹슈얼	
B	여성이지만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남성을 좋아하는 게이	
C	에이섹슈얼 젠더플루이드	
D	논바이너리 트랜스남성 범성애자	탈학교 청소년
E	레즈비언	
F	양성애자	
G	팬플루이드플렉스 멀티젠더	
H	에이젠더	

- **집단 특성** : 기존에 평동에서 진행되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이유로 서로 알고 있던 청소년이 일부 있었으며, 나머지 청소년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온라인을 통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모든 참여자가 화상 카메라와 마이크, 채팅을 통해 인터뷰에 응하였다. 그 과정에서 발화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인터뷰 내용이 발생하였으며, 이하에서는 해당 내용을 ‘청소년 성소수자 익명’으로 표시하였다.

## (2) 교사

### (가) 교사집단 1

○ **참여자 특성** :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의 정기 회의에 참여한 교사들이다.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은 인권교육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존엄함을 깨닫고 자신과 타인의 차별 없는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모임이다.<sup>20)</sup>

○ **집단 특성** : 2018년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과 함께 『학교에서 무지개 길찾기』라는 제목의 ‘교사를 위한 성소수자 인권교육 가이드북’을 제작한 바 있다(2018년 6월경). 두 단체는 교육현장에서 성소수자 관련 이슈가 생기면 상호 간에 조언을 구해 왔다.

### (나) 교사집단 2

○ **참여자 특성**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교사들로서 모두 여성이며 초등학교 교사이다. S는 여성위원회의 대표이며 T는 여성위원회의 상근자이다.

○ **집단 특성**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유·초·중·고·교원을 아우르는 전국 단일 노동조합으로 교육 민주화를 실현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찾기 위해 정책협의·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총 10개의 상설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여성위원회가 그중 하나다.

20)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 (2018). 학교에서 무지개길 찾기. 제59면.

### (다) 교사집단 3

○ **참여자 특성** : 초등성평등연구회에서 활동하는 교사들로서 모두 여성이며 초등학교 교사이다.

○ **집단 특성** : 초등성평등연구회는 공교육현장에 난무하는 소수자 혐오와 성차별적 관행에 문제의식을 느낀 초등 교사들의 모임으로, 2016년 발족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초등 교사 22명은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 정기모임을 가지고 페미니즘 교육 현안에 대해 논하면서 각자의 고민과 성평등 수업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눈다.

교과서 속 성 불평등 사례 찾기, 젠더적 관점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역사 속 여성 인물을 조사하고 발표하기, 성별 간 임금 격차에 대해 알고 게임을 통해 간접 경험해보기 등 아이들과 함께 생각하고 질문하는 수업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sup>21)</sup>

### (3) 지원기관

#### (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

○ **참여자 특성**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에서 일하는 활동가들로서 상근자 5인과 대표 1인이 참여하였다.

○ **집단 특성**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NGO이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보장받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21) 초등성평등연구회, (2018). 학교에 페미니즘을. 마티. 저자소개 중 발췌



#### (나)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 **참여자 특성** :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15년 정도 근무하였고 통상 2년에 1회 가량 성소수자 학생을 상담하였다. 현재까지 내담자로 트랜스젠더 학생 5명, 동성애자 학생 2명을 만난 경험이 있다. 참여자는 본인이 성소수자 학생을 많이 만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집단 특성** :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1년부터 YMCA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전문기관이다. 「서울시 청소년시설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청소년 성교육 전문 특화시설이다. 성인지적 성교육·성상담과 문화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성문화를 일군다는 목표를 정해 활동하고 있다.

#### (4) 교육청

#####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 **참여자 특성** : Z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이며, a는 학생인권침해를 상담하고 권리를 구제하며 실태를 조사하는 학생인권조사관이다.

○ **집단 특성**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 42조(학생인권교육센터)를 근거로 설치된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산하의 센터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학생인권증진과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 **참여자 특성** : 2017년부터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하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문화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대학원에서 10대 여성의 몸에 대한 문제의식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고 이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학교 성인권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전국 5개 시도교육청과 시범운영하는 일을 진행했다.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성인권 정책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 **집단 특성** :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은 2019년 3월부터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산하의 팀이다. 학교 내 성폭력 사안 처리 및 학교 회복 지원, 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학교 성평등 교육 활성화 및 문화조성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주제별 조사 결과

### 가) 법·제도

#### (1) 공식 용어의 사용 : ‘성소수자’와 ‘양성평등’

국가·정부가 ‘양성평등’이라는 정책 방향이나 언어를 고수하는 한 교육현장에서 성소수자의 존재가 지워질 수 있다.<sup>22)</sup> 익명의 청소년 성소수자는 교육정책에서 통상 사용하는 용어인 ‘양성평등’으로는 남성, 여성이라는 이분법에 포함되지 않는 논바이너리 등의 성소수자를 포용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sup>23)</sup>

22) 연구진이 2021. 9. 13. 교사집단 1 K, M와 진행한 인터뷰

23) 연구진이 2021. 9. 18. 청소년 성소수자(익명)과 진행한 인터뷰

일상적으로 듣는 양성평등... 남자 여자에 포함이 안 되는 논바이너리는 어디로 가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사들은, 현재 어떠한 학교폭력 관련 매뉴얼도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명확히 사용해주어야만 교육과정에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한다.<sup>24)</sup>

현재 학교폭력 업무를 맡고 있는데, 소수자 학생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기능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해요. 예를 들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절차의 준비 정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원 절차는 10~20 정도가 준비된 상황이라고 보여요. 학교폭력, 성폭력 관련 매뉴얼 등을 살펴봐도 직접적으로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중략) 교육청이 ‘성소수자’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교육청이 단순히 ‘소수자’라는 명칭에 모든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명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의 교사들이 인권 교육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제가 학교 내 인권교육시 성소수자에 대해 언급하였다가 담당 장학사로부터 ‘성소수자 문제는 국가에서 인정되지 않은 문제이다’라고 연락이 온 바도 있었어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성과 관련된 고충을 심의하기 위한 신고센터등이 비교적 세심하게 마련되어 있으나(스쿨위드유 서비스 등) 여기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비하표현은 예시로 나와 있지 않아 학생이 관련 상황을 겪었을 때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24) 연구진이 2021. 9. 24. 교사집단 2 S와, 2022. 6. 25. 교사집단 3 X과 진행한 인터뷰

기존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신고율을 높이는것도 교사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와 동일한 문제의식 하에서 교사집단 3 V은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sup>25)</sup>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용어에서부터 배제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성교육, 성인지교육에 포함시켜 다루어야 합니다. 성장기 학생들은 성교육, 성인지교육에서 자신의 신체, 정신, 사회의 발달과정을 지식으로 습득하는데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소수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학생들이 알고 차별, 혐오표현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함께 지도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등에 성소수자를 명시하여 이를 위한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에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각론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 ‘성인식개선 및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통한 성소수자 피해 학생 상담·조사 지원’ 등을 제시하고 난 뒤 반성소수자단체들로부터 국민청원, 근조화환을 받는 등의 반발에 마주한 바 있다.<sup>26)</sup>

2021년 1월 12일 서울시교육청의 열린교육감실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만 3세 유치원부터 젠더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고자 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021년 2월 11일 마감 시까지 청원

25) 연구진이 2022. 6. 25. 교사집단 3 G과 진행한 인터뷰

26) 연구진이 2021. 9. 3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Z과 진행한 인터뷰

참여인의 수가 교육감 답변 요건(1만 명 이상)을 넘겨 3만 3000여 명을 달성했다. 해당 청원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만 3세에게까지 동성애 사상교육을 하며, 성소수자는 동물성애와 소아성애까지 포함하는 모호한 개념이므로 학교에서 전파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sup>27)</sup>

해당 청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2월 15일 Z 학생인권옹호관 명의로 답변을 올려 “성인권교육은 개인의 성적 권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출발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 안전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이라며 “스쿨미투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을 고려할 때 일상에 남아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이념 및 성적체성을 강요하는 반인권적 교육과는 관련성이 전혀 없으며 이를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sup>28)</sup>

이후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2021년 4월 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 ‘성소수자 만드는 서울 인권교육 반대,’(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연합) ‘탈동성애자 인권 보호하라’(영등포구 고등학생 학부모) 등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반대하는 글귀를 담은 근조화환 여러 개를 비치하였으며,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근조화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반헌법적 표현을 사용하며 성소수자 보호·지원을 강조하는 2기 계획안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3의 성을 공식화해 성적체성에 대한 혼란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성적인 반목과 갈등을 양산해 교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29)</sup>

27) 경향신문. (2021). 학생인권계획에 ‘성소수자’ 네 글자만 있다. 원문 링크: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02090600015>

28) 경향신문. (2021).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성적체성 강요 아니야”... 청원에 답변. 원문 링크: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02151424001>

29) 한겨레신문. (2021). 이른 아침, 서울시교육청에 수십 개의 ‘근조 화환’이 도착했다. 원문 링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89949.html>



[서울시교육청 앞에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보낸 근조화환 사진, ©한겨레]

## (2)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의 상담원 Y은 대통령 후보가 성소수자 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을 보고 본인의 내담자(성소수자 학생의 보호자)가 하였던 반응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sup>30)</sup>

*저와 상담을 하던 성소수자 청소년의 부모가,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로서 TV 토론을 하던 중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한 장면을 보고 많은 실망을 하였다고 말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처럼 사회 전반적인 성소수자 차별적 언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기관이나 교사들은 모두 학교의 변화를 위해 우선 차별금지법, 초·중등 교육법 등 상위법의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한다.<sup>31)</sup>

30) 연구진이 2021. 9. 2.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Y과 진행한 인터뷰

31) 순서대로 연구진이 2021. 9. 24. 교사집단 2 U과, 2021. 6. 11.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과 진행한 인터뷰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 한 성소수자 혐오발언 등에 대해 학칙으로 교내 벌점규정을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법·제도적으로 우선 차별금지법만 제정되면 학칙으로 혐오발언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현장의 변화는 차별금지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의 개정과 함께 가야 해요.

### (3) 기존 제도 등을 활용한 성소수자 학생인권보장 방안 마련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따르면, 성소수자로서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권리구제 신청을 한 경우는 없었으며 상담이 1~2건 정도 있었다. 익명의 성소수자 학생이 학생인권센터에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하여 인권조사관들이 면담을 하러 갔으나 당사자가 면담장에 나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Z은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sup>32)</sup>

실제 발생하는 침해에 비해 구제신청이 적은 이유는 아웃팅에 대한 우려로 추측돼요. 2021년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종합계획상 성소수자 인권보호 계획을 삽입하고 알게 되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에서도 성소수자 관련 신청이나 권고는 수 건 있으나 모두 대학생 이상의 성인들이 진정인이고 학생이 진정인인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성소수자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학생인권센터 인권조사관 a는 ‘지침’을, 성평등팀 성인권정책전문관 b는 ‘보고체계’를 꼽았다.<sup>33)</sup>

32) 연구진이 2021. 9. 30.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Z과 진행한 인터뷰

33) 순서대로 연구진이 2021. 9. 30.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a, 2021. 10. 17.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b와 진행한 인터뷰

인권조사관 입장에서 막막했던 것 중 하나가 성소수자 학생 관련 사안이 접수될 경우의 처리방안인데, 만약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에 이미 존재하는 지침 등을 번역하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면 교육청으로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지침이나 근거자료가 있어야 관련한 행정을 시행할 수 있기도 하고요.

성폭력 사안은 본청에 대한 보고체계가 수립되어 있는데, 성소수자 관련 사안은 본청에 문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원청 차원에서만 대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는 제도적으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보고 및 처리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편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등은 ○ 성소수자 학생이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학교, 교사 등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침 ○ 정기적인 성소수자 학생인권 실태조사(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성소수자 학생 관련 항목 포함) ○ 성소수자 학생 관련해서 사안 발생 시 교육청 담당자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매뉴얼 등을 마련 ○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구제범위에 성소수자를 명확히 포함하고 홍보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sup>34)</sup>

#### (4)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조직 마련

서울시교육청은 성소수자 학생과 관련한 인권교육은 성평등팀이, 상담이나 권리 구제는 학생인권센터에서 맡아서 시행하고 있다.<sup>35)</sup>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b는 실제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였던 당시 학생인권교육센터 a와 함께 성소수자 학생을 면담하였던 사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sup>36)</sup>

34) 연구진이 2021. 6. 11.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등과 진행한 인터뷰

35) 연구진이 2021. 9. 30.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Z과 진행한 인터뷰

36) 연구진이 2021. 10. 17.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b와 진행한 인터뷰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의 입학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성평등팀의 저와 학생인권센터의 a 조사관님이 함께 해당 학생을 만나러 간 경험이 있어요. 해당 학생은 처음에는 긴장한 것 같았으나 나중에는 인터뷰를 끝내면서 많이 편하고 친해진 제스처를 보였던 기억이 나요. 해당 학생은 ‘교육청에서 면담을 한다고 해서 빅타이를 맨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놀랐다’라고 말하였고, 당시 제가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평등을 통해서 받은 해외가이드 및 서울시교육청 인권 관련 정보 홍보물을 전달해주었더니 해당 학생이 저희에게 마음을 크게 놓고 편안히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당시 해당 학생이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를 살피며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을 물어보았고 그에 대해 해당 학생이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나중에는 걱정 어린 마음임을 알고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개의 팀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할 경우, 성소수자 관련 문제가 교육청의 통합적인 정책 방향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특정한 사례로만 다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sup>37)</sup> 이에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등은 교육청 내에 청소년 성소수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나 핫라인이 필요하며, 해당 기구에서 성소수자 정체성이나 문제 상황별로 다양한 사례를 축적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sup>38)</sup>

## 나)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 학교에서의 성별분리

### (1) 학교 간·학교 내 성별분리(여학교/남학교, 여학생반/남학생반)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b는 학교 내 성별이 구분된 분반을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37) 연구진이 2021. 10. 17.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b와 진행한 인터뷰

38) 연구진이 2021. 6. 11.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등과 진행한 인터뷰

트랜스젠더 학생(MTF)이 고등학교(남녀 공학이나 분반 교실 운영) 입학을 앞두고 있던 중 신입생으로 반별로 책을 나눠주는 시간(담임과 학생이 최초로 만나는 자리)에 남학생 교실로 입장해서 본인의 정체성이 알려진 사건이 있었어요. 옆 반 학생들이 ‘남학생 교실에 남학생 같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서 보러 왔다고 들었어요.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오딧세이 학교나 대안학교 같은 다른 프로그램을 안내 드렸지만 학생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교육 시스템에서 수업을 받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어요.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Y은 학교 간, 학교 내에서 학생을 성별로 분리하는 환경에서 트랜스젠더 등 비규범적 젠더를 표현하는 학생이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경험에 대해 말한다.<sup>39)</sup>

청소년 성소수자 중 학교를 그만두려고 생각한 학생을 만나본 경험이 있어요. 해당 학생의 경우 본인은 여성의 정체성인데, 남자중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검정고시를 치를까 하는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그 학생은 정규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인생에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해 계속 남자중학교를 다녔어요.

이처럼 개별 학생의 성별정체성이나 희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등록상의 성별만을 근거로 성별분리가 이뤄지는 학교환경에서, 트랜스젠더 등 주민등록상의 성별과의 불일치감을 느끼는 학생은 홀로 본인에게 적합한 학교를 물색하기도 한다.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b는 본인이 경험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sup>40)</sup>

39) 연구진이 2021. 9. 2.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Y과 진행한 인터뷰

40) 연구진이 2021. 10. 17.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b와 진행한 인터뷰

어떤 트랜스젠더 학생의 경우 본인이 혁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주소를 변경한 뒤, 실제로 혁신학교로 입학 배정이 되자 학생이 먼저 학교 교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나는 이러한 성정체성을 가졌는데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하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해당 학생은 교사와 어떤 교복을 입을지, 어떤 반에 배정할지 등에 대한 본인의 희망을 표현하였고 해당 교사는 학교와 학생의 희망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를 논의하였다고 해요.

만약 어떤 학생이 본인의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일반 학교로 진학하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본인의 실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혁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면, 이는 해당 학생뿐 아니라 유사한 문제를 겪는 성소수자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 (2) 학교시설 및 규정 : 화장실, 기숙사, 탈의실, 교복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된 화장실 환경에서 겪었던 다양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성중립 화장실, 락커룸(탈의실), 샤워실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sup>41)</sup>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지정성별이 여성이다보니 여자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고 꺼려져서 학교에서는 화장실을 아예 안 갈려고 해요.

저는 숏컷이고 남자 교복을 입어요. 그런 제가 여자화장실을 가면 어떤 사람은 '여기 여자화장실이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며 화장실에서 나가서 화장실 표지를 다시 확인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남자화장실에 몇 번 들어가 보았는데 이곳에서 폭력을 당할 경우, 애초에 남자화장실에

41) 순서대로 연구진이 2021. 9. 18. 청소년 성소수자 익명, D, C, 익명, D과 진행한 인터뷰

들어간 저를 원망하는 말을 더 들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어요. 포항 '달팽이 책방'이라는 서점에 성중립 화장실이 있어서 한 번 가보았는데 그때는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젠더플루이드로서 젠더가 자주 바뀌지만 남성 젠더가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예요. 그런데 현재 여고를 다니고 있어서 학생용 화장실은 여자화장실 밖에 없고, 1층에 남교사 화장실이 있어서 지나가다 보면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만 주변 시선이 걱정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학교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힘들 때가 많고 어쩔 수 없을 때 참다가 가게 돼요. 학교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요.

성중립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성중립 락커룸, 샤워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어요. 체육활동 이후 샤워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사들 역시 성중립 화장실이 있어야 건강하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며<sup>42)</sup>,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Y은 실제로 상담센터 내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한 경험을 나눠주었다.<sup>43)</sup>

상담센터만이라도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고 이를 자연스럽게 당연한 문화로 퍼져나가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에요. 저희 센터의 경우 모든 화장실을 바꾸지는 못했으나 새로 만든 건물의 경우 기존과 같이 여자, 남자로만 나뉘어있던 화장실이 아닌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어요.

42) 연구진이 2021. 9. 24. 교사집단 2 U과 진행한 인터뷰

43) 연구진이 2021. 9. 2.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Y과 진행한 인터뷰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여성, 남성용으로 나뉜 기숙사로 인해 성별 불일치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고<sup>44)</sup>,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Y 역시 본인이 상담 하였던 성소수자 학생이 남/녀로 나뉜 기숙사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언급했다.<sup>45)</sup>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 H은 남학생만 별도로 구분하여 살도록 하는 기숙사에서 에이젠더로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sup>46)</sup>

*대안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기숙학교이다 보니 남학생이 있는 방으로 배정이 되었어요. 샤워 후 실오라기 걸치지 않은 몸으로 기숙사를 왔다갔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기숙사에 구별되어 거주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전교생이 모였을 때 이에 대해 공론화를 하고 커밍아웃을 하였어요. 그 뒤 기숙사에서 웃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 현상이 줄어들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성별에 따라 구분된 교복으로 인한 불편함을 다수 드러냈다. 청소년 성소수자 E는 남성과 여성의 교복 웃웃 디자인이 상이하여 교복이 아닌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여야 했다.<sup>47)</sup>

*학기 초에 교복을 사러 갔는데 여자 교복 웃웃의 사이즈 길이가 모두 허리 높이까지였어요. 큰 사이즈로 바뀌도 길이는 똑같고 소매만 길어져서 이상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남성용 웃웃을 입을 수는 없겠냐고 물었더니 학교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반드시 다른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남성과 여성 웃웃의 디자인이 서로 다른데, 남성 교복은 더 편한 디자인이고 여성 교복은 딱 끼게 만든 거예요.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 교복 중에서 선택해서 입을 수는 있지만 웃웃은 남성 것을 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복이*

44) 연구진이 2021. 9. 18. 청소년 성소수자(익명)과 진행한 인터뷰

45) 연구진이 2021. 9. 2.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Y과 진행한 인터뷰

46) 연구진이 2021. 9. 18. 청소년 성소수자 H과 진행한 인터뷰

47) 연구진이 2021. 9. 18. 청소년 성소수자 E와 진행한 인터뷰

*아닌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학교시설 및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정책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a는 정책권고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sup>48)</sup>

*학교시설을 성소수자 학생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정책권고 등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실태조사 등이 존재해야 해요. 실태조사의 경우 교육청뿐 아니라 사설 기관 등에서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수요나 현황이 얼마나 있으며 시설 개선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이에 따른 정책권고가 이뤄질 수 있겠지요.*

#### 다) 교육·교과과정

다수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정확하게 배울 수 없다는 점을 비판하며, 일부 교사가 성소수자에 대해 교육을 하는 경우에도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한다.<sup>49)</sup>

*학교 창체<sup>50)</sup> 시간 중 성교육이나 자살예방 교육은 있는데 성소수자에 관한 교육이 없어요. 많은 친구들이 알아주면 좋을 거 같아요! 성소수자 문제는 인권의 문제인데 이를 다루지 않아 유감이에요. 많은 학생이 성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면 학교 안에서 캠페인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성소수자와 관련한 교육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는*

48) 연구진이 2021. 9. 30.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a와 진행한 인터뷰

49) 순서대로 연구진이 2021. 9. 18. 청소년 성소수자 F, B, D과 진행한 인터뷰

50) '창의적 체험활동'의 줄임말.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교과과정 이외의 활동으로, 크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4가지 세부영역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출처: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네이버 지식백과. 원문 링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5950948&categoryId=43667>

생각을 해요.

사회 교과서에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회 선생님이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읽지 않고 넘어간다던지... 아예 언급을 꺼려요.

사회문화탐구라는 교과에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단원이 있었는데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두 문단 정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트랜스젠더를 지정성별로 대하려는 언행이 말속에서 느껴지고, 개인을 존중하지 않고 시혜적인 태도로 가르쳐서 무척 불편했어요. 교육자료의 경우 해당 교사가 직접 만든 자료가 아니라 교과서에 포함된 내용이었는데 교과서의 내용 자체도 부실했고 교사의 교육내용은 더욱 부실했어요.

초등학교 교사인 c, S, G은 초등학교에서 이미 학생들은 성별이분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하는 친구들에 대한 놀림을 시작하므로, 초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도 성소수자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51)</sup>

현재 초등학교 근무 중인데, 여성스러운 남자아이나 남성스러운 여자아이에 대해 친구들이 성소수자라면서 놀리는 문화가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도 학생 활동을 할 때 남자는 축구, 여자는 발야구를 하는 등의 성별이분법적인 결과를 강화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교육 시에 성별이분법적인 구분을 하지 않는 교육적 실천이 필요해요.

젠더 표현이 통상적이지 않아 놀림을 받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초등학생이고 2차 성장, 사춘기 이후에 본인의 성정체성을 더 탐색하게 되기도 하겠지만,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성소수자에 대

51) 순서대로 연구진이 2021. 9. 13. 교사집단 1 c과, 2021. 9. 24. 교사집단 2 S와, 2022. 6. 2. 교사집단 3 G과 진행한 인터뷰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찍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 스스로에 대해 더 괴로워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니까.

차별과 혐오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게이, 레즈, 트랜스젠더 표현이 학교 내 구성원, 특히 또래집단 안에서 멸칭으로 사용되고 있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에서 성소수자 관련 지식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면 정신건강상 어려움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절 성소수자인 동급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도 괜찮은 진로 분야를 고민하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학교를 선택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교사집단 2 S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에서 다루지는 교과 가운데 성소수자와 관련한 교육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sup>52)</sup>

초등학교 교과 가운데 사회과에서 소수자, 다양성, 인권을 다루는 부분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교육이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 도덕 교과서를 보면 4학년의 문화다양성 부분에 주로 다문화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차별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 5학년에는 인권이 한 챕터로 중요하게 배정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때 학생들은 성소수자 차별에 분노하거나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교사에게 밝혀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sup>53)</sup>

52) 연구진이 2021. 9. 24. 교사집단 2 S와 진행한 인터뷰

53) 순서대로 연구진이 2021. 9. 24. 교사집단 2 S, V, 교사집단 2 U. 2022. 6. 25. 교사집단 3 X과 진행한 인터뷰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에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에서 연수를 받고 수업시간에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백래시가 심하지 않아서 하리수, 홍석천씨 같은 유명인을 사례로 넣으면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을 담당한 동료교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교사는 수업시간에 성별이분법을 깨는, 경계를 허무는 수업을 많이 했다고 해요. “남자답게/여자답게”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젠더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성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게 된다고 해요. 생물학적 남/녀 구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열어두고 이야기를 하니 학생들이 엄청난 질문을 쏟아냈다고 들었어요. 학생들도 그동안 그저 남자, 여자로만 나눠 생각해왔던 배경지식이 깨지는 순간, 붓물처럼 질문이 들어왔다고요. 성적지향에 대해서도 원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기처럼 마셔온 편견, ‘남자랑 남자랑 좋아하면 뭘!’과 같이 반자동으로 나오는 반응이 많았는데, 그러던 학생들도 위와 같은 교육을 거친 다음 다양한 성적지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잘 받아들인다고 해요. 또한 동료교사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하면서 성소수자 이야기도 했는데, 그걸 시작한 이후로 한 반에 한두 명씩, 자기가 성소수자라고,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초등 교과과정 중 성소수자를 다루는 교과는 없어요. 초등학교 교과서 어디에도 ‘성소수자,’ ‘동성애자,’ ‘퀴어’ 같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방식을 사용해요. 생활지도 중에 학생이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쓰면 ‘게이이면 안 돼? 그게 나빠? 여기도 게이 있을 수 있어. 네가 설령 종교나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이상하다고 들었더라도, 실제

로 존재하는 사람을 놀리는 말로 쓰는 게 옳을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학생이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또한 저는 현재 영어 교과를 전담하고 있어서, 영어 수업을 할 때 성소수자, 인권 관련 콘텐츠를 넣어요. 일례로 ‘국제 \*\*의 날(기념일)’을 소개하는 수업을 하면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소개하는 식이에요. 민주시민, 다문화와 관련한 수업에서도 인권의 측면에서 성소수자 부분을 짚어넣고, 체육, 보건, 실과 과목에서도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넣는 식이에요. 초등학생들은 어른보다 더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부정의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제가 아이다호 데이(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설명하면서 변희수 하사<sup>54)</sup>를 소개하고 그에게 달린 악플을 보여줬더니 학생들이 다들 분개했어요.

저는 교사 경력이 12년 정도 되는데, 그 중 졸업한 학생 중에 1명이 저에게 성소수자임을 밝혀온 일이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평소 성소수자, 퀴어와 관련된 수업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인권과 관련한 수업은 자주 진행하였기 때문에 학생이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그 친구가 저의 트위터를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트위터에서의 리트윗이나 발언을 보고 안심하고 말했을 것 같아요.

교사집단 1 I은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로 인한 학교폭력의 가능성이 생겼을 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과 연계하여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다른 교사들도 그 취지를 공감하였기에 학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다.<sup>55)</sup>

54) 트랜스젠더 여성 군인으로, 군 복무 중 트랜지션을 하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전역 처분하였다. 이후 변희수 하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 처분 취소를 위한 소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10. 7.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자회견 이후 변희수 하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인터넷 등 매체에서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표현이 증가하였고 안타깝게도, 변희수 하사는 2021. 2. 27. 세상을 떠났다.

55) 연구진이 2021. 9. 13. 교사집단 1 I과 진행한 인터뷰

평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할 때 이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는 분위기는 크지 않았어요. 당시 우연히 학교의 구성원, 특히 학생부장 교사 등이 열린 시각으로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행위는 안되는 것이다,’ ‘문제이긴 하지만 뭘지 모르긴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평등에서 나온 자료 등을 전달해드렸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해당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어요. 당시 학생부에서 기존에 성소수자 교육을 위해 책정해둔 예산이 없어서 자투리 예산을 끌어모아 8시간의 교육을 진행하였고, 교장이나 교감은 호의적인 태도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문제가 학교폭력이라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해당 교육에 동의하고 진행하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사집단 3 X은 교육과정이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아, 이와 관련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교육과정 안에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6)</sup>

교육과정상에서 성소수자를 다루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언급 및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교사는 교육과정에 근거에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꼭 성소수자 관련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학교 안에는 민원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 굳이 공격받을 만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략) 교육과정안에서 어떤식으로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sup>57)</sup> 언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교육 분야에서는 언급되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오히려 사회과 교육에서 외국의 사례 정도로 언급되거나, 교과서가 어렵다면 교사용 지도서에 교사만 읽을 수 있는 사례로라도 언급될 수 있으면 이를 근거로 해 관련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6) 연구진이 2022. 6. 25. 교사집단 3 X과 진행한 인터뷰

57) 본 괄호 안의 문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진이 추가한 내용임

또한 교사집단 2 U은 위와 같이 교육과정 상의 근거 없이 교사 개인의 역량 및 용기에 빌어 성소수자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 교사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민원의 대상이 되는 등 불합리한 희생을 치러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함을 짚어낸다.<sup>58)</sup>

*저는 생활교육이나 교과교육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지만, 그게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아닌 만큼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요. 그를 보완하기 위해 성취기준<sup>59)</sup>에 반드시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용어를 넣어야 해요. 교사들에게 중요한 건 성취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두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대응이 가능해져요.*

이처럼 교사들은 학교 내에서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청이 아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 등에서 만든 자료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b는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sup>60)</sup>

*성소수자 학생과 관련한 사례가 있을 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에서 발간한 성소수자 학생 관련 가이드 및 무지개찾기 자료집 등을 교사에게 전달하였더니 교사가 ‘이런 자료가 있는 줄 몰랐다. 감사하다’는 답을 준 바 있어요. 외부 기관에서 이미 만든 자료가 있음에도 이것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청에서 MOU 등을 체결해서 공식적으로*

58) 연구진이 2021. 9. 24. 교사집단 2 U과 진행한 인터뷰

59) 성취기준이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R. Wood와 C. Power는 standard의 의미를 처방적인 것(성취해야 할 것)과 기술적인 것(성취한 것)으로 나누었다. 이 경우 처방적으로 성취해야 할 것을 의미할 때는 ‘성취기준’으로 번역되는 것이 적합하며, 이미 성취한 것을 기술한 것을 의미할 때는 ‘성취수준’이라는 용어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성취기준은 또한 내용기준(content standard)과 수행기준(performance standard)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내용기준은 학생들이 획득하여야 할 지식과 기술 등을 서술해 놓은 것이며, 수행기준은 학생들이 실제로 알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구체적인 사례와 명확한 정의로 제시한 것을 의미한다.(한국교육평가학회(2004). 교육평가용어사전. 학지사)

60) 연구진이 2021. 10. 17.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b와 진행한 인터뷰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연수 등에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성소수자 이슈가 들어있는 책을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였지만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별도의 자료는 배포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편 위에서 언급한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은 학교 내 성소수자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여러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sup>61)</sup>

포괄적 성교육 실시가 시급해요. 교육청에서 사회참여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소수자/인권 관련 프로그램이 반드시 몇 건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도 필요하고요.

## 라) 보호자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Y은 학생 성소수자의 인권보호에 있어 보호자의 관심이 중요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sup>62)</sup>

학생 성소수자로서 특히 성인 성소수자와 가지는 차이는 부모에 더 많은 의존을 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부모의 용인이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게 되지요. 성인이 되어 경제적 독립을 하고 나면 부모의 용인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지원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소수자 학생들이 처음 상담을 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부모와의 관계예요. 부모가 학생들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설사 부모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학생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청소년 성소수자 G은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보호자에게 커밍아웃

61) 연구진이 2021. 6. 11.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과 진행한 인터뷰

62) 연구진이 2021. 9. 2.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Y과 진행한 인터뷰

웃을 하지 못한 경험을,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b는 트랜스젠더 학생이 보호자에게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해 집을 나와야 했던 사례에 대해 언급한다.<sup>63)</sup>

*가족 중 언니, 동생, 어머니 모두에게 커밍아웃을 했고 잘 받아주었는데 아버지에겐 커밍아웃을 하지 못했어요. 가족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버지가 ‘괜찮은데 내 주변에 있다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여서, 아버지에게 커밍아웃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만났던 트랜스젠더 학생은 부모님께 본인의 정체성을 밝혔을 때, 아버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강요하였다고 해요. 결국 해당 학생은 이로 인한 괴로움으로 집을 나가서 친구와 살기도 했어요.*

그러나 교사집단 1 L은 실제로 학생의 보호자가 성소수자 차별적인 관념을 드러냈을 때, 교사로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한다.<sup>64)</sup>

*올해 한 학부모가 저에게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당신이 남자 담임이니까 학생이 바뀔 수 있게 역할을 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여 당황했어요. 저는 이때 교사집단 1 모임에서 공부하였던 책인 <커밍아웃 스토리>(성소수자 부모모임<sup>65)</sup>에 대한 책을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전달하면서 ‘한 번 읽어보시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바 있어요. 하지만 이미 학부모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상태여서 더 이상 해당 학부모가 가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지적할 수는 없었어요. 학교에서 해당 학부모를 지지하거나 도움을 줄 방법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63) 순서대로 연구진이 2021. 9. 18. 청소년 성소수자 G과, 2021. 10. 17.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b와 진행한 인터뷰

64) 연구진이 2021. 9. 13. 교사집단 1 L과 진행한 인터뷰

65) 성소수자부모모임은 성소수자의 부모와 가족, 그리고 당사자들의 모임으로 2014년부터 월례 정기모임, 언론 대응, 성소수자 인권교육, 출판 활동, 성소수자 가족들 간 네트워킹 등 성소수자의 인권을 알리고 당사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s://www.pflagkorea.org/>)

뿐만 아니라 교사집단 3 G은 성소수자 학생을 지원함에 있어 경험하거나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가장 먼저 양육자와의 갈등을 떠올린다.<sup>66)</sup>

*양육자와의 갈등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학생이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고민하는 것을 돕고자 성소수자 관련 지식을 전달한다면 보호자로부터 ‘불경한 것을 가르친다(?)’는 민원이 들어오겠죠.*

이처럼 학교 내에서는 학생 보호자와 성소수자 학생과 관련한 어떤 제도도 없으나, 오히려 학교 외 상담센터 등에서는 성소수자 학생 보호자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Y 역시 마찬가지다.<sup>67)</sup>

*저의 경우 처음에는 성소수자 학생과 부모를 함께 상담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1대 1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성소수자 학생의 경우 부모가 충분히 학생의 정체성 등을 인정해준다면 해당 학생이 설사 학교나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라는 지지기반이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소수자 학생의 부모 상담에 중점을 두는 편이에요.*

*저는 성소수자 보호자와 상담을 많이 진행하였고 그들이 한두 달이 아닌 장기간을 통해 변화를 겪는 모습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통상적으로 성소수자의 보호자는 최초에는 절대로 자신의 자녀가 성소수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상담에 임해요. 그러다가 2~3년여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자녀가 성소수자임을 서서히 인정해나가는 변화를 겪게 되지요. 이를 반영해보았을 때 제도적으로 성소수자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그중에서도 시간을 충분히 두고 공감을 받는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에요.*

66) 연구진이 2022. 6. 25. 교사집단 3 G과 진행한 인터뷰

67) 연구진이 2021. 9. 2.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Y과 진행한 인터뷰

## 마) 또래집단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에서 성소수자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또래집단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꼈던 사례를 다수 보고한다. 이와 달리 청소년 성소수자 H은 본인이 성소수자 인권활동을 하는 것을 알게 된 학교의 구성원이 힘을 모아 성소수자 인권활동 지지 선언을 하였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sup>68)</sup>

*학교에서 친구들이 게이, 레즈 드립 치면서 성소수자를 웃음거리 삼는 게 불편했어요.*

*사회 발표를 위해 친구 집에서 조 활동을 하던 중 어쩌다 보니 성소수자 이야기가 나왔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트랜스젠더는 수술을 거치지 않아도 트랜스젠더인데, 친구 중 한 명이 MTF 트랜스젠더를 지칭하면서 ‘공중화장실에 들어올 거면 떼고 와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 친구에게는 커밍아웃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퀴어문화축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플래카드를 학교 이름으로 내기도 하였어요. 이런 좋은 사례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어요.*

교사집단 2 V은 또래집단 내에서 성소수자 학생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학급 약속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69)</sup>

*혐오발언을 못하도록 학급 약속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요.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되려면 친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68) 순서대로 연구진이 2021. 9. 18. 청소년 성소수자 익명, C, H과 진행한 인터뷰

69) 연구진이 2021. 9. 24. 교사집단 2 V과 진행한 인터뷰



## 바) 교직원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교사들이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한 사례를 다수 보고한다.<sup>70)</sup>

*사회시간에 선생님께서 성소수자에 대해 배우다가 실제로 만나보았는데 무섭다고 하거나 불쌍하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수업시간에 사회 선생님께서 동성애는 사회의 암적 존재라고 말하셨습니다.*

*학교 상담사 선생님한테 제가 트랜스젠더라는 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아직도 여자로 대하는 것 같아 불쾌해요.*

*바지교복/치마교복 중에 바지교복을 골랐는데, 수업시간마다 선생님이 '여자 맞냐'고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대답해야 하는 과정에서 성별 불일치감을 느꼈어요(성별에 따라 분리된 반, 저는 여자반).*

교사집단 3 W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타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하였던 사례를 보고한다.<sup>71)</sup>

*교사들이 수업 중이나 생활지도를 하며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인식을 학생들에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성소수자 학생들에게는 잘못된 인식과 혐오의 정당화를 일으키고 성소수자 청소년 당사자들에게는 교사나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70) 모두 연구진이 2021. 9. 18. 청소년 성소수자 익명(동일인 여부 불명)과 진행한 인터뷰

71) 연구진이 2022. 6. 2. 교사집단 3 W과 진행한 인터뷰

교사집단 1 M는 성소수자라고 소문이 난 학생들을 실제로 만나게 된 교사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이후 해당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던 사례를 이야기한다.<sup>72)</sup>

*얼마 전 어떤 학교에서 성소수자라는 소문이 났던 학생이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학교의 교사는 그 학생이 죽기 전 그 학생에게 소문과 관련해서 ‘일단 시험 지나가고 나서 생각하면 어때?’라는 식으로 대응하였다고 들었어요. 어떤 교사가 마음속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든, 이를 교육적 실천으로 외부에 표현하고 학생들에게 개입할 수 있어야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과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b는 모두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을 만나는 경우 교사들은 해당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점을 지적한다.<sup>73)</sup>

*교사의 경우에는 성소수자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궁금해해요. 교사에게 성소수자 인권감수성이 전혀 없다는 문제점부터 개선이 필요해요.*

*트랜스젠더 학생이 타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하여 학교를 다니기 힘든 상황이 왔으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별도의 대응방안이 없었고 당시 저희의 보고를 받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도 학교 내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본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난감해하였어요.*

반면 기존 성소수자 인권교육이나 동아리 활동을 진행한 교사들의 경우, 해당 이

72) 연구진이 2021. 9. 13. 교사집단 1 M와 진행한 인터뷰

73) 순서대로 연구진이 2021. 6. 11.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과, 2021. 10. 17.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b와 진행한 인터뷰

슈에 대해 지지적인 의사를 잠시 표현하였을 뿐인데도 그걸 들었던 학생들이 본인을 찾아와 커밍아웃하였던 경험을 여러 번 하였다.<sup>74)</sup>

7년 간 교사로 일하면서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학생을 3명 만나보았어요. 그중 한 학생은 당시 저와 전혀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교무실에 다른 교사가 많이 있었음에도 갑자기 저에게 와서 '제 여자친구가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어요. 당시 해당 학생은 제가 인권동아리 선생님이라서 그냥 왔다, 아실 것 같았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해당 학생에게 수업조차 한 적이 없는데 그 전에 인권동아리 포스터를 붙일 때 '페미니스트가 어때서?' '게이가 어때서?' 등의 문구를 삽입해 성소수자 관련 이슈를 몇 가지 던졌다는 점에서 해당 학생이 저에게 신뢰를 가졌을 것으로 짐작돼요.

2019년경 교사집단 1의 다른 교사와 학생들과 퀴어퍼레이드<sup>75)</sup>에 참여하였는데, 한 학생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에게 커밍아웃을 했어요. 저는 평소 수업시간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 있기에 해당 학생이 저에게 커밍아웃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존에도 학생이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에 대해 많은 대비를 하였는데도, 실제로 해당 학생이 커밍아웃하자 처음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이후 해당 학생은 저에게 '다른 친구에게 고백을 했는데 차였다'는 등의 연애상담도 하는 등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한 경험을 나누기도 하였어요.

저에게 한 학생이 찾아와 커밍아웃을 해서 그 학생도 저도 함께 울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어요. 당시 해당 학생이 '어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본

74) 순서대로 연구진이 2021. 9. 13. 교사집단 1 I, R, L과 진행한 인터뷰

75) 퀴어 퍼레이드는 한국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 매년 6월경 열리는 행사이다. 공식 명칭은 'PRIDE PARADE(자긍심 행진)'로,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자긍심을 담아 도심에 당당하게 행진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서울과 대구를 비롯해 부산, 전주, 경남, 제주 등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매 년 열리고 있고, 가장 규모가 큰 서울에서는 2019년 16만명이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홈페이지 설명 참조: <https://www.sqcf.org/sqcf2022>)

제가 처음이에요'라고 하기에 제가 '왜 나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싶었어?'라고 물어보았어요. 해당 학생은 제가 1학기 초에 수업을 하던 중 사랑의 형태를 설명하는 수업자료에 성소수자 커플의 이미지를 포함해두었던 것을 보았던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저는 성소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고 짧게 사랑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였는데, 그 자료 중 일부 성소수자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던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 학생은 1학기 초에 그 수업을 듣고 고민하다가 2학기 때 저에게 커밍아웃을 하였는데, 이런 것을 보면 성소수자 학생은 교사의 아주 작은 성소수자 우호적 표시에도 크게 신뢰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그 학생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교에 제가 꼭 답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학년이 바뀐 뒤에도 제가 해당 학생의 답임을 맡게 되었어요. 해당 학생은 수업에서 성소수자 관련 발표도 하고, 무지개 깃발 등도 달고 다니며, 인권동아리에서 성소수자 관련 활동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교사집단 1, 2, 3,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은 ○ 학생인권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사 대상 인권교육 및 교사, 상담사, 특수교사, 관리자 등 양성과정 및 연수에 성소수자 인권교육 포함 ○ 교원-학습 공동체에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한다.<sup>76)</sup>

한편 교사집단 2 S는 본인이 속한 학교에서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가 집단 민원을 받았던 경험을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sup>77)</sup>

*저희 학교는 5-6학년 학생들이 매년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로 체험학습을 가서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받아요. 그*

76) 연구진이 2021. 9. 30.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a, 2021. 9. 13. 교사집단 1 c, L, 2021. 9. 24. 교사집단 2 V, S, 2022. 6. 25. 교사집단 3 W, X, 2021. 6. 11.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과 진행한 인터뷰

77) 연구진이 2021. 9. 24. 교사집단 2 S와 진행한 인터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015년경 저희 학교와 같이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상당수의 학교들이 일제히 민원을 받는 일이 생겼어요. 민원내용은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동성애를 조장하니 그곳의 교육을 받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굉장히 많은 민원 전화를 받고 저희 학교 앞에서 반대자들이 시위를 하기도 했어요. 교장 선생님 이름까지 넣어서 유튜브에도 올리시고……. 그래서 학교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했는데, 체험학습이기 때문에 학부모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후 학부모들이 직접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에 가서 진행되는 교육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 뒤 학부모회는 오히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내용이 아무 문제가 없으며 더 많이 교육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민원을 넣었던 사람들이 계속 학교를 감시했고, 그때 이후로는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에 가고 싶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매년 다섯 명 정도의 학생이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그 내용은 도서관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 외 학생들은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을 아주 좋아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좋아하는 반응이 다수였어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a 역시 학생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교육을 하다가 인권침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을 받았던 교사의 사례를 언급한다.<sup>78)</sup>

학교에서 성소수자 관련 영상을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침해를 하였다면서 구제신청이 들어왔던 건도 존재했어요. 다른 경우는 한 교사가 성소수자 혐오적인 언행을 하여 인권센터에서 구제를 진행했던 적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등은 성소수자 학생 지원 교사에

78) 연구진이 2021. 9. 30.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a와 진행한 인터뷰

대한 포상(표창) 등 각종 백래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sup>79)</sup>,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Z은 현재 이와 관련해 특별히 마련된 방안은 없다고 진술한다.<sup>80)</sup>

*서울시교육청은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에 대한 별도의 보호 방안을 특별히 분리하여 만들어두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일반적인 민원 처리방안과 유사해요.*

교사집단 2 U은 성소수자 관련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sup>81)</sup>

*비합리적이고 혐오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이를 개별 교사가 감당하지 않고 교육청 차원에서 제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은 위와 같은 대체 체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상을 제안하기도 한다.<sup>82)</sup>

*성소수자 혐오성 민원에 기반해 학생에게 차별적인 대처를 하지 않도록 규 제할 필요성이 있어요.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등과 MOU 체결 및 지속적인 정책 검토·사안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성소수자 차별적인 민원 이 제기된 경우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해요. 예를 들면 젠더/섹 슈얼리티 갈등 중재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갈등을 논의하는 권위 있는 기 구를 만드는 등, 민원을 받는 교사나 학생 개인이 해당 차별 민원에 대응 하지 않고 상위 기구인 학교/교육청이 해당 차별 민원 대응의 주체가 되어 야 해요.*

79) 연구진이 2021. 6. 11.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과 진행한 인터뷰

80) 연구진이 2021. 9. 30.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Z과 진행한 인터뷰

81) 연구진이 2021. 9. 24. 교사집단 2 U과 진행한 인터뷰

82) 연구진이 2021. 6. 11.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과 진행한 인터뷰

이들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성소수자 혐오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면, 개별 학교가 그러한 민원을 근거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적인 대응을 하여왔던 관행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를 트랜스젠더 학생과 함께 공부하게 만들 수 없다는 취지의 차별적인 민원이 학교에 접수되었고, 학교가 해당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퇴를 선택해야 했던 사례<sup>83)</sup> 등을 보면 더더욱 교육청 차원의 민원 대응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트랜스젠더 학생이 입학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자 다른 학부모 중 일부가 ‘트랜스젠더 학생이 계속 이 학교에 다니면 내 자녀를 타교로 전학시키겠다’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던 상황이었어요. 결국 트랜스젠더 학생의 학부모는 ‘나의 자녀가 자퇴를 하더라도 통상적인 학교에 조금이라도 다녔다는 재적 기록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제가 복잡한 마음이 되었던 기억이 나요. 당시가 2020년이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고, 그 뒤 다시 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쯤까지 몇 개월 정도 그 학생의 재적기록이 남을 수 있었고 해당 학부모가 이것이 기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 사) 혐오·차별 대응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에서 교사,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발화하는 장면과 마주친다.<sup>84)</sup>

*1학년 때 학교를 다닐 당시 트랜스젠더와 게이 같은 성정체성을 욕하고 나쁘다 비난하며 욕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 그걸 듣고 왜 나쁘게 냐고 물어봤더니 신이 창조한 어찌고 저찌고 막 그러면서... 기독교 학교*

83) 연구진이 2021. 10. 17.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b와 진행한 인터뷰

84) 모두 연구진이 2021. 9. 18. 청소년 성소수자 익명(동일인 여부 불명)과 진행한 인터뷰

나...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전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친구들이 게이, 레즈를 욕처럼 사용하는 게 너무 싫어요ㅠㅠ

기독교인 친구가 있는데 카톡 상태<sup>85)</sup>에 동성애=에이즈라고 적혀있어서 상처받았어요.

학교 수업시간에 '성소수자'가 나오면 짬을 시작으로 애들이 다 같이 성소수자에게 욕하며 장난거리로 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사집단 1 P은 학교 주변에 성소수자 혐오성 게시물이 부착된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sup>86)</sup>

현재 서울시교육청 근처 학교 앞 담벼락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부착되어 있어요. 문구는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한다!'예요. 이러한 플래카드를 보는 학생들은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 위축되는 경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85)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의 줄임말. 사용자가 본인의 카카오톡 SNS 계정의 전면에서 게시하는 글귀를 뜻함.

86) 연구진이 2021. 9. 13. 교사집단 1 P과 진행한 인터뷰





[인터뷰에 참여한 교사가 찍은 학교 앞에 붙은 성소수자 혐오성 현수막 사진]

청소년 성소수자 D은 이러한 성소수자 혐오 발화에 노출되었을 때, 즉시 그 자리에 있던 교사가 해당 발화를 제지하자 안정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한다.<sup>87)</sup>

*중학교 때 학생들이 ‘케이’라는 말을 욕설로 쓰자 국어 선생님이 이를 제지하며 ‘케이는 욕으로 쓰면 안 되고, 케이는 사회에 있는 다양한 사람 중 하나다’라고 말씀하셔서 중학교를 다닐 만하다고 느꼈어요. 학교에 믿을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안정감을 느꼈고, 앞으로 친구들이 그런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다행이라고도 느꼈어요.*

위 사례처럼 불특정 성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나 차별이 아닌, 구체적이고 특정한 성소수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집단 1 I은 후자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활용하여 처리하기가 곤란하였던 경험을 진술한다.<sup>88)</sup>

*저에게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혔던 학생이 학교 내에서 아웃팅 이슈가 있*

87) 연구진이 2021. 9. 18. 청소년 성소수자 D과 진행한 인터뷰

88) 연구진이 2021. 9. 13. 교사집단 1 I과 진행한 인터뷰

었어요. 그 학생은 저와 많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였고, 본인의 경험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싶다고 하었어요. 다만 당시에 그 학생이 성소수자로서 겪는 차별의 문제와 청소년으로서 일상적으로 겪는 관계의 어려움 문제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치 피해의식처럼, 그 학생이 겪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겪는 차별, 편견의 문제로 받아들여져서 심리적 아픔을 겪더라고요. 당시 저는 그 학생의 친구들이 행한 차별행위 등을 학교폭력 관련 법 등을 이용해 다루기가 어렵다고 느꼈어요. 그 사례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거나 학교폭력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례였거든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부장 교사와 해당 학생이 상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어요. 학생부장 교사에게는 제가 먼저 해당 학생의 정체성이나 어려움을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협업을 진행했어요. 당시에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과 협업하여 전 학년 모든 학급에 2시간 가량의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 뒤로 학교에서 성소수자 관련 이슈에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느꼈어요. 해당 학생도 무사히 졸업을 해서 다행이었어요.

이에 대해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Y, 교사집단 2 V,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은 성소수자 혐오성 언행에 대한 벌점, 학교폭력 처리, 징계 등의 제재가 필요함을 지적한다.<sup>89)</sup>

성소수자 학생들의 경우 다른 학생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욕할 때 벌점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성소수자 혐오성 발언이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해요. 학생들은 점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벌점의 방식을 차용하여 성소수자 혐오성 언행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89) 순서대로 연구진이 2021. 9. 2.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Y, 2021. 9. 24. 교사집단 2 V과 진행한 인터뷰

실제로 초등학생들도 게이 같다는 말을 혐오표현으로 사용해요. 이런 혐오성 발언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제재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성소수자임을 원인으로 하여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요.

한편 교사집단 1 M는 실제로 운영하는 교사 등의 이해 정도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교사집단 2 S는 엄벌주의가 아닌 교육을 통한 해결방식이 필요함을 언급한다.<sup>90)</sup>

학교폭력이 소수자 학생에게 발생한 경우 매뉴얼 상으로는 전문상담교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성소수자 학생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상담교사 등이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이지요.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사전에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사도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지식과 감수성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성소수자 혐오 언동을 처벌했을 때, 자칫 성에 대해 이야기도 함부로 못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가치관이나 감수성을 견인하기 위해 엄벌주의보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변화, 학교현장의 생활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학교문화의 변화, 그리고 교육의 삼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졌지요.

이때 학교폭력 처리 제도가 아닌 인권보호 제도를 통해 성소수자 혐오 언동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교사집단 1의 L 및 K는

90) 순서대로 연구진이 2021. 9. 13. 교사집단 1 M와, 2021. 9. 24. 교사집단 2 S와 진행한 인터뷰

현재와 같이 단 한 명의 교사 혹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교사가 인권담당관으로 지정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sup>91)</sup>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하는 인권담당관의 경우 통상 보건교사와 나이가 가장 많은 체육교사로 지정되는데, 각 교사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지 알기 어려워요. 학교에서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최소한 3명의 교사는 있어야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학교마다 인권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 교육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고하면서 ‘우리 학교 인권담당자가 바로 나구나’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될 정도였으니 현재로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또한 어떤 교사가 인권담당자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성소수자 관련 문제에 대응이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너무나 달라지게 되고요. 저는 인권담당교사로 활동 중이라 여학생들이 여성 혐오표현 관련한 상담을 많이 해오는데, 인권담당교사가 저 한 명이고 함께 논의하고 대응할 만한 동료도 없어서 난감한 상태예요.*

#### 아) 프라이버시·비밀보호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또래 학생들이 본인들이 성소수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사진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주변에 퍼뜨린 사례를 보고한다.<sup>92)</sup>

*제가 기숙사 방에 프라이드 물품을 걸어 뒀는데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서 돌려 봤대요. 그렇게 저는 기숙사에서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학교폭력을 겪었는데 오히려 학교에서는 기숙사 퇴사 조치를 했어요. 그때 학교에서 저의*

91) 연구진이 2021. 9. 13. 교사집단 1 L, K와 진행한 인터뷰

92) 순서대로 연구진이 2021. 9. 18. 청소년 성소수자 D, 익명과 진행한 인터뷰

부모님을 불러서 저의 성적체성을 아웃팅하였는데, 이때 저는 부모님에게 성적체성 등이 알려지길 원치 않은 상태였어요.

여자친구랑 손잡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찍어간 친구도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교사들은 학교 상담교사 등이 학생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린 사례들 역시 언급한다.<sup>93)</sup>

학교에서 위클래스에서 어떤 아이가 쌤에게 자기가 성소수자라고 밝혔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없을 때 그 반 담임쌤과 부모님에게 비밀을 안 지키고 막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 중 어떤 학생이 팔에 칼자국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에게 말하였다가, 상담교사가 해당 학생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학생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청소년 성소수자 D은 본인이 원치 않는 상태에서 또래 친구, 보호자에게 본인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경험을 한 뒤, 앞으로는 학교에서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한다.<sup>94)</sup>

저는 현재 탈학교 청소년이지만 이후 다른 학교로 입학할 예정인데, 예전 학교의 경험에 비추어 다음 학교에서는 ‘벽장,’ 즉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지내려고 해요. 그게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학교에서는 성소수자를 보호해줄 수 없다고 느껴져서 슬프지만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93) 순서대로 연구진이 2021. 9. 18. 청소년 성소수자 익명, 2021. 9. 13. 교사집단 1 I과 진행한 인터뷰

94) 연구진이 2021. 9. 18. 청소년 성소수자 D과 진행한 인터뷰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에서는 학생의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은 비밀 정보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유통되어야 함을 지적한다.<sup>95)</sup>

*위클래스나 학교폭력 등과 관련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성소수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례처럼 학생의 보호자에게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학생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자) 기타

### ○ 커밍아웃, 아웃팅, 성소수자 지지집단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Y은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본인의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sup>96)</sup>

*제가 만난 성소수자 학생들 대부분이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므로 해당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받은 불이익은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에서 커밍아웃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학교 구성원 사이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이슈가 화제가 되는 경우, 지나가는 말로라도 나쁜 평가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와 상담한 성소수자 학생의 경우 ‘동성애 하는 아이들은 없애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들었다고 보고한 바 있어요.*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b는 본인이 만난 성소수자 학생이 커밍아웃 이후 실제로 불이익을 겪었던 사례를 보고한다.<sup>97)</sup>

95) 연구진이 2021. 6. 11.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과 진행한 인터뷰

96) 연구진이 2021. 9. 2.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Y과 진행한 인터뷰

한 학생이 중학교 시절 자신과 가까운 친구에게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 친한 친구를 통해 아웃팅이 일어난 사례를 들은 적 있어요. 그 학생은 ‘게이’라는 소문이 나서 따돌림, 폭력을 당하였고 결국 괴로움으로 인해 중학교를 중단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중학교 졸업 자격을 따기 위해 별도로 시험을 치러야 했어요. 일도 하고 공부도 할 정도로 성실한 학생이었으나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괴로움, 친구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진 괴로움으로 인해 중간에 많은 방황을 하였다고 해요.

청소년 성소수자 H은 학교에서 커밍아웃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도움이나 지원을 학교 내에서 찾을 수 없어,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의 자료를 스스로 교사들에게 전달했던 경험에 대해 말한다.<sup>98)</sup>

저는 전교생 대상으로 커밍아웃을 하였어요. 글을 써서 읽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눈물도 나고 알 수 없는 두려움도 몰려왔어요.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 학교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곤란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커밍아웃 이후에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에서 만들었던 『학교에서 무지개 길찾기』라는 교사용 가이드북을 당시 다니던 고등학교 교사와 졸업했던 중학교의 담임교사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어요.

교사집단 1 M 역시 본인에게 커밍아웃을 해오는 학생에게 학교 내 상담기구 등이 아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을 추천해주었으나, 학생은 학교 외부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어 주저하였다고 진술한다.<sup>99)</sup>

저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인데, 제자 중 졸업 후 우연히 저를 만나 커밍아웃

97) 연구진이 2021. 10. 17.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b와 진행한 인터뷰

98) 연구진이 2021. 9. 18. 청소년 성소수자 H과 진행한 인터뷰

99) 연구진이 2021. 9. 13. 교사집단 1 M와 진행한 인터뷰

웃을 한 경우가 2번 정도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 때 저를 찾아와 커밍아웃을 한 사례도 있었어요. 해당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때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으나 주변에 말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중학교 때에는 심각하게 정체성 고민을 시작하고 학교를 자퇴하였다고 해요. 제가 해당 학생에게 평동이라는 공간을 알려주었으나, 해당 학생은 기존에 커뮤니티 경험이 없어서 평동에 찾아가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Y과 교사집단 2 S는 모두, 성소수자 학생 및 보호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학교 내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100)</sup>

학교 안에서 교사와 학생을 아우르는 성소수자 교사-학생 연대체/네트워크가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퀴어퍼레이드도 하고 그러면 재밌고 의지가 될 것 같아요.

성소수자 학생의 보호자에게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운영하는 성소수자 부모모임을 소개하고 직접 참석해보게 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성소수자 보호자의 마음을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한 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거나 직접 모임을 조직해주는 지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 ○ 성소수자 인권지지 표식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 내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조직이나 표식이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진술한다.<sup>101)</sup>

100) 순서대로 연구진이 2021. 9. 24. 교사집단 2 S와, 2021. 9. 2.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Y과 진행한 인터뷰

101) 순서대로 연구진이 2021. 9. 18. 청소년 성소수자 D, D, 익명, 익명, 익명과 진행한 인터뷰



퀴어동아리가 학교에 있었으면 해요. 제천간디학교, 성미산학교, 민족사관  
고등학교 등에도 퀴어동아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도서관에 퀴어 주제의 책들이 넉넉히 있었으면 해요. 학교 도서관에 퀴어  
주제 책을 신청했을 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받아들여졌던 도서의 경  
우에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거든요.

학교 주변에 다양한 성소수자 깃발을 걸어두고 학교에 오는 동안 세상에  
여러 성소수자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면 해요.

학교 안에 퀴어 부스가 있어서 자긍심 무지개 깃발이 그려진 굿즈를 무료  
로 나누어주었으면 해요.

급식실 벽면 곳곳에 다양한 성소수자 깃발이 비치되어 있고, 6월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에는 무지개떡과 무지개 머핀을 판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집단 2 S는 캐나다의 학교에 설치된 레인보우 플래그와 레인보우 존<sup>102)</sup>을  
보았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sup>103)</sup>

전에 캐나다 학교로 연수를 갔는데, 중·고등학교에는 레인보우 플래그와 레  
인보우 존이 있었어요. 또, 여성의 날, 아이다호, 침묵의 날 등 계기들이  
있을 때마다 학교 내에서 이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  
위기인 것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 역시 학교 내에 성소수자 친화적 표식이 필요

102) 레인보우는 통상 성소수자 인권지지의 표식으로 사용된다.

103) 연구진이 2021. 9. 24. 교사집단 2 S와 진행한 인터뷰

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조금 더 적극적인 발화를 촉구한다.<sup>104)</sup>

*학교 내에 성소수자 친화적 공간이나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표식이 필요해요. 해당 표식을 부착한 공간이나 사람에 대해 의지할 수 있도록.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등 연대할 수 있는 단위와 결합하여 교사 대상 지침/약속문 같은 것을 발표해도 좋을 것 같아요.*

### ○ 상담실, 쉼터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 친화적 상담실과 쉼터의 필요성을 언급한다.<sup>105)</sup>

*학생과 부모가 다 같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실이 있었으면 해요.*

*여러 학생들이 쉬고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어 먹을 수도 있는 쉼터가 있었으면 해요.*

*호르몬 투여 등을 편안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건강 센터가 있었으면 해요.*

교사집단 1 I은 상담교사가 성소수자 학생에 대해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지 못한 사례를 보고한다.<sup>106)</sup>

*어떤 학생이 본인이 레즈비언이라고 하였더니, 상담교사가 ‘너는 남자가 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여자가 좋은 게 아니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해당*

104) 연구진이 2021. 6. 11.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과 진행한 인터뷰

105) 연구진이 2021. 9. 18. 청소년 성소수자 익명과 진행한 인터뷰

106) 연구진이 2021. 9. 13. 교사집단 1 I과 진행한 인터뷰

학생이 학교에 기대가 없어진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로 상담교사나 보건교사여도 사람마다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상담교사와의 상담 경험이 학생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육청에서 상담교사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학교 내에서는 적절한 상담을 받지 못하는 성소수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나 보호자 역시 학교 외부의 상담센터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Y은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sup>107)</sup>

성소수자 학생의 경우 통상적인 상담 회기보다 더 많이 오고(20~30회가량) 기간도 긴 편이었어요. 성소수자 학생 중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2, 3학년 내내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내담자의 경우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면 성인 요금으로 상담료를 1만 원가량 내야 했는데 어떤 학생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까지 상담을 지속하기를 위하여 20~30회기 정도의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외 성소수자 학생의 부모가 '내 아이를 바꾸어 주세요'라는 취지로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에 데려오거나 교사가 '학생이 남자인데 자꾸 여자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등 이상하니까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에 데려온 경우들이 있어요. 해당 부모나 교사가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를 알게 된 경로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나 아마도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포괄적 성교육 등 성소수자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을 보거나 성소수자 상담센터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가까운 장소인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를 찾아오는 경우로 보여요.

107) 연구진이 2021. 9. 2.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Y과 진행한 인터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a는 추후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다.<sup>108)</sup>

*먼저 서울시교육청 내부 직원부터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받을 예정이고, 다음으로는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상담하는 공간인 위센터의 상담교사들에게도 직무연수 차원에서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시행할 예정이에요.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 등의 단체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예요. 현재로서는 상담교사 직무연수에 '성소수자'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생인권' 교육에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아직 계획 중인 상태이므로 변경될 가능성은 있어요.*

#### ○ 청소년 성소수자가 희망하는 학교 이미지

한편 청소년 성소수자 참여자들은 인터뷰 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자가 원하는 학교의 이미지를 함께 그리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는 바, 아래가 그 결과로 도출된 이미지이다. 청소년 성소수자 참여자들이 각 이미지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은 위의 인터뷰 정리본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108) 연구진이 2021. 9. 30.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a와 진행한 인터뷰

[청소년 성소수자가 희망하는 학교 이미지 1 ('다양학교')]



[청소년 성소수자가 희망하는 학교 이미지 2 ('무지개같이 학교')]



☐

# III. 해외 사례 검토

---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 Ⅲ. 해외 사례 검토 - 해외 입법례 및 지침 조사 번역을 바탕으로

#### 1. 국제기구의 권고와 가이드라인

##### 1) 유네스코 가이드라인 - 동성애 괴롭힘 없는 학교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는 2012년 ‘HIV 및 보건 교육 우수 정책과 사례’ 시리즈를 발간하였고, 그중 한 권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다루었다. 이 책은 2013년 한국의 비영리단체인 무지개행동 이반스쿨 인권활동가들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씨가 한국어판의 서문을 작성하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혁신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다면 학교 내에서 또는 학교를 통해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일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교육기관 내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특징과 범위를 설명하면서 교육기관에서 이에 대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즉,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교육권과 ‘모두를 위한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차별과 배제의 한 형태이며, 안전학교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동성애를 수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부문에서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의 교육부와 교육기관에서 인종, 종교,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괴롭힘에 대처하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지 않았고 그 예방 및 대응 방안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던 탓도 크지만, 또한 동성애와 비전형적 성별정체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태도와 과민한 반응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bystanders), 괴롭힘이 일어나

는 장소인 학교에 영향을 미치며, 앞 절에서 본 것처럼 교육상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교육부문에서 다뤄야 할 교육의 문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교육권과 ‘모두를 위한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차별과 배제의 한 형태이며, 안전학교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동성애를 수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부문에서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이제 막 대응하기 시작한 나라에서 국가 단위로 할 수 있는 활동과 학교 단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실용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또한 각국의 교육기관 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개관하고, 좋은 정책과 사례, 연구 조사 결과, 혁신적인 개입방안, 경험을 통한 교훈을 소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2년에 발표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참고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소개되어 있다. 해당 자료의 PDF 파일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sup>109)</sup>.

*‘교육기관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과 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 나라의 상황 -법과 문화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10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원문 링크:  
[https://www.unesco.or.kr/upload/data\\_center/2013\\_%EB%8F%99%EC%84%B1%EC%95%A0%ED%98%90%EC%98%A4%EC%84%B1%EA%B4%B4%EB%A1%AD%ED%9E%98%EC%97%86%EB%8A%94%ED%95%99%EA%B5%90.pdf](https://www.unesco.or.kr/upload/data_center/2013_%EB%8F%99%EC%84%B1%EC%95%A0%ED%98%90%EC%98%A4%EC%84%B1%EA%B4%B4%EB%A1%AD%ED%9E%98%EC%97%86%EB%8A%94%ED%95%99%EA%B5%90.pdf)



## 2) UN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 성명 - 성소수자를 교육환경에 포함시키는 것; “아무도 뒤에 남기지 않는(Leaving No One Behind)” 원칙의 가장 중요한 것<sup>110)</sup>

‘유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및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은 교육기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따돌림, 괴롭힘 및 배제는 상당수의 성소수자 학생이 직면한 전 세계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성명은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학교 내 괴롭힘, 따돌림 및 퇴학을 금지하고, 예방하고, 처벌하는 조치를 취할 것,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안전 및 지원 조치를 시행할 것, 정책개발을 알리기 위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해 세분화된 교육에 대한 연구/통계 데이터를 수집할 것, 학생들에게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써 촉구하고 있다.

교육기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따돌림, 괴롭힘 및 배제는 상당수의 성소수자 학생이 직면한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종종 성역할,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깊은 문화적 신념에 뿌리내리고 있는 낙인과 편견에 의해 발생합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놀림, 욕설 및 공개 조롱, 소문, 협박, 밀고 때리기, 소지품을 훔치거나 훼손하기, 음란한 메모 및 낙서, 사회적 고립, 사이버 괴롭힘, 신체적 및 성적 폭력, 심지어 살해 위협에 직면합니다. 이 행위들은 교실, 운동장, 화장실, 탈의실, 등하교길, 온라인에서 발생합니다.

암묵적 폭력은 차별적인 교육정책, 규정, 커리큘럼, 교재 및 교육 관행을 통해서도 발생합니다. 포괄적인 성교육의 부족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에 빠뜨립니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성별화된 교복,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반영하지 않는 공식 문서/기록, 교육기관의 화장실 및 탈의실과 같은 단일 성별 시설로 인해 추가적인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및 성별표현에 근거한 학교 내 괴롭힘과 차별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및 성별비순응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확인된 영향으로는 우울증, 불안, 두려움, 스트

110) UN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 (2019). The inclusion of LGBT people in education settings: of paramount importance to “leaving no one behind.” 원문 링크: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094&LangID=E>

레스, 자신감 상실, 낮은 자존감, 금단, 사회적 고립, 외로움, 죄책감, 수면 장애,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노숙, 자해, 심지어 자살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환영받지 못하는 환경은 성소수자의 전반적인 교육 및 고용 전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불안을 느끼고, 학교 활동을 기피하고, 결석하고, 자퇴하고, 또래보다 낮은 학업 성적을 거두어 인생에서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더 큼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따라 국가들은 "포괄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 기회를 촉진"(목표 4)하기로 약속합니다. 국제 인권법에 따라 성소수자 학생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폭력과 차별이 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 인권 메커니즘은 교육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학교 내 괴롭힘, 따돌림 및 퇴학을 금지, 예방 및 처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촉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안전 및 지원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국가는 정책개발을 알리기 위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해 세분화된 교육에 대한 연구/통계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학생들에게 성과 다양한 성별정체성에 관한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및 성별비순응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정책과 관행이 발전하는 것을 보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 2. 학교 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례

### 1) 미국 - 학교 괴롭힘 방지법

1999년 조지아 주에서 미국 최초의 학교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된 이래 2015년에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학교 내 괴롭힘에 관한 법이 마련되었다. 그중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괴롭힘 방지법

은 2021년 현재 2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sup>111)</sup>.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교육법에서 소위 ‘안전한 학습장소법(Safe Place to Learn Act)’를 두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더 나아가 성소수자인 친구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괴롭힘도 금지하고 있다(Cal. Edc. Code § 234 (2011)).

위 21개 주 외에도 학교 괴롭힘 방지법이 있는 주들이 있으나, 이들은 일반적으로 괴롭힘을 금지할 뿐 괴롭힘의 근거가 되는 인종, 성적지향 등과 같은 특성을 나열하지 않는 법·정책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교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미국 비영리단체인 ‘GLSEN’은 학교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편견으로 인해 특히 취약하고 높은 피해를 경험하는 학생 범주를 지정하거나 열거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각종 연구 결과 보호 범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을 때, 학생이 괴롭힘을 덜 경험하고 전반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느꼈으며, 열거된 정책이 있는 학교에서 교사가 괴롭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112)113)</sup>

- 열거형 정책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정책이 없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그런건/너는 너무 게이같아”(47.2% v. 63.3%)라는 발언이나, 성차별적 발언(49.4% v. 64.9%), 인종 차별적 발언(33.7% v. 44.1%)을 더 적게 듣는다.
- 열거된 정책이 있는 학교에 다니는 LGBTQ+ 학생은 일반적(열거하지 않는) 정책이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보다 성적지향(17.5% v. 30.8%) 또는 성별표현(22.6% vs. 31.6%)에 따른 피해를 덜 경험한다.
- 괴롭힘 방지 정책이 열거된 학교의 교육자는 괴롭힘 방지 정책이 없는 학교의 교육자보다 성적지향(77.7% v. 53.9%) 및 성별표현(72.3% v. 52.2%)을 기반으로 한 괴롭힘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편안함을 보고했다.
- 교육자들은 괴롭힘 방지 정책이 열거된 학교에서 성적지향(77.7%), 성별표현(72.3%), 인종(80.5%)을 기반으로 한 편견 기반 괴롭힘 행위에 개입하는 것이 “다소” 또는 “매우 편안하다”고 느낀다고 보고했다.

111) 김지혜 외. (2022).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 국가인권위원회.

112) GLSEN. (2020). Model State Anti-Bullying & Harassment Legislation. 원문 링크: <https://www.glsen.org/activity/model-state-anti-bullying-harassment-legislation>

113) Greytak, E. A., Kosciw, J. G., Villenas, C., & Giga, N. M. (2016). From Teasing to Torment: School Climate Revisited. A Survey of US Secondary School Students and Teachers. Gay, Lesbian and Straight Education Network (GLSEN). 121 West 27th Street Suite 804, New York, NY 10001.

## 2) 미국 - 학교 성차별금지법(Title IX)

미국은 학교 내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연방 민권법인 교육법("Title IX")을 두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어느 누구도 성별을 이유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배제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받을 수 없다.”*

Title IX는 교육부로부터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 지역 및 주 교육기관, 기타 기관에 적용되며, 17,600개의 지역 학군, 5,000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차터 스쿨(국가의 지원을 받는 대안학교), 사립학교, 도서관 및 박물관이 포함되며, 직업 재활 기관도 적용을 받는다.

미국 교육부는 2014년 “Title IX와 성폭력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라는 제목의 공식 문서를 통해 성차별금지법 당사자의 실제 또는 인지된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이나 남성다움/여성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까지 적용된다고 발표하였다.

*‘실제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LGBT)는 높은 비율로 성희롱, 성폭력 피해가 보고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에 동성애혐오성 발언이 수반되거나, 부분적으로 학생의 실제 또는 인지된 성적지향에 근거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학교 안에서 이러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시정해야 하는 Title IX에 따른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Title IX 적용 지침은 더 발전하여 2016년에는 법무부와 교육부가 Title IX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차별의 범위에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이 포함된다는 점을 분

명히 하였고, 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와 학교의 법적 의무를 담은 공동 지침을 만들어 미국 전역의 교육기관에 발행하였다. 이 지침에는 미국 교육부 산하 초·중등교육과, 학생건강안전과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인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실천의 예시’[참고자료 1]가 포함되어 있다.

### 3) 영국 - 2010 평등법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을 제정하여 이전까지 존재하던 다양한 영역의 차별금지법안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영국은 평등법 제정 이전에도 학교에서 학생의 성별, 인종, 장애, 종교 또는 믿음,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한 법이 있었으나, 2010년 평등법에서는 차별금지대상을 확대하여, 임신 및 출산, 성별 재지정(전환) 과정을 거친 학생들을 포함하였다.

2010년 평등법을 기반으로, 영국 교육부에서는 2014년에 ‘2010년 평등법과 학교 - 학교 관리자 및 직원, 학교 및 학원의 관리 기관, 그리고 지방 정부 당국을 위한 영국 교육부의 조언’[참고자료 7]이라는 제목의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해당 지침은 2010 평등법에 새롭게 추가된 ‘성별 재지정(전환)’ 여부로 인한 차별금지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성소수자 부모를 둔 학생, 성적지향과 종교 또는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성적 지향과 종교 또는 믿음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와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 간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꽤 많은 사람들의 성적지향에 대한 의견은 종교적 믿음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종교적 믿음과 상관없이 동성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우려하는 교사들이 있다. 반대로, 종교적 색채가 짙은 학교들이 성소수자 학생이나 학부모에 비우호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만약 학교의 종교적 믿음이 교육적 맥락에서 Sex and Relationships Education (SRE) 지침과 Religious Education (RE) 지침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면, 해당 학교는 평등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가 종교적 믿음을 장황하게, 특정 학생이나 특정 학생의 그룹을 괴롭히거나 질책하는 방식으로 나타낸다면,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평등법 아래 차별을 행한 것이 된다.

또한 교사가 성적지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적절한 방식과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 예컨대 학생의 질문에 답할 때 혹은 종교 교육 시간 등 - 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 교사는 매우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행동과 책임은 평등법 이상으로 더 넓고 깊음을 인지해야 한다. 교사가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군가를 차별하는 정도로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 4) 캐나다 온타리오주 - 학교 괴롭힘 방지법(Bill 13, Accepting Schools Act)

캐나다의 모든 주와 준주는 교육법을 통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012년 온타리오주는 ‘따돌림 등에 관한 교육법 개정법률(소위 ‘수용적인 학교 법’)'을 실시하면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정법률 전문에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성별표현까지를 포함한 차별금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특히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LGBTTIQ’라는 용어를 법의 전문에서 명시하여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학교와 공동체가 평등하고 포용적으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따돌림 등에 관한 교육법 개정법률<sup>114)</sup>  
2012년 6월 19일**

**전문**

교육은 온타리오주의 젊은이들이 다양한 사회에서 생산적이고 기여하며 건설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인종, 혈통, 출신지, 피부색, 출신민족, 국적, 신념, 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나이, 혼인상태, 가족상태, 장애에 관계없이 포용적이고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누릴 자격이 있다.

모든 학생이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포괄적인 학습 환경이 학생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학생들이 불안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환경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학생들은 세상과 타인과 비판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LGBTTIQ(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 두 영혼, 인터섹스, 퀴어 및 퀘스처너리)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학교와 공동체를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으로 만들기 위한 비판적 의식을 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전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 교육자, 교직원, 학부모, 학생, 더 넓은 지역사회 등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따돌림, 성폭력, 젠더기반 폭력, 동성애 혐오, 트랜스 혐오 또는 양성애 혐오에 근거한 폭력 등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예방하는 데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교장,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 간의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대화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한다.

모든 학교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부적절한 행동의 영향을 받은 학생과 부적절한 행동을 한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지원하여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좋은 선택을 하며, 학습을 지속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114) Canada Ontario. (2012). Accepting Schools Act, 2012, S.O. 2012, c. 5 - Bill 13. 번역 내용은 김지혜 외(2022)에서 인용. 원문 링크: <https://www.ontario.ca/laws/statute/s12005#:~:text=include%20the%20following%3A-,1..on%20homophobia%2C%20transphobia%20or%20biphobia>

## 5) 필리핀 - 괴롭힘 금지법 및 동 시행규칙

2012년 필리핀 교육부는 "아동 학대, 착취, 폭력, 차별, 따돌림 및 기타 형태의 학대 행위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표명하는 아동 보호 정책을 제정했다. 이 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모든 형태의 학교 내 따돌림과 차별이 포함된다. 이 정책은 모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아동 보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며, 위원회는 3년마다 검토할 학교 아동 보호 정책 초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초하에 2013년 필리핀 의회는 '따돌림 방지법'을 통과시켰고, 법 시행 규칙에서 '따돌림'에 '성별 기반 따돌림'을 포함하면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sup>115)</sup>

### 섹션 3. 용어 정의

(중략)

b. 1. '따돌림'은 다음을 포함한다:

"사회적 따돌림" -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무시할 의도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이며 공격적으로 하는 사회적 행동.

"성별 기반 따돌림" - 인지도 또는 실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SOGI)을 근거로 사람을 모욕하거나 배제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 규칙 IV 금지된 행위

#### 제5절 금지행위

법 섹션 3에 따라 따돌림 방지 정책은 다음을 금지합니다.

1. 아래에서의 따돌림 :

- a. 학교 운동장;
- b. 학교 운동장에 바로 인접한 장소;
- c. 학교가 후원하거나 학교와 관련된 활동, 기능 또는 프로그램(교내 또는 외부);
- d. 학교 버스 정류장;
- e. 학교에서 소유, 임대 또는 사용하는 학교 버스 또는 기타 차량;
- f. 학교 버스 또는 개인 소유이지만 학교에서 인증한 학교 서비스.

2. 학교에서 소유, 임대 또는 사용하는 기술, 전자 장치 또는 기타 형태의 미디어를 사용한 따돌림

115) 김지혜 외(2022)에서 인용.



3. 학교와 관련이 없는 장소, 활동, 기능 또는 프로그램에서 학교에서 소유, 임대 또는 사용하지 않는 기술, 전자 장치 또는 기타 형태의 미디어를 사용하여 따돌리는 행위 그리고
4. 따돌림을 보고한 사람, 따돌림 조사 중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 따돌림에 대한 증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진 사람에 대한 보복.

### 3. 트랜스젠더 포용적인 학교환경을 위한 실천 지침들

#### 1) 미국 교육부 -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실천의 예시<sup>116)</sup>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실천의 예시’는 미국 내 학교들에서 이미 트랜스젠더 학생을 만나,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실천 방법들의 사례를 수집하여 엮고, 학교 기록 체계, 사생활 보호, 정체성 관련 용어 등 자주 질문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미국 내 지역과 교육구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 행정가, 교육 전문가, 학생들과 부모들이 교육부에 대해 어떻게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지지해야 하는지 물으며, 명확한 답을 요청하였고, 그에 대한 답으로 이 문서가 만들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미국 전 지역(주, 준주 등)의 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일부 학교들이 실질적으로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환경 전반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목차에 따라 정리하고 있다<sup>117)</sup>.

116) [참고자료 1]

117) 2017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는 해당 지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으나, 2021년 바이든 정부는 ‘성별(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포함한다)에 근거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명령(Executive Order on Guaranteeing an Educational Environment Free from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Including Sexual Orientation or GenderIdentity)’을 발표하여 교육과 관련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권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고히 하였다.

**학생의 트랜지션**

1. 학교는 어떻게 트랜지션 할 학생을 찾을까?
2. 학교는 학생의 젠더 정체성을 확인하나요?
3. 학교는 나이가 많은 트랜스젠더 학생에 비해 어린 학생의 부모와 어떻게 소통하나요?

**프라이버시, 비밀 보장과 학생기록**

4. 학교는 어떻게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트랜스젠더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나요?
5. 학교는 어떻게 트랜스젠더 학생을 적절한 이름과 대명사로 불릴 수 있게 만드나요?
6. 학교는 학생기록에서 이름 또는 성별 지정을 변경하고 싶다는 요청을 어떻게 다루나요?

**성별에 따라 분리된 활동과 시설들**

7.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젠더 정체성에 맞게 시설을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증할 것인가요?
8. 학교는 어떻게 모든 학생들이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받도록 할 것인가요?
9. 학교는 어떻게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게 체육 교육과 운동 경기에 참여할 기회를 얻도록 보장할 것인가요?
10. 학교는 숙박이 동반된 현장 체험학습과 전지 훈련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요?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지지하기 위한 부가적인 실천**

11.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교실에서 편안하게 느끼도록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2.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복장 규율을 어떻게 적용해야할까요?
13.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겪는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14. 학교는 어떻게 심리학자, 학교 상담사, 보건교사, 학교사회복지사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지지하도록 하나요?
15. 학교는 어떻게 큰 학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존중받도록 하나요?
16. 트랜스젠더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교직원에게 교육할 때, 학교는 어떤 주제들을 다루어야 하나요?
17.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대해지는 방법에 대한 불만사항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나요?

**용어**

18. 트랜스젠더 학생들에 대한 현재의 학교정책들에는 어떤 용어들이 정의되어 있나요?
19.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젠더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개별화된 선호와 다양한 방법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인용된 정책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선별된 연방정부의 자원

## 2) 미국 NGO -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Schools In Transition) -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

미국시민자유연대, 젠더스펙트럼, 휴먼라이츠캠페인재단, NCLR 등의 비영리단체가 함께 제작한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 -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참고자료 2]는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의 실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활발한 역학관계에 답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특정 나이에 근거한 특이점이나 제안점도 다루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서문에는 캘리포니아주 베네치아 교육구 교육감인 제니스 아담스(Janice Adams)가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트랜스젠더 학생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 실려 있다.

### 교육감의 편지

약 8년 전 어느 날, 가을에 유치원에 들어갈 아이의 엄마가 나에게 찾아와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걱정하는 부모의 두려움에 대처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 가족의 상황은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Toni는 태어날 때 남자로 지정되었지만, 부모는 그녀가 자신을 식별해온 방식으로 여자아이로 학교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Toni의 엄마에게 이전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한 적이 없었지만 모든 어린이는 안전하고 환영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권리가 있다고 믿으며 가족과 협력하여 우리가 그녀의 자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Toni는 결과적으로 2학년 때 여성으로서 공개적이고 확실하게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녀의 가족, 교직원, 카운슬러와 나는 함께 일하면서 그녀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따라야 할 모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행하면서 배웠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로세스가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었지만 다른 것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했고 우리는 진행하면서 그것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쉬운 부분은 Toni의 반 친구들이 그녀를 받아 들이고 그녀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Toni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면서 교육과 정보 제공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저는 소수의 관심 있는 부모를 개별적으로 만났고 Gender Spectrum이 주최하는 부모의 밤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교직원, 행정팀, 이사회에 트랜스젠더 아동에 관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대부분 옳은 일을 하라는 동정심 어린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적용한 변경 사항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Toni를 지원하고 옳은 일을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년 후 우리 학군의 또 다른 2학년 학생이 트랜지션을 하였지만(Transitioned) 이번에는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고 과정은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두 학생은 이후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두 소녀 모두 나이보다 훨씬 더 용감하고 현명합니다. 그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학생들을 진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여행을 시작했을 때 나는 트랜스젠더 학생들, 특히 너무 어린 학생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Gender Spectrum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Toni의 부모님과 무엇보다도 Toni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과도기 아동의 필요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안전하고 포용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권장합니다. 나는 정치적 의제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나의 의제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활동가가 아니라 옹호자로 일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나와 같다면, 당신은 익숙하지 않은, 어쩌면 심지어 불편한 영역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개인적인 불확실성이 이러한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이 가이드는 나와 같은 교육자와 그 과정에서 우리를 지원한 옹호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면서 얻은 지식이 다른 교육자, 학부모, 카운슬러 및 학생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와 교실이 성별 다양성을 더 많이 수용하고 모든 학생들이 지원과 안전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밝히고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욕구와 필요는 아주 다양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을 관통하는 원칙들이 존재한다.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 모든 학생들은 안전하고 배제되지 않는 학교환경에서 학습할 권리가 있다.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모든 학생이 누리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 모든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청소년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또한 팀을 이루어 일하는 것이 지원이 필요한 개별 학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됨을 인식해야 한다.
-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한 표현, 또는 어떤 형태의 특정 젠더에 구애받지 않는 행동은 모두 아주 건강하고 적절한 것이며, 인간 발달의 기본적인 면모이다. 특정 젠더에 구애받지 않는 학생은 자신이 정체화하는 성별이나 표현에 맞지 않는 젠더를 표현하도록 요구받거나 권유받을 수 없다. 이러한 시도나 요구는 비윤리적이며, 학생에게 중대한 정서적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정체성과 표현에 대한 반대 표현이 자신의 진지한 종교적 믿음에 근거했다고 해도 변치 않는 사실이며, 학생이 자신의 성적체성을 선언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져도 (나이, 발달 장애 혹은 지적 장애 때문에) 변치 않는 사실이다.
- 지속적인 학습은 이 과정의 핵심 요소이다. 교육자와 관리자는 성별 고정관념을 피하고 모든 아동의 성별을 긍정하는 학교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기적인 전문 개발 및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부모와 보호자는 마찬가지로 자녀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계속 확장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또한 교육자와 가족이 직면하나 문제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의 각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장에서는 젠더의 기본 개념에 대해 다룬다. 트랜스젠더나 특정 성으로 규정하지 않는 아이들을 지원할 때는 젠더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장은 트랜스젠더 이슈가 왜 중요한지, 어떤 학생이든 학교에서 소외되고 주변화될 때 그 지역사회가 입을 손해에 대해 다룬다.

3장은 트랜스젠더 학생의 욕구나 필요 - 특히 트랜지션 과정에 있어서 - 에 응

하기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이 장은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함에 있어 보편적인 ‘정답’을 찾는 것은 무용하며, 대신, 특정 학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부록 D. Gender Support Plan과 Gender Transition Plan (PDF상 57~65페이지)을 참고하여 학생을 지원하는 절차에 빠진 것이 없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4장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중요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기록 및 학생정보시스템, 이름과 호칭, 복장, 성별분리 시설 활동과 프로그램, 차별, 괴롭힘 등의 이슈에 대해 다룬다.

5장은 조금 더 복잡한 이슈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를 지지하지 않는 부모나 보호자를 둔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6장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배제되지 않는, 안전하고 지원받는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관리자, 교육자, 학부모, 학생이 알아야 하는 미국 내 법·정책을 개괄하고 있다.

이 가이드의 부록에는 의학적 트랜지션에 대한 설명(부록 A), 젠더와 그에 따른 호칭(부록 B), 모든 학생들에게 젠더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화법(부록 C), 학교에서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학생들의 다양한 이슈를 지원하기 위한 플랜과 학교에 다닐 때 트랜지션을 하는 경우 학생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집중한 플랜(부록 D)등이 담겨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때 참고할 만하다.

### 3) 미국 NGO - ‘트랜스젠더와 성별비순응 학생들을 위한 학교정책 모델’

GLSEN 등 미국 내 NGO에서 2018년 공개한 ‘트랜스젠더와 성별비순응 학생에 대한 학교정책 모델’[참고자료 3] 가이드라인은 트랜스젠더와 성별비순응 학생들을 위해 참고할 만한 학군들의 정책을 개괄하고 있다. 학생들이 성별정체성이나 성별표현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기존 학교정책을 소개하며, 구체적으로는 정책의 목표와 함께 정책의 핵심 주제, 고려해야 할 대안까지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각 학군들이 정책을 개발할 때 참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 제시하는 학교정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성별정체성과 성별표현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낙인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며, 환영 받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 2) 괴롭힘, 폭력, 사생활, 차별과 관련한 지방/주/연방법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 3) 모든 학생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기 자신대로 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 4) 미국 NGO -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학생을 위한 지원 체크리스트<sup>118)</sup>

휴먼라이츠캠페인재단은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학생을 위한 젠더 지원 (Gender Support)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학생의 이름

학생은 어떤 이름을 사용할 것인가요?

학생이 집에서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나요? 그 학생의 형제자매와 다른 가족들은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나요?

학생이 모든 학교환경에서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과만 사용하고 있나요?

118)

<https://welcomingschools.org/resources/gender-support-checklist-for-transgender-and-non-binary-students>

**대명사**

이 학생이 사용하고 싶은 대명사를 알고 있나요? (대명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대명사를 사용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집에서 이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나요?

학생의 형제자매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이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나요?

학생이 모든 학교환경에서 이 대명사를 사용하나요,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과만 사용하고 있나요?

**학교 데이터베이스**

학교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생의 이름이 변경되었나요?

우리 지역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변경을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학교 연락담당자, 지역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가족은 이것이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학생이 가족구성원에게 인정받고 있는 경우)

**가족 지원**

이 학생에게 가족구성원이 있나요?

학생은 현재 가족 안에서 일부 성인에 의해 인정받고 있나요, 아니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나요?

적절한 스텝이 학생의 웰빙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모든 상황은 특별합니다.

학교는 가족에게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부모모임과 같은 지역 자원을 연결해주었나요? (학생을 위해 안전한 경우에만 진행하세요. 학생에게 가족의 역동에 대해 항상 물어보세요)

**학교 지원**

학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명 또는 두 명의 지원자를 배정하였나요?

## 5) 캐나다 앨버타 - ‘실천 가이드라인: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존중하는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6)

캐나다 앨버타주는 학교법, 앨버타 인권법, 2015-2016 교육 가이드 등에 근거하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016년 앨버타주 정부는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담은 교육부장관 명의의 실천 가이드라인[참고자료 5]을 작성, 배포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지침의 모범사례는 다음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가진 학생들의 권리와 욕구가 존중되고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한다.
- 자아 정체감은 개인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또는 성별표현의 유일한 척도이다.
-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가진 모든 학생과 교직원:
  - 존엄과 존중을 갖고 대우되어야 한다.
  - 원치 않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또는 성별표현을 포함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개방할 권리가 있다.
  -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의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모범사례 지침의 구현을 지원하는 협업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실천 지침은 총 12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중 성소수자 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지침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지침 6.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 안팎의 교육 커리큘럼 활동에 온전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은 모든 커리큘럼 및 과외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학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포괄적이고 존중되는 환경과 안전하고 편안한 방식, 학생들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의 지지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모범사례의 실행지표**

- 모든 학생들은 그들의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이 편안하고 지지되는 방식으로 모든 커리큘럼에 참여한다(예: 성교육 시간에 성별에 의해 학생을 분리하지 않음).
- 모든 학생들은 그들의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이 편안하고 지지되는 방식으로 과외 활동에 참여한다(예: 스포츠 팀을 성별에 따라 나눈 경우 학생들의 성별정체성과 성별표현을 반영한 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경쟁적인 운동 팀을 포함한 과외 활동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학생들은 그들이 편안하고 그들의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정체성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체육 학점을 따기 위한 방법이 개별 학습으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지만, 학생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학생 개개인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성교육이 성별에 따라 구성된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참여할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 학교와 학교 당국은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등 모든 학생이 포함되도록 학교교육과정 및 교과 외 활동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적극 검토한다.

- 학교와 학교 당국은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가진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포괄적이고 존중되며 안전한 과외 활동을 보장함에 있어 코치, 고문 교사,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파악한다.

## 6) 일본 문부과학성 -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세심한 대응의 실시’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한 차별금지법, 교육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의 교육부인 문부과학성은 2013년,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별지원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트랜스젠더 관련 대응의 현황 파악을 실시하여, 전체적인 상황 및 배려의 구체적 내용 등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대응을 충실히 하기 위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조사항목에는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해 학교가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배려인지, 다른 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련한 학교의 정책과 현황, 과제가 있는지 등이 포함되었다.

2014년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학교에서 총 606건의 트랜스젠더 학생 상담 및 지원 사례가 집계되었다. 문부과학성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트랜스젠더 학생119)에 대한 세심한 대응의 실시 등’이라는 지침을 만들어 전국

119) 일본 원문은 ‘성동일성장애에 관련된 학생’이다. 그러나 ‘성동일성장애’와 같은 표현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질병으로 분류하였던 과거의 편견적 인식과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그 표현이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성동일성장애에 관련된 학생’은 ‘트랜스젠더 학생’으로, ‘성동일성장애’는 ‘성별위화감’으로 번역하였다.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 길잡이 ‘트랜스로드맵’은 트랜스젠더 병리화에 관한 논의의 흐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원문 링크: <http://transroadmap.net/transgender-health/>).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10판(ICD-10)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성전환증(Trassexualism)과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라는 항목을 두어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가 호르몬, 외과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받거나 법적 성별정정, 그리고 트랜스여성이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단서를 받을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주체성장애라는 진단명은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 자체를 병리화하고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또 다른 낙인을 씌운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미국정신의학회 2013년 DSM-V에서 진단명을 성별위화감(Gender Dysphoria)로 바꾸면서 그 이유를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 자체가 아닌 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또한 2018년 ICD-11개정판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 범주에 있던

학교에 통지하였다. 지침을 배포하고 1년이 지난 2016년에는 해당 지침에 기반한 대응방식과 관련해 학교나 교육위원회에서 제기한 질문을 바탕으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실시지침’[참고자료 8]**을 작성, 배포하였다.

성소수자의 권리보장 수준이나 혐오·차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본에서, 교육부가 주도하여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학교의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과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성소수자 포용적인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전 학교에 배포하였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일본 교육부의 지침이 미국 등 영미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침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점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7) 일본 - ‘오차노미즈대학 트랜스젠더 학생 입학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

일본은 대표적인 국립여자대학인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 2020년부터 성별정정전의 트랜스여성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이 대학은 입학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학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학생 본인과 협의해, 여자용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지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대학 측은 이들을 위해 ‘누구든 화장실’이라는 이름의 15개 다목적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2021년 당시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등 4개 여자대학이 성소수자들의 입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일본여자대학은 2024년부터 입학을 허용할 방침이다.

성주체성장애를 삭제하고, 성건강 관련 상태(Conditions Related to Sexual Health) 범주를 신설하여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 항목을 두었습니다. 이로서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질병 범주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ICD-11은 2022년 발효될 예정이며 한국 역시 이에 맞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해야 합니다).”

### 4.3 화장실

화장실 사용은 일상적으로 절실한 문제입니다. 트랜스젠더 학생의 신체, 외견, 복장, 의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시사전상담 때에 대학의 시설이나 설비의 상황을 설명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담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 학생생활이 시작되고 상황을 봐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내에서는 남녀 구별 없이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누구든 화장실’(다목적 화장실, 장애인 포함)이 주요한 건물에 설치되어 이 화장실을 누구라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또는 주위의 상황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누구든 화장실’이 있는 건물 (총 15개소)

학생센터동, 보건관리센터, 부속도서관, 공통강의동1호관, 공통강의동3호관, 이학부1호관, 이학부2호관, 대학본관, 생활과학부분관2, 종합연구동, 인간문화창성과학연구과, 전학공용연구동, 문교육학부1,2호관, Student Commons(학생회관), 국제교류유학생플라자

## 8)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정부 - ‘지원 및 위협관리 플랜’

시드니가 속한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 정부 교육부는 홈페이지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이름과 성별 표기, 교복, 화장실과 탈의실 사용, 숙박 활동, 스포츠 활동 등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와 지원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뉴 사우스 웨일즈 정부는 고등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원 및 위협관리 플랜’** [참고자료 9]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하는 주요 이슈별 위기 척도, 이슈에 따른 위협요소, 대응방법, 대응의 주체와 시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지원 및 위기관리 플랜 샘플					
학생 이름:					
학교명: 학교장 이름		그룹 및 학급의 수:			
날짜(및 정기적 검토):		연락 담당자의 이름:			
그룹/학급:		연락번호:			
		관련 스텝:			
행동/이슈	위험 식별 및 관련 위험 유형/원인	위험척도	위험 제거 또는 컨트롤 방법	누가	언제
기록 보관	출생성별의 식별 가능성	높음	모든 학교 정보(기타 학교에서 관리하는 전자 기록 시스템 포함)를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과 식별된 성별을 반영하도록 수정한다.  학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카드(예: 학교 도서관 카드)는 재발급 한다.  선호하는 이름과 식별된 성별을 반영한 버스와 기차 승차권	교장	즉시
현재 정보의 필요성	학생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의 변화를 모르는 학교  *학년에 재학중인 동료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모르는 학교	높음	학교 내에서 가족과의 한 접점을 설정한다. 만약 접점인 사람이 부재중이고, 긴급한 사안이 있다면 교장과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자들은 어떤 관련있는 진행상황 및/또는 이슈에 대해 학교에 지속적으로 알린다.  보호자들은 학생이나 동료 학생에 대한 우려로 학교에 연락을 취한다.  학교는 학생 지원을 위해 의료 전문가와의 연락을 포함하여 관련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보호자 및 학생과 계획과 학생 이슈를 검토하기 위한 정기 회의를 가진다.	담임교사  YA  교장	즉시  계속  월별 또는 필요할 때
커리큘럼	이해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편견 가능성	중간	PDHPE 4/5단계 커리큘럼을 검토하여 차이, 성별, 편견 및 차별과 관련된 문제가 강조되고 다루어지도록 보장한다.	DP	즉시 그리고 계속

#### 4. 성소수자 포용적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구들

##### 1) LGBT YOUTH SCOTLAND<sup>120)</sup>

스코틀랜드의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단체 ‘LGBT YOUTH SCOTLAND’는 포용적인 학교환경을 위해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포스터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 ① 「포용적인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한 10가지 팁」 포스터



120) LGBT YOUTH SCOTLAND. RESOURCES. 원문 링크:

<https://www.lgbtyouth.org.uk/resources/>

② 「교실문 표지판(CLASSROOM DOOR SIGN)」



## 2) GLSEN - 「성소수자 포용적 학급 자원 개발하기」<sup>121)</sup>

GLSEN은 성소수자 포용적 학급을 만들기 위한 실천 지침과 고려할 점 등을 담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배포하고 있다.

### 교실과 학교환경

당신이 성소수자 혐오적 호명이나, 괴롭힘 및 따돌림을 목격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시오.

1. 즉시 혐오적 호명이나 괴롭힘 및 따돌림에 대해 다룹니다.  
그 순간에 행동을 멈추는 데 집중하세요. 때때로 "그 언어는 교실에서 용납될 수 없다"와 같은 말은 경멸적인 용어를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간단한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곧 행동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No action is and an action).
2. 행동에 이름을 붙입니다. 당신이 본 것을 묘사하고 행동에 라벨을 붙이세요. "그 단어는 경멸적이고 욕설로 여겨진다. 그 말은 용납할 수 없다"
3.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을 활용하세요(또는 만드세요). 행동을 멈춘 후 반드시 교육하세요. 지금 당장 교육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할 것인지, 그리고 공개적으로 할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결정하세요. 만약 당신이 나중에 교육하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 학급, 전체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허용 가능한 언어와 행동에 대해 가르칠 수 있습니다.
4. 대상 학생을 지원합니다. 욕설, 괴롭힘과 따돌림의 대상이 된 학생을 지지하세요. 학생이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추측하지 마세요. 학생에게 무엇이 필요하거나,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당신은 이것을 지금 당장 할지 나중에 할지, 그리고 공개적으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5. 학생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학교의 정책을 확인하고 적절한 결과를 받도록 하세요. 징계조치가 모든 유형의 욕설, 괴롭힘, 따돌림에 고르게 적용되도록 하세요. 자세한 내용과 지원은 [www.glsen.org/safespace](http://www.glsen.org/safespace)에서 GLSEN의 안전한 공간 키트를 참조하십시오.

이 밖에도 GLSEN의 위 자료에는 성소수자 포용적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학년별로 제시하고 있고, 이 자료들은 GLSE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1) GLSEN. Developing LGBTQ-Inclusive Classroom Resources. 원문 링크:

<https://www.glsen.org/activity/inclusive-curriculum-guide>



### 3) ReBit - 「Ally Teacher's Tool Kit」<sup>122)</sup>

Rebit은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아동·청소년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받으며 어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주로 학교에서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는 일본 NGO다. 이 단체에서는 ‘모든 학교를 성소수자 아동에게도 다니기 쉬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교직원 연수용 지지자 교사(Ally teacher) 키트를 제작·배포하고, 해당 키트를 활용한 교사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해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사임을 주변에 알릴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수료증을 받은 교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원해, 전국 교사들의 연결을 만들고 정기적인 모임, 실천 공유 등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4) WE ARE TEACHERS<sup>123)</sup>

미국 내 교사들이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공유하는 WE ARE TEACHERS 홈페이지에는 성소수자 포용적인(LGBTQ-Inclusive) 교실을 만들기 위한 팁과 아이디어, 자료를 모아 게시하고 있다.

122) Rebit. Ally Teacher's Tool Kit. 원문 링크: <https://rebitlgbt.org/project/kyozai/teacher>

123) WE ARE TEACHERS. LGBTQ-Inclusive Classrooms. 원문 링크: <https://www.weareteachers.com/hub/lgbtq-inclusive-classro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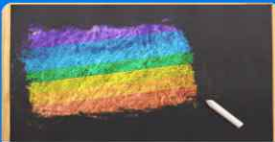
WE ARE  
TEACHERS

## LGBTQ-Inclusive Classrooms

Resources for developing a more inclusive classroom environment.

### Tips & Ideas

Ideas for supporting students, no matter their identity.



Making Your School a Safe Space for LGBTQ Students

5 Ways



Learn How Teachers Can Support Trans Kids

5 Methods



Tips for Creating a More Gender-Inclusive Classroom

7 Tips



Teach Gender Inclusive Science

4 Ways



Address Gender- and Sexuality-Based Teasing

6 Ways



Help Transgender Students in the School Community

Help Them Thr



Why Inclusive Sex Ed Is So Important

Keep Kids Safe



Do You Teach Diversity & Inclusion?

Evaluate Today



Ways To Teach Personal Pronouns in the Classroom

5 Myths

[We are teachers 홈페이지 내 LGBTQ-Inclusive 관련  
팁과 아이디어가 아카이빙 되어 있는 페이지]

5) 미국 보건복지부 -「학교에서의 성소수자 포용성-자체 평가 도구」<sup>124)</sup>

미국 보건복지부는 학교장, 교육담당자, 보건 서비스 직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학교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평가 도구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이 도구는 학교와 학군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요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모든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포괄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현재의 정책, 프로그램 및 관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섹션1 : 모든 사용자를 위한 평가 (10문항)**

**1.1 신념, 추정과 편견들**

평가 영역	응답 옵션/등급: A, B 또는 C
1.1a-나는 성별, 성별정체성 및 성적지향은 복잡할 수 있고, 개인에게 고유하며, 연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A-이 문장은 나에게 아주 많이 부합한다. B-이 문장은 나에게 적당히 적용된다. C-이 문장은 나에게 최소한으로 적용되거나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1.1b-나는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자신과 다른 사람의 태도가 우리의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A-이 문장은 나에게 아주 많이 부합한다. B-이 문장은 나에게 적당히 적용된다. C-이 문장은 나에게 최소한으로 적용되거나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1.1c- 나는 학생의 성별, 성별정체성 또는 성적지향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A-나는 학생의 성별, 성별정체성 또는 성적지향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B-나는 때때로 학생의 성별, 성별정체성 또는 성적지향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C-나는 학생의 성별, 성별정체성 또는 성적지향을 언제든지 확정할 수 있습니다.

124)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0). LGBTQ Inclusivity in Schools: A Self-Assessment Tool. 원문 링크: [https://www.cdc.gov/healthyyouth/disparities/mai/pdf/LGBTQ\\_Inclusivity-508.pdf](https://www.cdc.gov/healthyyouth/disparities/mai/pdf/LGBTQ_Inclusivity-508.pdf)

1.2. 용어 및 언어사용

평가 영역	응답 옵션/등급: A, B 또는 C
1.2a-나는 학생들의 연애관계를 묘사할 때 가정하지 않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예: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대신 '파트너').	A-나는 항상 그렇게 한다. B-나는 때때로 그렇게 한다. C-나는 거의 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1.2b-나는 학생, 동료 및 커뮤니티 구성원과 의 대화에서 포용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예: 개인의 친구, 가족구성원, 연애관계에서 성별 을 가정하지 않고, 개인이 선택한 이름과 호칭 을 사용함).	A-나는 항상 그렇게 한다. B-나는 때때로 그렇게 한다. C-나는 거의 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1.2c- 나는 출입말과 대명사를 포함한 모든 학교환경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이름 을 사용한다. (예: Jim vs. James; Natalie (she, her) vs Nathan (he, him))	A-나는 학생이 선택한 이름과 호칭을 사용하고, 내 동료들에게도 학생이 선택한 이름과 호 칭을 사용하도록 독려한다. B-나는 학생이 선택한 이름과 호칭을 사용한다. C-나는 오직 학생의 법적 이름과 호칭을 사용 한다.

5. 요약과 함의

1) 법과 제도 - 성소수자 포용적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한 토대

학교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등 국가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를 일찍부터 마련하였다. 눈여겨볼 것은 기본적인 법과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괴롭힘의 형태(예: 사이버 폭력)를 반영하거나, 괴롭힘과 차별의 이유가 되는 소수자성(예: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출신국가 등)의 범위를 점점 더 넓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국가에 의한 공적 보호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폭력은 평등하지 않은 사회구조와 분위기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성차별금지법'(미국), '평등법'(영국)을 근거로 교육기관에

서의 차별을 금지하면서 더 나아가 모든 학생을 포용하는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캐나다)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법과 제도는 성소수자 학생을 포용하는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일 기본적인 장치이며, 법과 제도를 잘 실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환경 조성과 성소수자 학생 보호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 아동부 등 정부 부처에서 성소수자 학생(아동) 차별금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프랑스, 포르투갈, 브라질 등).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는 성차별금지법에서 금지되는 차별 사유인 ‘성별’의 범위에 ‘성별정체성’을 포함시키는 적극적인 해석을 거듭 공표하고, 그에 따라 일선 학교(관리자, 교사 등)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천사례 및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다.

한편, 법과 제도만으로 학교가 갑자기 평등하고 포용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필리핀의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다양한 국가의 학교들에서 성소수자 학생이 어떤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미 성소수자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효과적인 실행과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에서 괴롭힘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Just Let Us Be” 필리핀의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2017)**

**아동 보호 정책**

2012년 교육부는 아동 학대, 착취, 폭력, 차별, 왕따 및 기타 형태의 학대 행위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담은 아동 보호 정책을 제정했다. 이 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모든 형태의 학교 내 괴롭힘과 차별이 포함된다.

이 정책은 모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아동 보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 그러나 옹호자들이 지적했듯이 아동 보호 정책의 모니터링과 실행은 고르지 않았다. 한 분석에서는 “[불

행히도] 아동보호정책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아 학교에서 LGBT 아동을 돕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2017년 초 LGBT 연대체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LGBT] 아동이 경험하는 폭력의 확산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옹호자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많은 아동 보호 위원회가 LGBT 문제를 인식하거나 다루도록 훈련되지 않았으며, LGBT 청소년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정책과 관행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왕따 금지법

2013년에 필리핀 의회는 2013년 괴롭힘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초등 및 중등 학교에 “해당 기관에서 괴롭힘의 존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지시한다. 이러한 정책은 최소한 학교 내 또는 학교 근처에서 따돌림, 학생의 학교 생활을 방해하는 학교 밖에서 왕따 및 사이버 왕따, 왕따를 보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을 금지해야 한다. 정책은 또한 괴롭힘이 처벌되는 방식을 식별하고, 괴롭힘을 보고하고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학생이 익명으로 괴롭힘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부모 및 보호자에게 괴롭힘 및 학교의 예방 및 해결 정책에 대해 교육하고, 학교 내 괴롭힘에 대한 통계 등 공개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 그러나 (...) 이 보고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많은 학생과 관리자는 학교 괴롭힘 정책을 모르고 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왕따를 보고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왕따를 보고하는 방법이나 자신이나 가해자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른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보고된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발표한 데이터 세트는 SOGI를 기반으로 괴롭힘을 분류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괴롭힘이 발생하는 시기 또는 예방에 효과적인 단계를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

그럼에도 필리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관련 법과 교육부 정책에 성소수자 정체성을 포함한 ‘성별 기반 따돌림’을 금지한 것이 2013년의 일이라는 점에서, 2022년 현재까지도 일부 지역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외에 국가적 책임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 2) 학교시설 및 시스템 개선 - 모두를 위한 학교를 위해

미국은 원칙적으로 학생이 자신이 정체화하는 성별정체성에 부합하는 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개인(독립) 사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트랜스젠더 학생이 별도의 1인용 시설을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화장실, 탈의실, 보건과 체육 수업, 경쟁적인 운동 경기, 수학여행, 홈커밍이나 무도회는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을 다시 확인시키기 때문에 가장 논란이 되는, 분명하게 성별화된 공간의 예시이다’ - [참고자료 2]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일이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다’면서 ‘사람들이 처음에 갖는 본능적인 반응을 넘어서서 젠더 다양성과 모든 학생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전국 수십 개의 학교들이 이미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시했다. 이 지침은 ‘남학생이 여학생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합니까?’와 같은, 학부모나 교사, 학교 관계자가 제기할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도 제시한다.

캐나다 앨버타주는 ‘학교현장 실천 지침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들이 화장실과 탈의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앨버타주 역시 성별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접근이 쉬운 성중립 화장실을 하나 이상 배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만약 트랜스젠더 및 젠더퀴어 학생과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공유하기를 거부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있는 경우, 트랜스젠더 및 젠더퀴어 학생이 아니라 거부하는 그 학생에게 대안적인 시설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본문에서도 언급하였듯, 영미 국가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지침을 두고 있다. 일본 교육부의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세심한 대응의 실시’ 지침에 따르면 화장실과 탈의실 이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성별정체성에 맞는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실, 다목적 화장실, 직원 화장실’ 등 별도의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트랜스젠더 학생에의 배려와 다른 학생들에의 배려의 균형을 맞추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존재 자체를 부적절하고, 불편한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금까지의 학교환경이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얼마나 배려 없는 환경이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의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 가이드라인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트랜스젠더 학생과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해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언뜻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종종 트랜스젠더 남성 청소년이 “진짜” 남자가 아니고, 트랜스젠더 여성 청소년이 “진짜” 여자가 아니며, 트랜스젠더 학생이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공간에 출입하기를 원한다는 잘못된 통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학교는 이런 문제와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그런 행동은 모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학교의 약속을 위반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단순히 트랜스젠더 학생의 존재가 부적절한 행동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트랜스젠더 학생과 공간을 같이 쓰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양호실의 화장실 같은 다른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트랜스젠더 학생이 다른 학생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다른 공간을 쓰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존중이 출발점이어야 하고, 불편한 것이 안전하지



않은 것과 같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학교 당국(school officials)은 모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이 핵심 개념들은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적절한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만약”의 상황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 3) 교육·교육과정 - 성소수자 포용적 교육과정

캐나다는 2013년 ‘캐나다의 LGBTQ 포용적 교육을 위한 모든 선생님 프로젝트 보고서’[참고자료 6]에서 전국 3400여 명의 교육자를 대상으로 ‘LGBTQ 포용적 교육’의 일환인 ‘모두의 선생님 프로젝트(Every Teacher Project)’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교육자 집단은 ‘모두의 선생님 프로젝트’를 매우 지지하고 있으며, LGBTQ 포용적 교육에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교육자 집단은 LGBTQ 포용적 교육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현실, 실천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부족하다는 두려움 등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LGBTQ 포용적 학교에 대해 미디어는 마치 종교적 신념과 LGBTQ 포용에 관한 충돌이 마치 두 개의 힘이 늘 반대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경향이 있으나, 조사 결과 LGBTQ 포용적인 교육을 강력히 지지하는 전국의 교육자 집단에는 가톨릭 학교의 교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즉, 조사 결과 이 보고서는 교사들이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를 흔히 추측되는 종교적 믿음이나 도덕적 충돌이 아니라 훈련의 부족과 백래시의 두려움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 보고서의 마지막 ‘행동 제안’ 파트에서는 정부와 교육구, 학교 행정가, 교사조직, 교사 교육 프로그램, 모든 학교 시스템 고용주, 종교단체를 위한 행동 제안이 각각 정리되어 있다.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 가이드는 성소수자 포용적 교육과정은 학년 수준에 제한 없이 모두에게 필요함을 강조한다. ‘어떤 학년 수준이든 학생들과 함께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의 트랜지션을 지지하는 동시에 모든 청소년들의 성별 정체성과 성별표현을 위한 더 큰 인식과 장소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 4) 또래집단 및 혐오·차별 대응

정체성을 이유로 한 또래에 의한 학교 내 괴롭힘은 전 세계적 문제이며, 매일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 내 괴롭힘 때문에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sup>125)</sup>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학교 괴롭힘 방지와 관련한 법률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과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학교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학교 당국 등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학생 간의 관계를 규율하거나 학생에 대한 처분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학생 간에 성소수자 혐오성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법 위반의 책임은 학교에 있다.

*‘평등법은 학교가 학생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한 법안이며, 학생 간의 관계는 평등법이 다루는 범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학생들 간의 동성애 혐오나 인종주의와 같은 이슈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동성애 혐오와 관련한 혐의를 묵살하거나 트랜스젠더 학생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실패했다면, 그 학교 주체는 평등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sup>126)</sup>*

*‘모든 교육구는 성별정체성을 다루는 비차별 및 괴롭힘 정책을 가져야 하지*

12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원문 링크:  
[https://www.unesco.or.kr/upload/data\\_center/2013\\_%EB%8F%99%EC%84%B1%EC%95%A0%ED%98%90%EC%98%A4%EC%84%B1%EA%B4%B4%EB%A1%AD%ED%9E%98%EC%97%86%EB%8A%94%ED%95%99%EA%B5%90.pdf](https://www.unesco.or.kr/upload/data_center/2013_%EB%8F%99%EC%84%B1%EC%95%A0%ED%98%90%EC%98%A4%EC%84%B1%EA%B4%B4%EB%A1%AD%ED%9E%98%EC%97%86%EB%8A%94%ED%95%99%EA%B5%90.pdf)

126) [참고자료 7] 영국 - 2010년 평등법과 학교.

만,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육구는 또한 연구 기반 개입을 통해 따돌림과 괴롭힘을 해결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학 및 퇴학 등 학생을 교육환경에서 퇴출시키는 “무관용” 조치를 하는 징벌적 정책은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에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학 및 퇴학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대신에 부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데,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진 이유인 LGBTQ 유색인종, 장애 학생에 대해 불균등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괴롭힘에 맞서 싸우는 LGBTQ 학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과 긍정적인 행동 개입과 지원은 학교 분위기를 개선하고, 괴롭힘과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대안의 두 가지 사례이다. 괴롭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 전체에 포용과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캐나다 앨버타주의 가이드<sup>127)</sup>는 학교의 책임으로, ‘괴롭힘이나 폭력을 방지하고 또 건강한 관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통합적인 학교 전체 참여형 접근법을 사용하라,’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속감과 자아존중감을 기를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학생들이 일조할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한다.

#### 9. 괴롭힘이나 폭력을 방지하고 또 건강한 관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통합적인 학교 전체 참여형 접근법을 사용하라.

- 직원들은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 혐오성 괴롭힘을 포함한 괴롭힘 행동의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 정서적 학습과 건강한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포괄적인 학교 전체의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 학생 행동강령은 직원, 학생, 가족 및 학교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개발된다.
- 행동강령은 학교법 제45.1절에 명시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 행동강령의 주요 초점은 학생들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공감능력을 발전시키

127) [참고자료 5] 캐나다 앨버타주 - 학교현장 실천 가이드라인.

며 다양성을 배양하고 소속감과 긍정적인 자아 의식을 기르는 환영, 배려, 존경, 안전한 학습 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학부모와 가족을 포함한 학교 공동체의 모든 성인 구성원들은 학생 행동강령을 이해하고 지지한다.
- 학교에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신고 절차가 있고 학생들은 신고하는 것에 안전함을 느낀다.
- 차별적이고 괴롭히는 언행과 행동에 대한 모든 문제제기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기록되고, 적시에 효과적으로 처리된다.
- 괴롭힘 행위에 연관된 학생과 괴롭힘 행위의 영향을 받는 학생 모두에게 지원이 제공된다.

#### 10.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속감과 자아존중감을 기를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학생들이 일조할 수 있도록 교육하라.

-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행동 기대치(behavioural expectaitons)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입증한다.
- 학생들은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존경, 연민(compassion) 그리고 친절함으로 대한다.
- 학생들은 괴롭힘 행동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 학생들은 차별적이고 괴롭히는 언행을 삼간다.
-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괴롭힘 행위를 지켜보고, 참여하고, 격려하거나, 방관자로 행동하는 것을 삼간다.
- 학생들은 그들이 보거나 경험하는 모든 괴롭힘 행위(온라인 괴롭힘 포함)를 학교의 성인에게 보고한다.
- 학생들은 학교와 온라인 모두에서 괴롭힘 행위와 경멸적이거나 차별적인 언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 학생들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학교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위한 공식적인 방법과 비공식적인 방법을 모두 파악한다.
- 학교 커뮤니티는 학생들이 또래 멘토링, 또래 네트워크, 서비스 학습, 학생 조연자,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활동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 학생들은 그들이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또는 퀴어-비퀴어 동맹을 포함한 다양성을 촉진하는 환영, 배려, 존중, 안전한 학습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발적인 학생 단체를 설립하거나 활동을 이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 가이드는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생들이 이러한 이슈들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여기지만, 전국의 학교에서의 경험은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어릴수록 또래의 진정한 젠더에 대한 주장을 이해하는 생각과 역량이 훨씬 더 유연하다’고 강조한다.

## 5) 교직원의 책임과 역할

캐나다<sup>128)</sup> 성소수자 학생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직원의 능력을 강화하는 전문성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캐나다의 유콘 준주는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과 그 가족이 환영, 포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략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각 학교의 최고 관리직은 반드시 학교 직원 한 명을 지정하여 성소수자 학생을 지원할 때 ‘안전한 연락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29)</sup>

호주 교육부가 제공하는 ‘지원 및 위험관리 플랜’<sup>130)</sup>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위기, 학교 내 활동 내용에 따라 학교 최고 책임자(교장 등),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어떠한 책임과 역할을 갖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교직원의 책임과 역할의 근거는 교직원이 ‘매일 학생과 상호 작용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교직원은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대한 고유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미국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실천의 예시’<sup>131)</sup>는 다음과 같이 교직원에 대한 교육의 예시를 제공한다.

128) [참고자료 5] 캐나다 앨버타주 - 학교현장 실천 가이드라인.

129) 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 Canadian Civil Liberties Education Trust. (2014). LGBTQ rights in school.

130) [참고자료 9]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정부 - 지원 및 위험관리 플랜.

131) [참고자료 1] 미국 -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실천의 예시

학교는 모든 교직원에게 트랜스젠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을 적절하게 대우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안전, 건강, 비차별적인 학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을 강화할 수 있다.

- 메사추세츠 지침은 교수진과 교직원 교육시 다음과 같은 주제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젠더 정체성/표현과 관련된 핵심적인 단어; 젠더 정체성의 발달; 트랜스젠더와 다른 젠더 비순응 학생의 경험;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 학생에 관한 위험과 회복탄력성 데이터;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고 젠더 비순응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성중립적인 언어와 실천방법.”
- El Rancho 규정은 교육감 또는 지명된 담당자는 고용인, 자원봉사자, 부모/보호자에게 구의 차별금지 정책; 무엇이 금지된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을 구성하는지; 어떻게 그리고 누가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해야하는지; 학생에게 교육, 보호, 감독 또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생을 분리시키고 정형화하는 것에 반대해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렇게 제공되는 정보와 교육은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 학생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지침을 포함해야한다.

## 6) 보호자에 대한 대응

해외 가이드라인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가 트랜스젠더를 지지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학생 당사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대응방법을 세심하게 제시하고 있다.<sup>132)</sup> 가이드에서는 학교가 청소년이 가족 거부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트랜스젠더 학생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장소일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트랜스젠더 학생의 프라이버시 및 비밀보호와 관련하여 학교가 학생의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강조된다. 교직원 등 구성원은 법적으로 요구되거나 학생이 공개를 허가하지 않는 한, 학부모나 보호자 및 기타 교직원 등 다른 사람에게 학생의 트랜스젠더 상태를 드러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또한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라도, 가능하다면 학교는 학생들 스스로가 이

132) [참고자료 1] 미국 -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실천의 예시, [참고자료 2] 미국 -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 5장 복잡한 이슈들.

를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sup>133)</sup>

미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초등학생들까지도 학교에서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고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관리자와 교육자들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많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상당한 수준의 가족 거부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초등학생이 학교에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트랜지션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경우, 학교는 학생과 대화하여 부모 등 보호자가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안전한지, 당사자의 건강과 복지를 지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학교는 트랜스젠더를 지지하지 않는 부모 및 보호자와 생활하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학교 상담 및 학교 GSA(성소수자 지지자 모임)를 통한 동료지원, 외부자원으로의 소개와 같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이 가족의 거절에 대처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야 하며, 가능한 경우 가족구성원들의 이해와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sup>134)</sup>

보호자에 대한 대응은 성소수자 학생의 보호자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성소수자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다른 학생의 보호자가 제기하는 우려에 대한 대응도 포함된다. 미국의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 가이드는 모든 학생들을 위하여 젠더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하기 포인트(Talking Point)’를 개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7) 프라이버시 및 비밀보호

성소수자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133) [참고자료 3] 미국 - 트랜스젠더와 성별비순응 학생에 대한 학교정책 모델. 프라이버시/비밀보호.

134) [참고자료 3] 미국 - 트랜스젠더와 성별비순응 학생에 대한 학교정책 모델. 학생 트랜지션.

것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프라이버시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비밀보호는 당사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트랜지션할 때 제기되는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는 학교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이 학생들의 젠더 트랜지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지 여부이다. 단순히 대답하자면 “아니다.” 학생의 트랜스젠더 정체성 (transgender status), 출생 당시 지정된 법적 이름과 성별(sex assigned at birth)은 의료 기밀 정보이며, 개인 신상 정보로 보호된다.”<sup>135)</sup>*

앞서 강조한 것 같이 설령 학생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한, 학교는 정체성에 대해 알려서는 안 된다. 성소수자 학생이 정체성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정체성으로 인한 혐오성 괴롭힘,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의 부정과 폭력이 발생할 것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는 성소수자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성소수자 학생이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환경을 만드는 것, 트랜스젠더를 지지하지 않는 부모 및 보호자와의 사이에서 학생을 지지하고 보호자를 설득하는 중재자의 역할 등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35) [참고자료 2] 미국 -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



## IV. 제언

---

## IV. 제언

### 1.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sup>136)</sup>

#### 1) 차별금지 원칙과 구제

-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교육 관련 법·제도 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보장 관련 항목 신설
- ▶ 학생인권기본계획 등에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이행
- ▶ 교육감 등 주요 정책 결정권자의 성소수자 인권 증진 의지 표명
- ▶ 성소수자 학생의 현황, 차별·폭력 경험 및 대응, 상담·교육·위기지원 관련 통계 수집, 분석 및 보고
- ▶ 인권·성평등 전담부서 내 성소수자 인권 관련 예산 배정 및 전문가 배치

한국에서 현재 시행되는 교육 관련 법률이나 제도 중 「국가인권위원회법」,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에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혹은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보호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선언적 규정에 그치며, 그중 가장 세부적인 실천지침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서도 장애학생·빈곤학생·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편의 제공,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은 교육활동 소외 방지,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학습·경험의 기회 제공 등(동 조례 제28조 제4항 내지 7항) 보다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담고 있으나, 성소수자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동

136) 국가인권위원회, 장서연 외,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2014)의 제언 부분을 참조하여 작성함

조례 제28조 제8항)고 하여 단지 소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등 교육 관련 법 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보장과 관련 항목을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성소수자 학생 당사자를 포함한 인터뷰 대상자들 및 자문단은 공통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성소수자 학생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사회 전반의 변화를 위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법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교육관련법의 변화와 더불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의 변화와 더불어 교육부 및 교육청 정책 차원에서의 변화도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살펴보면,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의지를 담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보호할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타까움을 남긴다. 더불어 해당 계획은 성소수자 외 타 소수자 학생(장애학생, 다문화학생, 학생선수)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보호 및 지원책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성소수자 학생 역시 ○ 성소수자 학생 인권지원단/지원센터 운영 ○ 성소수자 학생인권침해 예방 연수 시행 ○ 성소수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 ○ 성소수자 학생 상담 강화 및 정기적 실시 등의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학생인권종합계획이나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 계획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다음 항목부터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프랑스, 포르투갈, 브라질 등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 관련 정책의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성소수자 인권 증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그 대표자로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나 학생

인권 관련 부서의 총책임자 등이 그러한 의사 표명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휴먼라이츠워치는 단순히 법과 제도의 수립만으로 성소수자 학생들의 괴롭힘과 차별이 사라지는 않으며, 그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실행 및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함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안한 법·제도적 변화와 함께 ○ 성소수자 학생의 수 및 정체성(학생 대상 통계 내 성별정체성·성적지향·성별표현 관련 항목 신설 등) ○ 성소수자 학생이 경험하는 차별·폭력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응 ○ 성소수자 학생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상담·교육·위기지원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해 추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통계 조사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성별표현으로 인한 차별·폭력 경험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 예산 항목 중 ‘성소수자’를 전면적으로 언급하여 배정된 예산은 없으며, 성평등팀 내 ‘성인권정책전문관’이 존재하나 그 업무분장 등에 ‘성소수자’와 관련한 항목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 내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관련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그를 위한 사업 시행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모든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성평등 전담부서 내에 성소수자 인권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및 관련 전문가를 배치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학교시설·제도

- ▶ 학교시설 사용 및 교육과정 내 성별이분법적 제도 및 관행 개선
- ▶ 다양한 성소수자 학생과 더불어 생활하기 위한 학교 구성원 대상 정기적 교육·매뉴얼 배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성소수자 학생들은 성별이분법적으로 구획된 학교환경에서 본인이 원하는 성별에 따른 시설 이용 및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반 편성, 화장실·탈의실·샤워실 사용, 교복 착용, 두발 규정 적용, 출석번호 부여, 졸업사진 배치, 수업 및 자율활동 진행 등에서 해당 학생이 본인이 정체화하는 성별에 부합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학교 내 지침 등으로 명시하며 교사·직원 등 학교 구성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학생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독립) 사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시설의 예로는 성중립/1인용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이 있다. 동시에 트랜스젠더 및 이분법적 성별 중 하나로 정체화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교사용 화장실이나 보건실 등 특별한 시설을 별도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은 오히려 학생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낙인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는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가 비단 트랜스젠더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별표현을 원하는 학생 및 다른 학생들과 온전하게 서로를 이해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학생 모두를 위해서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학교 구성원 사이에서 충분히 공유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변화가 이뤄질 경우, 성소수자 학생을 혐오하거나 배제하려 하는 학생·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부정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사, 학교 관계자가 가질 수 있는 의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매뉴얼을 배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학교 구성원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캐나다 앨버타 주의 ‘학교 현장 실천 지침 가이드라인’과 같이 만약 트랜스젠더 및 젠더퀴어 학생과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공유하기를 거부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만들어 이를 배포하여야 할 것이다.

### 3) 교육·교과과정

- ▶ 교과과정에 성소수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및 성소수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국내·외 규범 제시
- ▶ 다양한 성별정체성·성적지향·성별표현 및 청소년의 섹슈얼리티 탐색·실천을 긍정하는 포괄적 성교육 실현
- ▶ 교과과정 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 정기 모니터링 및 개선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 가이드 및 교사 인터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소수자 포용적 교육과정이 학년 수준에 제한 없이 모두에게 적절히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교과과정에는 성소수자와 관련해 다루는 부분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나마도 해당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개별 교사의 인식 및 역량 수준에 따라 고르지 못한 수준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과과정에 성소수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및 성소수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국내·외 규범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포괄적 성교육을 통해 다양한 성별정체성·성적지향·성별표현 및 청소년의 섹슈얼리티 탐색·성적실천을 긍정하고 성소수자 혐오·차별을 지양하는 가치관을 함양하면서 기존 교과과정 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 4) 또래집단 및 혐오·차별 대응

- ▶ 학교 내 괴롭힘 방지 관련 법률 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괴롭힘에 대한 금지 조항 신설

▶ 혐오·차별·괴롭힘 피해를 입은 성소수자 학생들이 신뢰감·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신고·상담 시스템 구축 및 홍보

▶ 학교 내 성소수자 인권지지를 위한 조직 구성·지원 및 표식 부착

인터뷰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현장의 차별과 괴롭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차원에서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학교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학생 지원과 관련한 기존 매뉴얼에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괴롭힘의 특수성과 취약성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내 괴롭힘 방지 관련 법률 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괴롭힘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으로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신뢰감·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학교폭력 신고·상담 시스템을 마련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차별·괴롭힘에 대하여 가해 학생을 교육환경에서 퇴출시키는 ‘무관용’ 조치 등 징벌적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전반적인 학교 교육 분위기에 해로우며, 실제로 괴롭힘에 맞서 싸우는 성소수자 학생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sup>137)</sup> 징벌적 사법 중심인 기존 ‘학생간 폭력’ 대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회복적 교육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 성소수자 인권지지 동아리 및 자치활동을 보장·지원하고 포스터, 깃발, 지침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학교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공간임을 알리는 표식을 부착하여야 할 것이다.

## 5) 교직원의 책임과 역할

▶ 교사양성 및 직무연수 교육 시 성소수자 인권교육 실시

137) 캐나다 앨버타주 ‘학교현장 실천 가이드라인’

- ▶ 학교폭력·성폭력·인권 등 관련 직무 담당 교직원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교육 강화 및 외부전문기관과 연계
- ▶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실시한 교사에 대한 보호방안·보상체계 수립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이자 학생 생활교육·인권보호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 인권교육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양성 및 직무연수 교육과 같이 교사 자격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교육 시에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학교폭력·성폭력·인권 등 학생 성소수자와 직접 대면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교직원들은 반드시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나아가 학교나 교육청 내의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다 전문성이 있는 외부 성소수자 인권단체 등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더불어 실제로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실시한 교사가 민원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호방안을 수립해야 할 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포상·승진 등에 성소수자 인권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6) 보호자에 대한 대응

- ▶ 성소수자 학생 보호자에 대한 개인·가족 상담 제공
- ▶ 학생의 보호자, 특히 학교운영위원 대상 성소수자 인권교육 실시
- ▶ 학생 보호자 대상 성소수자 인권 관련 홍보물 및 교육자료 배포

성소수자 학생은 통상 아동·청소년기라는 발달단계에 속해 있으므로 해당 학생의 보호자의 관점과 반응에 따라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는 성소수자 학생 당사자뿐 아니라 성소수자 학생 보호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는 성소수자 인권에 전문성을 가진 상담사에 의한 개인·가



족 상담 제공, 성소수자 인권교육 실시, 성소수자 인권 관련 홍보물 및 교육자료 배포 등을 들 수 있다.

## 7) 프라이버시 및 비밀보호

▶ 본인의 동의 없이 학생의 성적체성·성적지향을 타인에게 노출한 경우 이에 대한 징계 및 처분 조치 규정

▶ 교육기관 내 학생의 성적체성·성적지향 정보에 대한 관리 지침 마련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28조 제8항 내 ‘보호자’를 예외로 규정한 부분 수정

다수의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본인의 성적체성·성적지향 등 정보가 본인 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알려진 경험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 학생의 성적체성·성적지향을 타인에게 노출한 경우 이에 대한 징계 및 처분 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육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육기관이 학생의 성적체성·성적지향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 이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폐기할 것인지 등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28조 제8항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자’의 경우 성소수자 학생 본인의 동의 없이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 2. 학생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진들은 아래와 같은 학생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한다. 가이드라인(안)은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고려하여야 할 목차 및 각 항목별로 참조할 수 있는 해외 자료를 함께 정리하였다. 아래 가이드라인(안) 및 본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여 교육현장의 다양한 단위들에서 학생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지침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학생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 목차(안)

#### 1. 목적

- 소수자 차별 예방을 통한 모든 학생의 안녕감 증진과 학교 구성원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

[제안]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호가 필요한 이유와 중요성에 대한 정부(교육부 등), 교육청, 교육감 차원의 명시적인 선언이 들어갈 것. 다음 자료들을 참고해볼 수 있다.

- 미국 교육부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실천의 예시’
-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 - 미국 K-12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에서 ‘교육감의 편지’

#### 2. 정의

- 성소수자, 차별 등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제안] 성소수자와 관련한 기본적 정체성 관련 개념(ex. 트랜지션, 디스포리아 등), 특권과 소외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에 관한 용어들(ex. 이성애 규범성, 호모포비아, 성별이분법 등), 교육 관련 용어(Wee클래스, 포용적 교육, 성교육표준안 등)의 설명이 포함될 것.

-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 - 미국 K-12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에서 ‘교육감의 편지’

- ‘캐나다의 LGBTQ 포용적 교육을 위한 모든 선생님 프로젝트’
- ‘트랜스젠더와 성별비순응 학생에 대한 학교정책 모델’

### 3.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장 가이드라인 원칙

[제안] 학생들의 욕구와 필요는 아주 다양할 수 있으며, 다만 가이드라인을 관통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할 것. 이때 포괄적인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다양한 정체성에 따라 특별히 요구되는 권리보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세심하게 마련할 것.

-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 - 미국 K-12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에서 ‘가이드라인의 원칙(Guiding Principle)’
- ‘트랜스젠더와 성별비순응 학생에 대한 학교정책 모델’에서 ‘정책의 목적’
- ‘학교현장 실천 가이드라인: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존중하는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에서 ‘가이드라인의 원칙’

### 4. 관련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소수자 학생의 현황, 차별·폭력 경험 및 대응, 프라이버시 침해 및 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실태, 상담·교육·위기지원 관련 통계 수집, 분석 및 보고
- 효과적인 다양성 정책 및 학교문화 구축 사례 발굴 및 자료화
- 학교 내 성소수자 차별 문제 해결 사례 발굴 및 자료화
- 다양성을 저해하고 차별을 야기하는 교과서 및 학교 규칙 실태조사
- 기존 인권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

### 5. 차별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실례(가이드라인)

#### (1) 학교시설 및 시스템상 차별 개선

[제안] 특히 트랜스젠더 및 성별비순응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성별 분리활동(체육수업 등), 시설(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등), 학생부기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배제를 없애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 더 나아가 트랜스젠더 및 성별비순응 학생이 자신의 성별에 맞는 의복 및 도구(가발, 브래지어, 패커, 바인더 등)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1인 화장실이나 탈의실)과 시스템(학교 복장규정 등)을 개선할 것.

-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 - 미국 K-12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에서 ‘필수 요소 & 실천 팁’
- ‘트랜스젠더와 성별비순응 학생에 대한 학교정책 모델’에서 ‘성별분리 활동 및 시설에의 접근성’, ‘드레스코드’ 등
- 미국 교육부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실천의 예시’

- ‘학교현장 실천 가이드라인: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존중하는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2) 성소수자 포용적 교과과정

[제안] 초등~고등학교에 이르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교육내용이 발달단계에 맞추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과목별 주제, 자료를 제시할 것. 성소수자 포용적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겪을 수 있는 어려움(학생과의 논쟁, 보호자의 민원 등)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 이때의 교육내용은 반드시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아야 하며, 학생의 의사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 역시 개방되어야 함. 성소수자 인권보장의 역사 등 성소수자 공동체 자긍심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될 필요 있음.

- ‘캐나다의 LGBTQ 포용적 교육을 위한 모든 선생님 프로젝트 보고서’
- 미국 뉴욕시 교육부가 공개하고 있는 HIV/AIDS 커리큘럼(2012)<sup>138)</sup>은 초등~고등학교교육과정(K-12)별 HIV/AIDS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단순히 감염과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인/비감염인이 우애를 나눌 수 있는 권리’ 등 포괄적이고 권리 지향적인 교육의 목적을 밝히고 있음. 또한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HIV/AIDS 교육의 의미와 구체적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안내문 예시를 제공하며, 교육부가 하는 일과 역할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3) 또래집단 및 혐오차별 대응

[제안] 학교폭력예방법, 학생인권조례 등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괴롭힘 및 혐오·차별은 금지되며,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혐오·차별에 책임을 갖고 단호히 대응해야 함을 확인할 것. 성소수자 학생이 겪는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학교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 구체적 예시 및 절차를 제안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지원할 것.

- 캐나다 온타리오 ‘학교 괴롭힘 방지법’
- 미국 교육부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실천의 예시’

(4) 교직원의 책임과 역할

[제안] 교사는 매우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그렇기에 교사의 행동과 책임은 법령 등에서 정한 것보다 더 넓고 깊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함.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장 등 교직원이 성소수자 학생 지원을 위해 부담하는 책임과 역할을 나누어 제시할 것. 교직원의 능력을 강화하는 전문성 훈련 프로그램, 대응 매뉴얼, 교육 등을 마련하고 제공할 것.

- ‘2010년 평등법과 학교 - 학교 관리자 및 직원, 학교 및 학원의 관리 기관, 그리고 지방정부 당국을 위한 영국 교육부의 조언’

- 미국 교육부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실천의 예시’
- ‘학교현장 실천 가이드라인: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존중하는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 일본 Rebit ‘Ally Teacher Tool Kit’
- 미국 보건복지부 ‘학교의 성소수자 포용성: 자가 진단 툴’

#### (5) 보호자에 대한 대응

[제안] 성소수자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에 따른 개별적 대응방법을 마련할 것. 특히 성소수자 학생이 보호자에게 커밍아웃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폭력 등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비성소수자 학생의 보호자의 우려, 민원에 대한 대응방법을 제시할 것.

-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 - 미국 K-12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에서 ‘복잡한 이슈들’ 부분, 부록 ‘말하기 포인트’ 등
- 미국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실천의 예시’
- ‘트랜스젠더와 성별비순응 학생에 대한 학교정책 모델’

#### (6) 프라이버시 및 비밀보호

[제안] 학생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은 프라이버시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학급, 상담실 등 학교의 어느 장면에서나 성소수자 학생의 프라이버시 및 비밀보호가 중요함을 확인할 것.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별정체성대로 대우받기를 요청한 경우, 트랜스젠더 학생의 주민등록상 이름, 성별 등의 비밀보호를 위해 학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

- 미국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실천의 예시’
-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 - 미국 K-12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에서 ‘복잡한 이슈들’ 부분, 부록 ‘말하기 포인트’ 등

### 6. 차별 인식과 대응을 위한 학교 구성원 역량 강화 방안

-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포괄적 인권교육
  - : 포괄적 인권교육 : 전반적 인권교육 및 젠더와 차별에 대한 교육
  - : 사례와 실천 중심의 인권교육
- 교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과 교육
  - : 교사 역할과 맥락에 따른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
- 사례 발굴 및 필수 교육화

### 7. 부록

[제안] 교사, 보호자가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예시 답변, 보호자에 대한 안내문 예시 등을 부록으로 제공할 것.

- 미국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실천의 예시’
-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 - 미국 K-12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에서 ‘복잡한 이슈들’ 부분, 부록 ‘말하기 포인트’ 등
- 일본 문부과학성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세심한 대응의 실시’

138) NYC Department of Education, HIV/AIDS curriculum 2012 edition, <https://www.weteachnyc.org/resources/resource/hiv-aids-curriculum-2012-edition/>

# V. 덧붙이는 글

---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 V. 덧붙이는 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이하 '평동')은 2015년 활동을 시작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청소년 성소수자의 고민을 상담하고 이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성소수자지원팀 드림캐처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내 단 하나밖에 없는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지원센터였고, 2022년 현재도 전국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는 곳은 평동 하나 뿐이다.

청소년 성소수자가 나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 신체, 정신적 위기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의 조사와 연구로 확인된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에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환대받고,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는 학교가 오히려 성소수자로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차별,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일반적인 공간(Ferfolja and Ullman 2017; Hill et al. 2021; MacAulay et al. 2021; McBride, 2021)<sup>139)</sup>이라는 점은, 그동안의 유의미한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확인되어 왔다(휴먼라이츠워치(2021),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한국의 학교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평동은 청소년 성소수자들로부터 성소수자로서 학교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듣게 된다. 이들과 상담하면서 때로는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며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들이 매일 같이 마주해야 하는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구체적인 인권침해, 폭력 상황에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대처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을 함께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 자체를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만 같은 한국의 학교, 교육

139) 정성조, 정용림(2022) 청소년 성소수자와 안전공간 - '배제된 이들'이 만들어나가는 대안 공간들', 공간과 사회 2022년 제32권 2호(통권 80호)에서 재인용.



환경 속에서 성소수자 학생이 개인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는 사실 거의 없고, 개인이 그러한 노력을 감당해야 해서도 안 된다. 이런 현실은 학생 당사자 뿐 아니라 교사 등 학교 구성원, 청소년기관 종사자들 중 성소수자 학생을 직접 만나고 있거나 포용적이고 평등한 학교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본 연구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듯 이들은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잘 조력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가이드나 지침이 전혀 없는 현 상황에서, 개인이 가진 자원으로 나름의 방법을 시도하거나 평동에 연락하여 논의를 구하고 있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처음 기획되었다. 평동이 성소수자 학생 또는 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교사 등과 개별 사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 포용적 학교 환경에 대한 국가(교육부) 차원의 원칙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매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확인되었다. 그 과정에서 성소수자 학생에게 필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포용적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들을 이미 많이 연구, 실시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들을 찾게 되었다. 보고서에서 소개한 영미권 국가들은 물론 성소수자 인권 전반의 상황이 한국과 유사한 일본 역시 이미 2016년에 트랜스젠더 학생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국가 주도로 조사하여 다소 한계는 있지만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하고 있었다.

해외의 사례들은 매우 훌륭한 참고자료가 되었지만, 교사 등이 개인의 책임으로 성소수자 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한 조치들을 취하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트랜스젠더 학생의 경우 자신의 성별에 맞는 대우를 시스템, 시설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학교를 넘어서 교육부의 공식적인 연구와 정책, 예산 책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변화의 시작으로, 평동은 법률사무소 이채와 함께 본 연구를 실행하였다.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보장과 관련한 조례 이상의 입법, 교육부의 정책이 전무함을 확인함으로써 이미 존재하는 성소수자 학생을 배제하고 있는 한국의 학교 현실을 지적하고,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는 성소수자 학

생의 인권보장과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듭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실제 배포되고 있는 가이드라인 등을 번역하여 제시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책 마련의 의무가 정부에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가 꾸준히 세계사회로부터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실존하는 한국의 성소수자 학생들을 위해 본 보고서를 시작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 인터뷰로 참여한 청소년 성소수자, 교사, 청소년 기관 종사자 등을 포함해, 보고서 초안에 대한 자문의견을 주신 분들 덕분에 보고서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졌다. 자문의견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초등성평등연구회,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 전국교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에서 서면 형식으로 받아, 부족한 보고서 곳곳에 반영하였다. 다만 별도로 자문의견이 반영된 부분임을 표기하지는 않았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초등성평등연구회에서는 애초에 철저히 비청소년 중심으로 설계된 학교, 사회 구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청소년 인권에 부합하는 학교가 될 수 없음을 특히 강조하였고,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발언권은 특히 강화되어야 한다는 제언을 주셨다. 또한 개별 학생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만큼이나 풀뿌리 조직과 네트워크, 공동의 연대들을 촉진하여 교육청-지역사회-학교를 연결할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권교육교사모임 샘의 제언도 있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 혐오적 사회에서 자신들의 ‘안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명동과 같은 대안 공간을 찾거나, 특히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퀴어 커뮤니티 등을 구축하고자 하기에<sup>140)</sup>, 이러한 제도권 밖의 안전 공간에 대한 이해와 연결은 중요하다.

140) 정성조, 정용림(2022)은 학교 공간에서 배제되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학교 바깥에서 어떻게 안전공간(Safe Space)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이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시도하는지에 주목함으로써 퀴어 안전공간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때의 안전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의 예방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작점이자 실제 활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는 부록의 ‘해외 법제도, 가이드 번역본’은 평동의 자원활동가 ‘평가평가’의 번역 자원활동을 통해 마련되었다. 추후 타 기관에서 본 연구의 부록을 활용할 때에는 위 사항을 감안하여 각 기관의 필요에 맞는 전문 번역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한다. 무엇보다 한국 성소수자 학생 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귀한 시간과 마음을 내어 번역에 함께 해 준 평가평가 권동훈, 도터, 류희정, 임두리, 초이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 VI. 부록

---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 VI. 부록

### [부록 목차]

1. 미국 -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실천의 예시 ----- 127
2. 미국 -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 ----- 145
3. 미국 - 트랜스젠더와 성별비순응 학생에 대한 학교정책 모델 ----- 198
4. 캐나다 앨버타주 - 학교현장 실천 가이드라인: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존중하는 학습환경을 만들기 위해 ----- 215
5. 캐나다 - LGBTQ 포용적 교육을 위한 모든 선생님 프로젝트 보고서 -- 219
6. 영국 - 2010년 평등법과 학교 - 학교 관리자 및 직원, 학교 및 학원의 관리 기관, 그리고 지방 정부 당국을 위한 영국 교육부의 조언 ----- 245
7. 일본 문부과학성 -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세심한 대응의 실시 ----- 250  
지침
8.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정부 - 지원 및 위험관리 플랜 ----- 258,

[참고자료 1] 미국 -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실천의 예시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실천의 예시 141)



U.S. Department of Education 미국 교육부  
Offi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초/중등교육청  
Office of Safe and Healthy Students 학생 건강/안전청  
May 2016

141) 원문은 'Examples of Policies and Emerging Practices for Supporting Transgender Students'임.

Gender nonconforming : 젠더 비순응. Gender nonconforming(GNC)를 젠더퀴어로 번역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영문 자료에서 둘을 구분 짓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본고에는 '젠더 비순응'으로 직역하였습니다.

Gender : 1) 젠더, 2) 성별. 일반적으로는 '젠더'로 번역하였으나, a. 지정성별 혹은 법적 성별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표현과 b. 다른 단어와 함께 번역되는 일반적 번역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성별'로 번역하였습니다. 성별로 번역한 부분은 별도의 메모를 삽입하였습니다. (예. a. A court-ordered name or gender, legal name or gender, b. gender-neutral)

##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실천의 예시

미국 교육부는 학교가 모든 학생을 위해 안전하고, 지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은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많은 트랜스젠더 학생(예, 지정성별과 다른 젠더 정체성을 가진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지 않은 느낌을 받고, 학교에서 언어적/신체적 괴롭힘 또는 폭력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것, 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학업 성적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 행정가, 교육 전문가, 학생들과 부모는 교육부에 어떻게 트랜스 젠더 청소년을 지지해야 하는지 물으며, 명확한 답을 요청하였다. 그에 대한 답으로 교육부는 2개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교육부의 시민권 담당청과 미국 법무부는 공동으로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와 1972년 수정된 교육법률 타이틀 나인(Title IX)에 근거한 학교의 법적 의무에 대한 “DCL(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 a Dear Colleague Letter)”을 발간했습니다<sup>142)</sup>. 트랜스젠더 학생과 관련한 질문이 있거나 트랜스젠더 학생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준비하고 싶은 학교는 DCL을 검토하십시오.

교육부의 초중등교육청은 관련 정책<sup>143)</sup>과 몇몇 학교가 이미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실천 방법<sup>144)</sup>들의 사례들을 함께 엮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기록, 프라이버시,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을 공유하고, 어떻게 일부 주와 교육구의 정책이 이러한 질문들에 응답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와 교육구가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정보를 제시합니다. 더불어 자료의 마지막에 이 정책들에 대한 링크 정보와 교육 전문가가 자신의 학교를 위한 정책과 실천 방안을 개발함에 있어 유용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독특한 것처럼,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욕구도 다양하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지하기 위한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는 학교정책은 학생과 직원이 분명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불필요한 혼란과 프라이버시 침해, 다른 해를 피하도록 할 수 있다. 교육 공동체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다루고, 트랜스젠더 학생의 개별화된 욕구와 변화된 우리들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과 실천 방안을 계속해서 개발, 수정하고 있다.

이 자료는 몇몇 학교와 교육구, 주와 연방 기구의 정보를 포함하였다. 포함된 정보는 교

142) 1681-1688: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 트랜스젠더 학생들(2016. 05. 13)

143) 이 문서의 ‘정책’ 또는 ‘정책들’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구 또는 주 교육 담당 부서에 서 발간하는 정책, 지침, 가이드라인, 절차, 규제와 자원 가이드를 지칭합니다.

144) 교육부는 ‘새로운 실천 방법’을 성공적인 결과에 기여하거나 기관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범적인 활동이나, 준비된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새로운 실천 방법들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다른 기관에서도 반복 수행될 잠재력이 있는 것들입니다. 새로운 실천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엄격하게 평가되지 않았으나 특정한 상황에 수행될 아이디어를 줍니다.

육부의 정책이나 제도, 교육적 재화나 서비스, 커리큘럼, 교육학에 의해 보증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이 자료는 다른 기관에서 만들고 운영하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웹사이트를 참조하였다. 이 참고자료들은 독자의 편의성을 위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 외부 정보의 정확성, 관련성, 적시성, 완성도를 통제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 이 자료는 법률적 자문을 구성하거나, 법률적 의무를 만들거나, 새로운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 목차

### 학생의 트랜지션

1. 학교는 어떻게 트랜지션 할 학생을 찾을까?
2. 학교는 학생의 젠더 정체성을 확인하나요?
3. 학교는 나이가 많은 트랜스젠더 학생에 비해 어린 학생의 부모와 어떻게 소통하나요?

### 프라이버시, 비밀 보장과 학생기록

4. 학교는 어떻게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트랜스젠더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나요?
5. 학교는 어떻게 트랜스젠더 학생을 적절한 이름과 대명사로 불릴 수 있게 만드나요?
6. 학교는 학생기록에서 이름 또는 성별 지정을 변경하고 싶다는 요청을 어떻게 다루나요?

### 성별에 따라 분리된 활동과 시설들

7.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젠더 정체성에 맞게 시설을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증할 것인가요?
8. 학교는 어떻게 모든 학생들이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받도록 할 것인가요?
9. 학교는 어떻게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게 체육 교육과 운동 경기에 참여할 기회를 얻도록 보증할 것인가요?
10. 학교는 숙박이 동반된 현장 체험학습과 전지 훈련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요?

###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지지하기 위한 부가적인 실천

11.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교실에서 편안하게 느끼도록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2.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복장 규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13.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겪는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14. 학교는 어떻게 심리학자, 학교 상담사, 보건교사, 학교사회복지사가 트랜스젠더 학



생들을 지지하도록 하나요?

15. 학교는 어떻게 큰 학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존중받도록 하나요?

16. 트랜스젠더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교직원에게 교육할 때, 학교는 어떤 주제들을 다루어야 하나요?

17.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대해지는 방법에 대한 불만사항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나요?

## 용어

18. 트랜스젠더 학생들에 대한 현재의 학교정책들에는 어떤 용어들이 정의되어 있나요?

19.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젠더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개별화된 선호와 다양한 방법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인용된 정책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선별된 연방정부의 자원

## 1. 학교는 트랜지션을 할 학생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일반적으로,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에 학생의 젠더 정체성에 맞는 방식으로 학생을 대해줄 것을 말하거나 요청할 것이다. 몇몇 학생들은 학교 방학 기간(예. 여름 방학)에 트랜지션을 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학기 중에 젠더 트랜지션을 겪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학생들은 (또는 학생을 대신한 학생의 부모는) 옷을 입는 방식이나 외적 표현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해 자기 젠더 정체성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사나 교직원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몇몇 교육구나 주 정책은 학생이나 부모가 어떻게 학교에 이와 관련된 통지를 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 알래스카의 Matanuska-Sustina-Borough 교육구는 트랜스젠더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 학생의 보호자가 건물 행정가나 학생의 지도 상담사에게 연락하여, 학생의 독특한 환경과 필요를 다루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미팅 일정을 잡고자 연락할 것을 조언하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Mat-su Borough 가이드라인).
- 워싱턴 교육감이 발간한 가이드라인("워싱턴주 가이드라인 Washington State Guidelines")은 처음에는 소년으로 출석하였던 학생이, 학기 중간에 가족과 트랜지션을 결정하고, 소녀로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한 사례를 제공한다. 그녀는 드레스나 치마와 같이 전형적으로 여성적인 복장을 더 선호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기르

고, 일관되게 학교에서 여성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머리는 여전히 좀 짧아서, 전형적인 소년 같은 머리 스타일이다. 이 학생과 학생의 부모, 학교 행정가들은 그녀의 친구들과 교사에게, 그녀에게 여성 대명사를 사용하라고 요구한다.

## 2. 어떻게 학교는 학생의 젠더 정체성을 확인하나요?

학교는 일반적으로 학생의(또는 어린 학생일 경우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젠더 정체성 표현에 의존하게 된다. 비록 학교가 종종 어떤 형태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지만, 대개, 그들은 학생이 주장하는 젠더 정체성을 수용한다. 일부 학교는 이 문제에 대해 부가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 로스엔젤레스 통합 교육구는 “학생들이 자신이 인식하는 젠더 정체성을 갖고 존중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의료적, 정신적 건강 진단 또는 치료의 문턱은 없다”고 언급한 정책(“LAUSD 정책”)을 발표하였다.
- 뉴욕주의 교육부는 “학교가 학생의 젠더 정체성 주장을 수용”할 것을 권고하는 지침(“NYSED 지침”)을 발표하고, 학생의 진술 또는 학생의 상황과 가까운 어른의 편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 주장을 확인하는 방법의 예시를 제공하였다. 같은 지침은 “한 중학교에서, 이전까지는 집에서만 여성 젠더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었던 학생이 자신의 지도 상담사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한 사례”를 제시했다. 학교에서는 남성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여성 젠더 정체성을 숨기는 동안 발생한 스트레스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생과 학생의 부모는 그녀가 학교에서도 자신의 여성 젠더 정체성을 표현해도 될지 물었다. 지도 상담사는 요청에 호의적으로 응하였다. 학생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지만, 학교는 이 요구가 그녀가 여성 젠더 정체성을 가졌다는 진실한 믿음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자료가 없는 것은 문제로 삼지 않았다.
- 알래스카의 Anchorage 교육구는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은 “젠더 정체성에 대한 가벼운 선언 또는 표현 이상의 것이고, 형식적인 평가나 진단을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는 행정 지침(“Anchorage 행정 지침”)을 개발하였다. 각자의 상황, 욕구, 프로그램들, 시설과 자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행정가와 교직원들은 사례별로 개인의 욕구를 고려하도록 요청 받았다.

### 3. 학교는 나이 든 트랜스젠더 학생과 비교했을 때, 어린 학생들의 부모와 어떻게 소통 하나요?

아동이 트랜스젠더일 때, 특히 어린 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모는 종종 학교와 대화를 시작하는 첫번째 인물이 된다. 부모는 나이 든 학생의 트랜지션에는 작은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 일부 학교정책은 나이가 많은 학생들의 경우 교직원이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하기 전에 학생과 먼저 상의하도록 권한다.

- 콜롬비아 공립 학교 지역은 “학생은 부모가 트랜지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나, 부모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제시하는 지침을 발간하였다(“DCPS 지침”) 이에 더하여 지침은 학년에 따라 발달적으로 다르고 적절한 프로토콜을 권고했다. 이 지침은 학교가 학생을 지지하기 위한 적절한 단계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 학생들의 가족과 작업하도록 제안한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학생들과는 가족에게 알리기 전에 가깝게 작업할 것을 권고한다. 지침은 또한 학생이나 학생의 가족과 논의할 주요한 문제가 있는 계획 문서 모델을 제공한다.
- 비슷하게 메사추세츠 초중등 교육부는 “메사추세츠 지침”(Massachusetts Guidance)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일부 트랜스젠더와 젠더비순응 학생들은 안전에 대한 걱정, 수용력 부족과 같은 이유로 인해 집에서 (젠더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와 학생의 젠더 비순응이나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학생과 대화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학교 관계자는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와 서면으로 소통할 때 학교가 어떻게 학생을 지칭할지(예. 적절한 인칭대명사의 사용)에 대해서도 학생과 논의해야 한다.
- 시카고 공립 학교 지침(“시카고 지침”)은 “다른 직원, 부모, 보호자 또는 제 3의 인물과 대화할 때,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가 없거나 법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의 트랜스젠더 또는 젠더 비순응 정체성과 연관된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 인칭대명사 또는 다른 비밀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 오레곤의 교육부는 “학생이 아직 스스로를 옹호할 수 없을 때, 학생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존중해달라는 요청을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경우 트랜스젠더 학생은 부모가 자신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해 아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례별로 다루어져야 하고, 교육구는 학생을 지원하는 목표와 부모에게 아동에 대해 알려야 한다는 필요조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이며, 학생의 젠더정체성이 프라이버시와 비밀보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하였다.

## 프라이버시, 비밀보장 그리고 학생기록

### 4.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데에 있어, 트랜스젠더 학생의 이익을 보호할 학교의 방법은 많다. 이는 직원이 일관되게 적절한 이름과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도록 준비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트랜스젠더 학생의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학생이 태어났을 때의 이름과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드러낼 위험이 있다. 또한 몇몇 주와 교육구 정책은 연방정부와 주의 프라이버시 법률이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학생이 비밀로 하는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비밀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다룬다.

- 캘리포니아의 El Rancho 통합 교육구는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논의하고 표현할 권리가 있고, 학교 관계자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와 연락할 때, 학생의 실제 혹은 인식한 성적지향, 젠더 정체성 또는 젠더 표현을 드러내거나 암시하거나 지칭하지 않기 위한 트랜스젠더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규정(“El Rancho 규정”)을 발표하였다.
- 시카고 지침은 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개별화된 욕구를 다루고 지원하기 위해 학생 그리고(또는) 학생의 부모/보호자와 협업할 행정지원팀 소집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 팀은 학교장, 학생,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성인으로 인지하는 개인들,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의 측면에서 법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교장이 판단한 개인들로 제한된다.
- Mat-Su Borough 지침은 “일부 경우에는, 학생이 교직원과 학생들이 알기를 원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학생이 이 정보가 널리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교직원은 신중하게 학생의 계획에 따라야 하고, 자신의 부주의로 공개하지 않으려 하였던 정보 또는 보호하려 하였던 정보(이를 테면, 비밀에 부친 의료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메사추세츠 지침은 학교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오직 필요한 경우에만 학생의 젠더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할 것”.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한다. “한 학교는 가족에게 발송될 요청 자료를 검토했고, 현장체험학습 허가 서류에 학생의 젠더를 기입하는 문장이 포함된 것을 발견했다. 검토 결과, 학교는 요청하는 정보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이 없고, 성별 표기 요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 5. 학교는 어떻게 트랜스젠더 학생이 적절한 이름과 인칭대명사로 불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인가?

학생이 학교 관계자에게 젠더 트랜지션을 알렸을 때, 학교 관계자가 다룰 수 있는 첫 번째 이슈 중 하나는,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과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몇몇 학교들은 모든 학교 직원과 학생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는 새로운 이름과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도록 준비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 네바다의 Washoe County 학교구는 다음과 같은 규정("Washoe County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상응하는 이름과 인칭대명사로 불릴 권리가 있다.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과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학생의 안전과 웰빙을 증진시킨다. 가능하다면, 요청받은 이름은 학생의 법적 이름에 더해서 지역구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에게 말을 걸 때 교수진과 직원이 사용할 이름과 인칭대명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 Missouri의 Kansas 도시 공립학교에서 발표한 공식 절차("Kansas 도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고용인이나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과 인칭대명사를 알린 후에도 그들의 젠더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고 알린 이름과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의도적 또는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이는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다."
- NYSED 지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 다른 대부분의 문제와 같이, 최고의 방침은 이름과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이슈에 대해 학생을 포함시키고, 가능하다면 부모도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교내에서 이름과 인칭대명사를 사용하기 시작한 각 학생의 개별화된 욕구를 반영하는 계획에 합의하는 것이다. 또한 계획은 학생과 부모에게 언제, 어떻게 이것을 소통할지에 대해서도 포함할 수 있다."
- DCPS 지침은 교장이 트랜스젠더 학생과 함께, 계획한대로 학교환경을 안전하고 지지적이게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 학교 계획 안내서를 포함한다. 학교 계획 안내서는 학생이 화장실, 탈의실과 다른 학교 활동에 접근할 때의 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젠더 정체성과 선호하는 이름, 가정과 학교에서 주요하게 연락할 사람(연락망)을 확인하게 한다.

## 6. 학교는 학생기록의 이름과 성별 지정을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어떻게 다루는가?

몇몇 트랜스젠더 학생은 법적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중

중 젠더 정체성이 반영된 신분증을 가질 수 없다(예.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주나 지역 법이 부과한 법률적인 제한으로 인해). 몇몇 교육구 정책은 학생이 법률적인 개명 절차를 끝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의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게 학생을 확인하는 이름을 사용할 것을 명시한다.

- NYSED 지침은 출석 기록, 성적 증명서, 개인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학생기록을 학생이 선택한 이름으로 갱신할 것을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한다. “한 학교 행정가는 학생이 선택한 이름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파일을 만듦으로써 학생의 파일에 있는 정보를 처리하고, 학생이 선택한 이름으로 이전의 학업 기록 입력하고, 학생의 과거 정보와 출생시 이름이 포함하는 분리된 비밀 폴더를 만들었다.”
- DCPS 지침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법적 명령에 따른 이름 또는 성별정정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생은 그들의 공적 기록을 바꿀 필요가 없다. 만약 학생이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길 원한다면, 학교 등록 담당자는 [학교] 데이터베이스의 ‘선호하는 이름’ 필드에 그 이름을 기입할 수 있다.”
- Kansas 도시 절차는 교직원이나 학교 행정가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법적 이름이나 성별을 보고할 필요가 있는 특정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이 절차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직원과 학교 행정가들은 의도하지 않게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피할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 시카고 지침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상응하는 이름과 인칭대명사로 불리어지기 위한 선행 요건으로, 법원 명령이나 성별정정을 하는 것 또는 공식 기록의 변경을 요청받지 않는다.”
- 메사추세츠 지침은 또한 졸업 후 기록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다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트랜지션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이전의 학교에 학생의 출생시 이름과 성별이 포함된 학생기록 또는 졸업장 또는 성적증명서를 수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을 경우 젠더 정체성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을 때, 학교는 학생 기록을 수정해야 한다.”

## 성별분리된 활동과 시설

7. 학교는 어떻게 트랜스젠더 학생이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게 시설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것인가?

- 학교는 종종 화장실과 탈의실을 성별에 따라 분리한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는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반드시 허가해야 하고,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대안적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 워싱턴주 지침은 제시한다. “교육구는 학생이 학교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어떤 학생도 트랜스젠더 또는 젠더 비순응자라는 이유로 대안적인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 Washoe 주 규정은 “학생은 학교 기록에 기입된 젠더와 관계없이 학생이 표현하고, 학교에서 주장하는 자신의 젠더 정체성에 부합하는 시설을 이용해야하며 이는 탈의실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Anchorage 행정 지침은 다음의 규정을 강조한다. “그러나 개별 학생이나 고용인의 요구가 없다면, 교직원들은 트랜스젠더 또는 젠더 비순응 학생/고용인에게 분리된, 통합되지 않은 공간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8. 학교는 어떻게 화장실 또는 탈의실에서 모든 학생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보호 하나요?

많은 학생들은 학교의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부가적인 프라이버시를 추구한다. 몇몇 학교는 학생들에게 성별에 따라 분리된 시설을 만들거나 모든 학생들에게 대체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대된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

- 워싱턴주 지침은 증대된 프라이버시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대체 화장실/탈의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지침은 “트랜스젠더 학생과 시설을 공유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분리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허락하고, 그들의 걱정은 어떤 학생 개인을 낙인화하는 방식을 배제해 다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 NYSED 지침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모든 학생들의 관심을 수용한 사례를 보여준다. “한 고등학교에서 한 트랜스 여학생은 여성 탈의실에 접근할 권한이 주어졌지만, 그 학생은 다른 여학생들과 여성 탈의실을 사용하는 것을 불편해했다. 왜냐하면 시설 내에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탈의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교장은 탈의실을 검토했고, 그룹 사물함 근처 한 열의 벤치 일면을 따라 커튼을 설치하는 것을 결정했

다. 이 커튼은 사용을 원하는 학생들 누구나 프라이버시를 보호 받는 탈의 공간을 제공해줄 수 있다. 학교에서 커튼을 설치하고 나서, 학생은 탈의실 사용을 편안해했다.”

- Jefferso와 Kentucky의 Atherton 고등학교는 어떤 학생의 증대된 프라이버시에 대한 요청을 처리한 합의들을 모은 사례를 제시한 정책을 발표했다. “탈의실의 공공 장소 내 프라이버시 공간을 사용하는 것(예. 화장실 칸 근처에 문이나 커튼으로 분리된 공간); 근처의 프라이버시 공간을 이용하는 것(예. 화장실 근처); 또는 탈의 시간을 분리하는 것.”
- DCPS 지침은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생각해내도록 권고한다. “결국, 한 학생이 교직원의 누군가에게 불편감을 표현하면, 그 교직원은 학생의 선택지에 대해 검토하고 학교의 LGBTQ 연락 담당자나 건물 내의 지정된 담당자가 이에 참여하도록 학생에게 허락을 구해야한다.”

#### 9. 학교는 어떻게 트랜스젠더 학생이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게 체육 교육과 운동 경기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보장할 것인가?

몇몇 학교의 정책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는 운동 경기에 참여할 자격을 확립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한다. 이 정책들의 많은 부분은 주 운동경기 리그 또는 협회에서 발간한 절차를 참조한다.

- NYSED 지침은 “체육 교육은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필요하며, 많은 학생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뉴욕 학교의 체육 수업은 남녀합반으로 진행되므로, 학생의 젠더 정체성은 이들 수업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없다. 성별분리된 수업에 있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LAUSD 정책은 “캘리포니아 학교 연맹 내규에 따라, 경쟁적인 운동 경기, 교내 스포츠, 운동 팀, 경쟁 경기, 접촉하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서 주장하는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촉진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학교 연맹은 자격 결정을 하기 위해 젠더 정체성 건강 돌봄 또는 옹호의 전문가나 트레이닝 받은 사람을 최소 1명 포함한 전문가 패널을 만들었다.
- Rhode 섬의 학교 리그 정책은 모든 학생이 자신의 학교 기록에 있는 젠더와 상관없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는 운동 경기에 참여 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선언한다. 정책은 리그가 학생의 현재 진술과 학교의 등록 정보, 학생의 일관된 젠더 인



지에 대한 자료(예. 학생, 부모/보호자 또는 의료인의 확인서), 다른 관련된 정보를 통한 자격 결정에 기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10. 학교는 숙박 일정이 요구되는 현장체험학습이나 전지훈련에 참여할 때, 트랜스젠더 학생을 어떻게 대하나요?

학교는 종종 숙박 일정이 있을 때, 성별에 따라 학생들을 분리합니다. 일부 학교정책은 그런 과제가 있을 때 학생들은 반드시 젠더 정체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콜로라도의 Boulder Vally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지침(“Boulder-Valley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숙박 일정을 계획할 때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하고, 학생의 낙인감을 최소화하면서, 학생의 사회적 통합을 최대화하고, 숙박을 포함한 활동과 전지 훈련에 참여할 동일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 시카고 지침은 교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으로 인해 숙박을 포함한 현장 학습에 참여할 권리가 거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적인 실천

#### 11.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이 교실에서 편안해 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교실에서 학생의 젠더에 기초해 학생들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은, 트랜스젠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가장 포용적인 방식의 실천이다.

- DCPS 지침은 “어디서나(여기서) 독단적으로 젠더를 구분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어야 하고, 이들은 사라져야한다.”고 한다.
- 메사추세츠 지침은 “일반적으로 학교는 모든 젠더 기반 정책, 규칙, 실천 방식을 평가해야하고, 이것이 명확하고 건전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유지해야한다.”
- Minneapolis의 공립 학교들은 일반적으로는 학생을 교육 목적으로 성별에 기반해

그룹을 짓지 않아야 하고, 그보다는 예를 들어 수업 영역에 대한 숙련도, 학생의 흥미, 교육을 더 많이하거나 풍부하게 할 필요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 The Maryland 주 교육청은 젠더에 기반해 학생을 구분한 사례를 포함한 지침을 발표했다: “낮은 실천: 소년들은 이쪽에 줄을 서세요. / 새로운 실천: 1월부터 6월까지 생일인 사람, 무언가 초록색을 입고 있는 사람 등.”

## 12.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복장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젠더와 상관없이 동일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복장 규정이 모든 학생들에게 가장 포용적이며, 성별 고정관념을 불필요하게 강화하지 않는다. 한 학교는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어느정도 다른 표준을 요구하는 복장 규정을 가지는데, 어떤 학교들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게 옷을 입도록 허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 Wisconsin의 Shorewood 교육구는 학생들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동일하게 옷을 입도록 허가하고, 학교 관계자가 다른 학생들보다 트랜스젠더 학생과 젠더 비순응 학생에게 보다 엄격하게 복장 규정을 강제하면 안된다고 상기시키는 지침을 발표했다 (“Shorewood Guidelines”).
- 워싱턴주 지침은 교육구에 젠더에 근거하여 학생의 복장 선택을 규정하지 않는 성중립적인 복장 규정을 채택할 것을 권장하였다: “복장 규정은 교육적으로 유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에게 일관되게 적용한다, 폭력에 대한 규정과 일치해야 하고 예외를 요청하는 상황에 대하여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 13. 학교는 어떻게 트랜스젠더 학생의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를 다룰 것인가?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은 계속해서 따돌림과 괴롭힘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고,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도 이는 예외가 아니다. 일부 학교는 젠더 정체성과 표현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 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비차별적인 선언을 명료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들의 정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룬다.

- NYSED 지침은 학생들을 따돌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경험하는 높은 수준의 괴롭힘 피해는 건강과 교육적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높은 비율의 결석 문제, 낮은 학업 성취도, 저조한 교육적 포부 문제를 포함한다.

- Shorewood 지침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학생의 실제 혹은 인지한 트랜스젠더 정체성이나 젠더 비순응 지위에 기반한 괴롭힘은 금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불만은 다른 차별, 괴롭힘, 따돌림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 DCPS 지침은 의도적으로 개인이 선호하는 이름이나 인칭대명사를 오용하는 것, 개인의 신체나 젠더 트랜지션에 대한 개인적 정보에 대해 질문하는 것,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포함해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때때로 경험하는 괴롭힘을 금지시킨 사례들을 명시했다.

#### 14. 학교는 어떻게 심리학자, 학교 상담사, 보건교사, 학교사회복지사와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할 것인가?

학교 상담사는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 학생을 도울 수 있다. 정신건강 전문가는 따돌림과 괴롭힘을 막고 교실과 학교에서 안전, 건강과 트랜스젠더 학생을 포함해 모든 학생들이 존중받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지지적인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 행정가와 포용적인 정책, 프로그램, 실천을 논의할 수도 있다. 학교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모든 학생과 소통할 수 있다면,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기에 더 나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젠더 정체성과 관련한 질문을 가진 어떤 학생에게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NYSED 지침은 상담사가 학교에서 젠더 정체성을 주장하는 초기의 단계를 원하는 트랜스젠더 학생과의 접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 시카고 지침은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결정하는 학생 행정 지원팀을 소집한다. 팀은 학교장, 학생, 학생이 신뢰하는 성인, 교장이 결정하기에 학생의 안전과 건강문제에 있어 법적 관계가 있는 개인으로 구성된다.

#### 15. 학교는 어떻게 넓은 학교 커뮤니티 구성원 사이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존중을 높일 것인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분명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학교 공간을 모든 학생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고, 비차별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소통할 때 도움이 된다. 학교는 교직원, 학생, 가족, 다른 커뮤니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이러한 소통을 할 수 있다.

메사추세츠 지침은 교육감과 교장에게 그들이 “학생 차별금지법에 젠더 정체성을 포함해

반영하도록 갱신하였음을 보증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 편람, 다른 서면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직원, 학생, 가족을 포함한 학교의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에게 최근 주 법률, 학교정책/실천에 있어서 주 법률의 의미 변화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길 바랄 수 있다. 이 정보 제공은 모든 학생들에게 포용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이 되기 위한 학교의 헌신을 선언하는 서면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NYSED 지침은 “교육구들은 이 지침과 다른 자원, 이를테면 부모, 학생, 교직원, 거주민에 한정하지 않은 학교 커뮤니티에 교육이나 설명회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명시하였다.

#### 16.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과 관련한 문제를 교직원에게 교육할 때, 어떤 주제를 다루나요?

학교는 모든 교직원에게 트랜스젠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을 적절하게 대우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안전, 건강, 비차별적인 학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을 강화할 수 있다.

- 메사추세츠 지침은 교수진과 교직원 교육시 다음과 같은 주제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젠더 정체성/표현과 관련된 핵심적인 단어; 젠더 정체성의 발달; 트랜스젠더와 다른 젠더 비순응 학생의 경험;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 학생에 관한 위험과 회복탄력성 데이터;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고 젠더 비순응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성중립적인 언어와 실천방법.”
- El Rancho 규정은 교육감 또는 지명된 담당자는 고용인, 자원봉사자, 부모/보호자에게 구의 차별금지 정책; 무엇이 금지된 차별,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을 구성하는지; 어떻게 그리고 누가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해야하는지; 학생에게 교육, 보호, 감독 또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생을 분리시키고 정형화하는 것에 반대해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렇게 제공되는 정보와 교육은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 학생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지침을 포함해야한다.

#### 17.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대우 받는 방식에 대한 불만사항에 대해 어떻게 반응 하나요?

학교정책은 종종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불만사항이 차별과 괴롭힘에 관한 불만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책과 같은 정책에 따라 처리되도록 한다.

- The Boulder Valley 지침은 “개인의 실제/인식한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젠더 비순응

성에 기반한 차별과 괴롭힘에 대해 제기된 불만사항은 다른 차별/괴롭힘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 The Anchorage 행정 지침은 “또한 학생은 학교에서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해 어떤 시민권 문제를 다룸에 있어 학생 고충 처리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 용어

### 18. 현재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학교정책에는 어떤 용어가 정의되어 있나요?

트랜스젠더 학생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학생과 유관된 용어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학교정책은 트랜스젠더 학생과 관련된 주요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 학교를 돕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다. 아래의 목록은 철저하지는 않으며, 학교정책이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의 일부 사례만 포함한 것이다.

- ‘젠더 정체성’은 출생시 지정된 성별과 관계없이 개인이 남성/여성이라는 내적인 감각을 깊게 가지는 것을 지칭한다(워싱턴주 지침).
- ‘출생시 지정성별’은 태어났을 때 개인이 대개 “남성” 또는 “여성”으로 성별이 지정되는 것을 말한다(NYSED 지침)
- ‘젠더 표현’은 개인이 종종 행동이나 옷차림, 머리스타일, 행동, 목소리, 또는 버릇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젠더를 나타내거나 표현하는 방법을 지칭한다(Washoe County 규정)
- ‘트랜스젠더’ 또는 ‘트랜스’는 젠더 정체성이 출생시 지정성별과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설명한다(메사추세츠 지침).
- ‘젠더 트랜지션’은 개인이 한 젠더로 살아가고 인지하는 것에서 다른 젠더로 살아가고 인지되는 것으로 가는 과정을 지칭한다(Washoe County 규정).
- ‘시스젠더’는 자신의 출생시 지정성별과 일치하는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설명한다(NYSED 지침). ‘규범에 해당되지 않는 젠더’ 또는

- ‘젠더 비순응’은 정형화된 기대와는 다른 젠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gendervariant’ 또는 ‘gender atypical’도 사용된다.
- ‘인터섹스’는 염색체, 호르몬, 생식기 및/또는 우리 사회의 의료 기관이 정의하기에 배타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으로 정의되지 않는 다른 성적 특질을 가지고 태어난 개인을 말한다.
- ‘LGBTQ’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와 퀴어/퀴스처닝”을 상징하는 말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LAUSD 정책).
- ‘성적지향’은 다른 사람의 젠더에 기반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성적 끌림을 지칭한다. 성적지향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 용어는 이성애자,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이 있다(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은 다른 용어이다(LAUSD 정책).

#### 19.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젠더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개인의 선호와 다양한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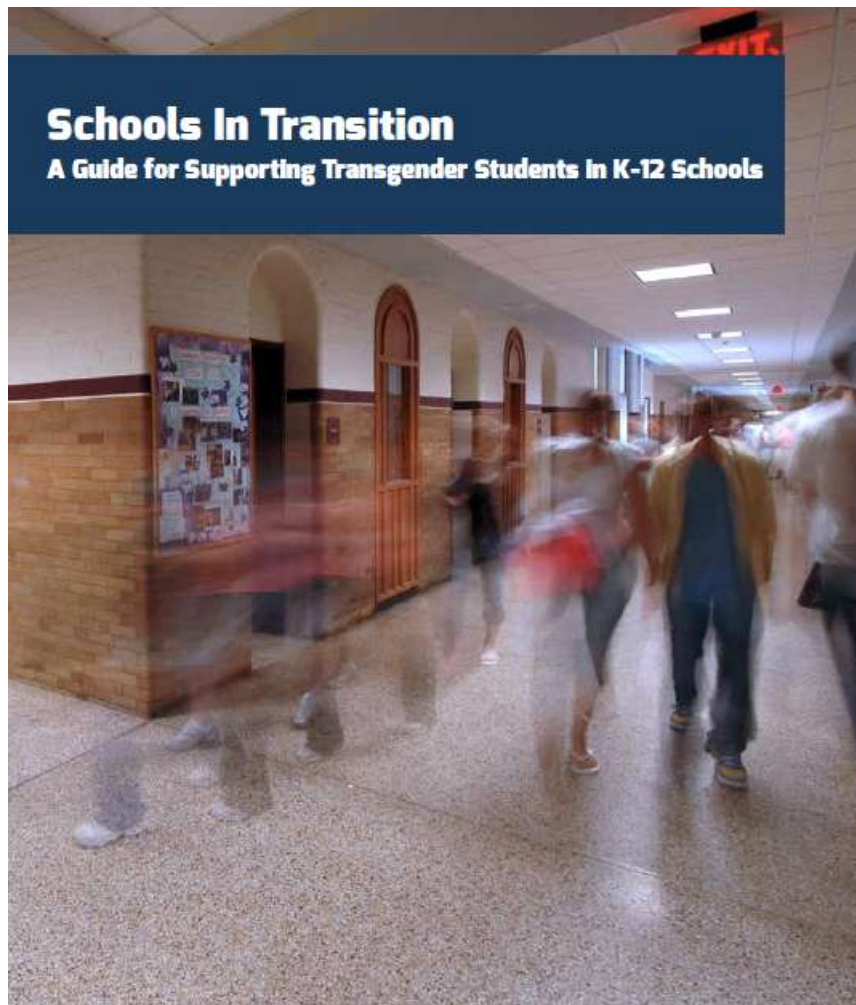
일부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정의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인지함에 있어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트랜스 남학생은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하게, 단순히 자신을 남성으로 인지한다. 만약 학생이 다른 용어를 사용할지라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몇몇 학교정책은 직접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다루고, 부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 워싱턴주 지침은 어떻게 “용어가 종교, 언어, 인종, 민족, 연령, 문화와 다른 많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인정한다.
- 워싱턴의 연방 Way 교육구는 자원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젠더 일치성의 의미는 문화마다 다를 수 있고, 이들은 서구적 의미의 트랜스젠더로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들의 일부는 Hijra (남아시아), Fa’afafine(사모아제도), Kathoey(태국), Travesti(남아프리카), Two-Spirit (미국/캐나다 원주민)가 포함된다.
- 주 내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응한 Washoe Country 규정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공한다.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젠더와 관련된 경험을 설명하는 방법: 트랜스,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 MTF, FTM, 바이젠더, two-spirit, 트랜스맨, 트랜스우먼”

- DCPS 지침은 교직원에게 이렇게 권고한다. “당신이 만약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과 인칭대명사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사적인 방식으로 눈치껏 학생에게 어떻게 불리기를 선호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더하여, 학생에 대하여 말할 때 그들을 트랜스젠더로 이름 붙이는 것은 거의 필요하지 않는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다른 동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참고자료 2] 미국 -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

※ 본 가이드라인은 **챕터 3~6 및 결론, 부록 A, C 부분을 발췌 번역**하였음.  
전문은 Human Right Campaign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https://www.hrc.org/resources/schools-in-transition-a-guide-for-supporting-transgender-students-in-k-12-s>)





## 목차

- 도입: 교육감의 편지
- 서론: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기
- 챕터1: 기본 개념
- 챕터2: 이것이 왜 중요한가
- 챕터3: 필수 고려요소
  - 올바른 계획
  - 긴급 & 타이밍
  - 나이 & 학년
  - 사생활 & 폭로
  - 공개적 트랜지션
  - 사적 트랜지션
- 챕터4: 필수 요소 & 실천 팁
  - 학생기록 & 학생정보시스템
  - 이름 & 호칭
  - 드레스코드
  - 성별분리 시설, 활동 & 프로그램
  - 차별, 괴롭힘 & 따돌림
- 챕터5: 복잡한 이슈
- 챕터6: 법적 지형
- 결론: 모두에게 포용적인 학교 만들기
- 부록A
- 부록B
- 부록C
- 부록D
- 부록E

### 3장 핵심 고려사항들

*학교에 재학중인 트랜지션을 하는 모든 학생들은 진정한 자신(authentic selves)이 되기 위한 고유한(unique)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획은 종종 쓸모 없지만, 계획을 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 올바른 계획

학생의 나이, 성격 및 감정적 상태, 가족의 지지 정도, 학교의 조직적 디자인, 심지어 학사일정 등 모든 요인이 학생의 트랜지션이 펼쳐지는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옳은 방법”을 찾는 일은 피하고, 그 대신 어떤 단계가 특정한 학생의 경험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내는지 인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맞춤형 젠더 트랜지션 계획(Gender Transition Plan)(부록 D 참조)을 만드는 일이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트랜지션 과정을 사려깊게 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긴급성과 타이밍

재학 중에 젠더 트랜지션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욕망은 진정한 자신(authentic self)으로 있고 싶다는 깊은 필요에서 비롯한다. 긴급성(urgency)과 젠더 트랜지션의 타이밍은 주의깊게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이상적이라면, 학생은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데, 이것은 학생, 학교, 그리고 가족(만약 적절하다면)이 트랜지션을 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은 교직원(staff), 학생, 부모를 위한 훈련과 학생의 진정한 정체성을 학교 커뮤니티에 공유하기 위한 주의깊게 설계된 계획을 포함한다.

이 단계들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사실, 학교는 젠더 트랜지션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기 위해 이 계획 과정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하며, 이것은 학생의 웰빙(well-being)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단지 트랜지션

날짜를 정하는 일 만으로도 학생들의 고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는 데 충분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편의성(expediency)이 트랜지션 계획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 과정(트랜지션 계획 과정)이 좀 더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학교 관계자들(school officials)은 교직원들이 다른 학생들과 부모들이 예기치 않게 제기하는 질문이나 우려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적어도 처음에는, 이 상황은 학교가 어떤 문제나 우려에 수동적으로(reactively) 응답하는 것을 수반할 것이다.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젠더 다양성과 포용을 능동적으로(proactively) 다뤘은 학교들은 더 긴급한 상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의 젠더 포괄적 행동(gender-expansive behavior)이나 트랜지션을 하고 싶은 욕망은 학교에서 최초로 드러날 수 있다. 만일 교직원이 학교에서 드러난 젠더 정체성 이슈가 아이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 상황에 대해 부모에게 민감하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부모와 돌봄제공자(caregiver)가 집에서 학생의 젠더 포괄적 행동을 관찰하는 수준을 조심스럽게 살핌으로써, 교육자는 가족 구성원들이 아이를 이해하고 지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다리가 될 수 있다. 만약 저항에 부딪힌다면, 교직원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아이가 겪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한다.

학부모에게 이 사안을 제기하는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학생과의 협의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때때로 부모나 돌봄제공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학교는 그 주제를 (부모나 돌봄제공자에게) 제기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5장을 참고하라.

***나이와 성숙함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 속에서 트랜지션을 받을 기회를 부정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 나이 & 학년(Grade level)

계획 과정에서 학생의 나이와 학년을 고려해야 할 요소로 포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을 학생의 젠더 트랜지션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 요인은 청소년의 젠더 트랜지션이 공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우에 특히 관련이 있다. 청소년이 자신의 트랜지션에 대해 또래들과 이야기 하기를 바라거나, 학교가 커리큘럼에 젠더에 관한 교과 과정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한다면, 이러한 활동들을 관리하기 위한 접근법들은 발달적으로(developmentally)/청소년들의 발달 상황에 적절해야 한다.

학생들의 나이와 학년에 상관없이, 젠더 트랜지션에 효과적으로 발판이 될 수 있는 많은 활동들과 수업들이 있다. 교육자, 행정가, 부모 및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연령에 적합한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생들이 이러한 이슈들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여기지만, 전국의 학교에서의 경험은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어릴 수록 또래의 진정한 젠더에 대한 주장을 이해하는 생각과 역량이 훨씬 더 유연하다.

요점은 이렇다: 어떤 학년 수준이든 학생들과 함께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의 젠더 트랜지션을 지지하는 동시에 모든 아이들의 젠더 정체성과 표현을 위한 더 큰 인식과 장소를 만들어낼 것이다.

### 프라이버시 & 공개(누설)

(트랜지션을 하고자 하는) 학생의 나이 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트랜지션 과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트랜지션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준다. 만약 그 학생이 오랫동안 자신의 지정성별로 알려진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트랜지션을 하고 있다면, 프라이버시(privacy)에 대한 선택지들은 제한될 수 있다. 다른 상황의 경우, 학생이 새로운 학교환경(즉,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교육구에 있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으로 이동하는 것은 더 많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트랜지션의 기회를 제공한다. 상황에 상관없이, 학교는 학생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필요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는 완충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위치에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트랜지션 할 때 제기되는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는 학교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이 학생들의 젠더 트랜지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지 여부이다. 단순히 대답하자면 “아니다”. 학생의 트랜스젠더 정체성(transgender status), 출생 당시 지정된 법적 이름과 성별(sex assigned at birth)은 의료 기밀 정보이며, 개인 신상 정보로 보호된다.

그리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혹은 헌법상 프라이버시 보호법에 의거해 학교의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트랜스젠더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수준을 고려할 때,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또한 학생이 또래, 교육자, 그리고 교직원들로부터 괴롭힘과 학대에 노출되도록 할 수 있다. 명시적인 법적 의무 혹은 학생 및 가족의 명시적 허가가 없는 경우, 그러한 정보는 다른 학부모와 학교 인사과(school personnel)를 포함한 어느 누구와도 공유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와 교육구는 그러한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실행해야 한다.

***“나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반 친구, 선생님, 그리고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조롱을 당하고 왕따로 낙인찍혔다. 이제 학교를 옮겼으니 그 누구도 내가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알게 할 생각은 없다.”***

- HRC Foundation 2012 청소년 조사 참여자

몇몇 학생들과 가족들은 트랜지션 과정에 대해 학교와 커뮤니티에 좀 더 알리기를 원하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 부모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젠더 트랜지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수업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다른 몇몇의 학생들은 자신이 학교에 지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택된 그룹의 사람들과만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학생이나 가족이 학교에 이 정보를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 요구하는 그 정도와 상관없이, 그 결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과 언제, 누구와, 그리고 얼마나 공유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프라이버시와 기밀유지(confidentiality)는 지지적인 가족이 없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심지어 부주의한 의도치 않은 공개조차도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집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지지적이지 않은 부모의 지원에 관한 추가 논의는 5장을 참조하라.

학교의 트랜지션 계획 과정에 대한 틀을 제공할 수 있는 양식은 부록D를 보아라.

## 공개적 트랜지션

공개적으로 트랜지션을 하는 경우, 학생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개인적인 경험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그런 개인적인 일로 관심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청소년은 거의 없다. 부모와 돌봄제공자, 교육자 및 학교 관계자들은 능동적으로 역할을 다 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 질문 또는 소문으로부터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안전하게 느낄 권리를 보호하고 자신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학교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진정으로 순수한 혼란이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며, 학생이나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정해야 한다. 학교, 학생, 그리고 가족으로 이루어진 팀은 일반적으로 젠더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요구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좀 더 젠더 포용적(gender inclusive)인 환경을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해온 학교에서 학생의 트랜지션이 더 넓은 이해와 수용의 맥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학교는 또한 학생의 공개적인 젠더 트랜지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더 큰 커뮤니티일 경우 트랜스젠더 청소년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무지한 침범과 심지어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는 완충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위치에 있다.

특정 학생에 대해 말하지 않고, 교육자, 행정가 및 기타 학교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말하기 포인트(talking points)를 사용하여 학교 커뮤니티의 질문이나 부정적인 반응에 대응할 수 있다.

- "저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변화는 정말 도전적입니다. 젠더 정체성과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도 될까요?"
- "모든 학생들의 안전, 웰빙, 교육이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당신한테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아이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그 어떤 개별 학생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 "학교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별 학생들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우리는 모든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 "만일 이 사안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또 다른 유형의 학생(트랜지션 학생이 아닌)의 필요라고 상상해본다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반응할 것인가요?"

*모든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젠더 트랜지션의 고유성(uniqueness)은 트랜지션 전 과정 곳곳에 걸친 협력적이고 의도적이고(intentional) 지속적인(ongoing) 지지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반응들이 이들 존재에 대한 앎과 익숙함의 부족으로부터 비롯한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개적인 트랜지션이 (당신을 포함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한 불편함은 안전하고 지지받아야 할 학생의 필요를 능가하지 않는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지지하고 긍정하려는 학교의 결정에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구가 그 과정을 뒤집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지역 언론을 개입시킬 수도 있다. 학교 혹은 교육구는 언론의 문의에 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학교나 교육구가 대응하기로 결정한다면, 학교 관계자들은 언론 기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록 C 또는 위에 나온 말하기 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학교 또는 교육구는 단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추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트랜스젠더 청소년 혹은 가족들을 공개적인 트랜지션으로부터 단념하게 해서는 안된다. 공개적 트랜지션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친구들과 교사들로 구성된 강력한 지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나,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해 공개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과외 활동(specific extracurricular activities)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트랜지션이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학교 또는 교육구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만일의 사태를 준비해야만 한다.

#### 비공개적 트랜지션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비공개적으로 트랜지션을 할 때,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어른은 거의 없다. 일부 학교 인사과에서 (그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 학생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알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 많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의 목표는 "트랜스젠더 학생"이 아니라 단지 캠퍼스의 아이들 중 한 명(to simply be another kid on campus)이 되는 것이다. 사실, 삶의 이러한 단 한 가지 측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학교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

만약 행정가나 교육자가 특정한 사람이 학생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계획 과정에서 우려를 제기해야 한다.

**언제, 누구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드러낼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학생의(만약 가능하다면, 가족의) 결정이어야 한다.**

일단 (공개에 관한)결정이 내려지면, 행정가와 교육자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이나 가족의 어떤 공개(dislosure) 결정이든 이에 대한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이 직접 공개하기를 원할 수 있더라도, 학교 관리자가 만남을 촉진하도록 해야한다. (가령, 학교 교직원들을 만남에 초대하거나 행정 사무실에서 만남을 주최한다).

심지어 한 학생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완전히 비공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학교, 가족, 그리고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트랜지션 이전에 앞서 알고 있었던 또래로부터 여러가지 방법으로 프라이버시가 의도하지 않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또한 그들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알고 있는 친구들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트랜지션이 공개적인 요소를 가질 수 있음을 알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현실은 트랜지션 전 과정 곳곳에 걸쳐 트랜지션 학생을 지원하는 협력적이고 의도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과정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 **4장 핵심 요소들 & 실용적인 조언들**



학교는 트랜지션 이후에도 학교환경이 여전히 안전하고 학습을 위한 지지적인 공간임을 보장함으로써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트랜스젠더 소녀들이 다른 모든 소녀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트랜스젠더 소년들이 다른 소년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많은 이들에게(특히 비청소년들에게) 이 관점은 젠더의 불변성에 대한 사회적 가정에 도전하기 때문에 벽차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경험상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이 모든 학생들을 위해 더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inclusive environment)을 조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장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를 제공할 것이다.

### 학생기록 & 학생정보시스템

학교의 학생정보시스템은 전형적으로 출생 증명서에 나온 이름과 성별을 기입한다. 결과적으로,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재학 중에 트랜지션을 하는 경우, 출생시 지정된 잘못된(incorrect) 이름 혹은 성별이 이 시스템 상의 문서에 부주의하게/의도하지 않게 드러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등록(enrollment), 출석, 성적, 부모 및 돌봄제공자와의 의사소통과 같은 과정은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쉽게 침해하고 지지적인 학교환경을 해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각 학생의 법적 이름을 나열하는 출석표에 있는 이름을 단순히 부르는 임시 교사(a substitute teacher)는 부주의하게 학생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또래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른 전형적인 걸림돌로는 방과 후 프로그램, 학교 사진, 캠퍼스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전문가, 졸업앨범, 신분증, 게시물 목록, 도서관 카드, 도시락 카드, 교과서 또는 학교 학용품의 배분, 표준화된 시험 등이 있다. 가장 지지적인 학교환경에서도, 단순한 관료주의적 실수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실질적인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다.

학교의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구사항은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그 의무들은 공존하며, 학교는 그것들을

조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학교의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구사항은 종종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는 데에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많은 교육구들은 트랜스젠더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충족하면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왔다. 다음은 이러한 해결책의 몇 가지 예다. 이것은 결코 완벽한 목록이 아니며 모든 학교에서의 이러한 해결책의 실행 가능성은 기록 보관 및 학생정보시스템에 대한 각 주의 법적 요건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에 달려 있다. 솔루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학생정보시스템은 학생의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는 이름과 성별 표기(gender maker)를 가지고 있는 한편, 출생 시 지정된 학생의 이름과 성별을 반영하는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기타 신분증 사본을 교장실의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 올바른 이름과 성별 표기가 있는 여권(passport)을 사용하여 학생이 학교에 재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학생정보시스템에서 이름과 성별 표기가 여권과 일치하도록 수정한다. 학생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그들의 가족이 여권 신청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학생의 젠더 정체성이 반영된 여권을 얻는 것이 출생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바꾸는 것보다 보통 더 쉽다.
- 학생정보시스템에 학생이 선택한 이름과 성별을 사용하되, 주 교육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업로드하기 직전에 학생의 법적 이름과 젠더로 바꾼다. 이 방법을 선택한 학교는 시험 책자가 배포되기 전에 라벨에 표시된 이름과 성별 표기를 수정하여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정체성이 존중되도록 확실하게 해야 한다.
- 모든 전자 학생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생이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나타내는 하나의 양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구 차원에서 균일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만들어라. 일부 교육구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적인 관료주의적 장벽을 줄이기 위해 그러한 절차를 수립해왔다.
- 학생정보시스템 제공자와 협력하여 교육구가 학생의 법적 이름과 선택한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 필드 또는 화면을 개발하고, 선택된 이름을 사용하여 출석표, 성적표, 기타 학교 관련 문서를 작성한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그들의 신원 확인 서류(identity documents)를 수정하는 데 많은 장애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법원-명령 이름

(court-ordered name)을 얻기 위해 드는 높은 비용에서부터 출생 증명서의 성별 표기를 수정하기 위해 트랜지션-관련 수술을 요구하는 주까지 이러한 장애물들을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을 - 특히 어린 학년일 경우 - 그들의 진정한 자신을 반영한 신원 확인 서류를 얻는 것을 막는다. 결과적으로, 학교와 교육구 인사과는 학생의 법적 이름이나 성별 표기에 관계없이 학생정보시스템에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정책과 규약(protocol)을 개발해야 한다.

## 이름 & 대명사

“교사의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세상을 묘사할 때 당신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면, 마치 거울을 들여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불균형의 순간이 있다.”

— 에이드리언 리치

사람의 이름과 대명사는 그 개인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름과 대명사는 사람이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지를 결정한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 사람의 법적 이름과 젠더가 무엇인지 묻지조차 않고 그 사람이 선택한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이와 같은 사회적 정중함(social courtesies)을 확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트랜스젠더 학생이 선택한 이름과 대명사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젠더 정체성을 존중하고 긍정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말하는 사람이 교육자나 행정가일 때, 학생이 선택한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또한 학교 커뮤니티에 대한 기대를 설정하고 모범이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보일지라도, 이러한 간단한 행동은 학생들의 경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의도적으로 트랜스젠더 학생의 예전 이름과 이와 연관된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그 학생들이 안전하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다고 느끼게 할 것이고, 학습 역량을 방해할 것이다.

이 가이드는 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트랜지션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수의 젠더 퀴어(gender-expansive) 청소년들이 그들 자신을 젠더 이분법(gender binary)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정체화하고, 성중립(gender-neutral) 대명사를 사용한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중립 대명사에 적응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학생을 지지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

은 여전히 중요하다.

젠더 중립적 대명사의 자세한 내용과 예는 부록 B를 보아라.

### 드레스 코드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학생들의 복장이 학교나 교육구의 복장 규정을 준수하는 한 그들의 젠더 정체성이나 젠더 표현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 만약 학교나 교육구가 소년과 소녀들에 대한 특정한 복장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트랜스젠더 학생은 출생 시에 지정된 성별이나 출생 증명서 또는 다른 법적 서류에 지정된 성별에 상관없이, 그들의 젠더 정체성과 일치하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 성별-분리 시설, 활동 및 프로그램

"사람들이 저를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쫓아내려고 했고 심지어 학교 당국에서도 여자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저를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 HRC 재단 2012 청소년 조사 참여자

트랜지션 중인 학생을 지원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그 학생의 젠더 정체성에 따라 성별-분리된 시설, 활동 또는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화장실, 탈의실, 건강과 체육 수업, 경쟁적인 운동, 1박 2일 견학(overnight field trip), 홈커밍(homecoming court) 그리고 무도회(prom)는 누가 그 공간에 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가장 논쟁적인 경향을 갖는 성별화된 공간(gendered spaces) 중 하나다. 이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다음의 논의는 사람들이 갖는 처음의 본능적인 반응을 넘어 젠더 다양성과 모든 학생들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 화장실 & 탈의실

현재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메인, 메사추세츠, 워싱턴의 학생들과 전국에 있는 수십 개의 학교들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존중과 긍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학교들의 경험은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5년 초 Media Matters for America 단체가 트랜스젠더 학생을 보호하는 법률이 있는 12개 주에서 가장 큰 교육구의 공무원들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이중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들이 편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로 “부적절한 행동이나 괴롭힘”이 나타났다고 보고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는 벌써 여러 해 동안 학교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그리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 자신의 성별을 증명하도록 요구받지 않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사회 전반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정책은 관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적(invasive)일 것이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가 학생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현재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부모/보호자와 함께 혹은 혼자 학교 행정실(administrator)에 연락해 적절한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학생의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으며, 학교는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의심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요청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 행정실(school administrator)이 그 이의 진정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이러한 우려들을 문서화하여 그 학생이 다른 환경에서도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한다는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학교 관계자는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school officials should avoid assuming the role of gatekeeper).

우려들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추어 성별이 구분된 공간을 이용하는 것에 적절하게 응대하는 것은 학생이 트랜지션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고 지지적인 학교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화장실과 탈의실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학부모나 교사, 학교 관계자가 다음과 같은 “만약”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거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과 탈의실은 트랜스젠더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불편함의 이유가 될 수 있고, 모든 학생이 학교시설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 관계자 (school officials)의 의무다.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성별정체성에 맞는 공간을 제공하는 학교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학생이 허가 없이 여학생 시설에 들어가는 것(예: on a dare from a classmate) 같은 행동은 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일치하는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훨씬 이전부터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 중요한 것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성별정체성에 따른 화장실과 탈의실을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한 학생들의 행동에 대처하고 예방하는 학교의 능력을 막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학생들이 트랜스젠더 학생과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해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우려는 언뜻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종종 트랜스젠더 남성 청소년이 “진짜” 남자가 아니고, 트랜스젠더 여성 청소년이 “진짜” 여자가 아니며, 트랜스젠더 학생이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공간에 출입하기를 원한다는 잘못된 통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학교는 이런 문제와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그런 행동은 모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학교의 약속을 위반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단순히 트랜스젠더 학생의 존재가 부적절한

행동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트랜스젠더 학생과 공간을 같이 쓰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양호실의 화장실 같은 다른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트랜스젠더 학생이 다른 학생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다른 공간을 쓰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별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탈의실이 당사자들에게 안전하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 이슈가 정당한 우려인 경우, 행정실(administrators)은 주저 없이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토론의 목표는 학생의 성별정체성과 안전을 존중하는 것이지,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별에 맞는 공간을 사용하도록 한 것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수업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수업 시간 사이에 교사들이 화장실 주변에 더 많이 배치되는 것, 또는 “친구 시스템(buddy system)”을 해결책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탈의실의 경우 코치 사무실 근처에 라커를 두거나, 모든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커튼 같은 걸로 공간을 꾸리거나, 트랜스젠더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먼저 혹은 나중에 환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트랜스젠더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나 교직원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대체 시설을 사용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는 트랜스젠더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학교 문화의 문제를 나타내곤 한다. 따라서 행정실(administrators)은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이런 우려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모든 학생이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학교 문화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편한 것은 안전하지 않은 것과 같지 않으며,  
학교 관계자는 모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존중이 출발점이어야 하고, 불편한 것이 안전하지 않은 것과 같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학교 당국(school officials)은 모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이 핵심 개념들은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적절한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만약”의 상황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완고하고(strong) 지지적인 학교 문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사용하는 것에 여전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안전하고 편안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이 받아들여지는 또 다른 대안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선택지는 1인용 시설(single-stall facility), 가급적이면 학생의 교실과 가까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트랜스젠더 학생이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학생이 별도의 1인용 시설을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경계를 탐색하고 자신들의 기대치를 가늠한다. 불가피하게도 어떤 학생들은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실수로부터 배우도록 하는 게 학교의 역할이다.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적절한 행동의 경계를 세우는 것을 비롯해, 학생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 표현하고 실행하는 것도 학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 야간 견학

야간 견학은 교육적 노력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여를 위한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트랜스젠더 학생이 견학의 이런 두 가지 요소에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방 배정, 매니저(chaperones), 샤워 같은 문제들에 몇 가지 계획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이슈들은 학교가 모든 학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서로의 사생활과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할 의무가 있다. 학생들은 복도나 교실에서 보낼 때와는 달리 견학에서 훨씬 더 가깝게 숙소를 공유한다.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대치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다.

트랜스젠더 학생이 수면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는 이런 이슈들에 접근하는 방식을 크게 좌우한다. 학생들이 성별에 따라 분리되어야 하는 경우, 트랜스젠더 학생은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일치하는 토레들과 함께 방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 학생이 편안하게 느끼는 토레와 짝을 지어주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트랜스젠더 학생은 룸메이트가 별로 없는 방이나,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는 또 다른 방식을 원할 수도 있다. 학교는 가능한 이러한 요청들을 존중해야 하며, 그로 인해 학생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룸메이트가 정체성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의무가 있고, 정체성을 다른 학생이나 부모에게 알리거나 알려야 한다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샤워 시설이 공용인 경우 학교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1인용 샤워실이나, 개인적인 샤워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샤워 시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더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 번에 한 명씩 샤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견학에서 배우는 경험들 중 상당 부분은 사회적인 것이다. 늦은 밤에 룸메이트와 대화하고, 버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서로와 오랫동안 함께 있는 것들 말이다. 빈 시간 동안 어떤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실질적인(practical) 농담을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는 등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트랜스젠더 학생의 존재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며, 학교는 어떤 경우라 해도 이런 일들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경쟁적인 스포츠 팀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미래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기술과 삶의 교훈들을 가르쳐준다. 트랜스젠더 학생들도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네소타, 사우스다코타, 워싱턴을 포함한 15개 주와 컬럼비아 주는 이들이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일치하는 학교 스포츠 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만든 바 있다. 또 점점 더 많은 주의 스포츠 협회들(athletic associations)이 이런 정책들을 고려하고 있다.

#### 남성과 여성 사이 인식된 차이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시스젠더 남성과 시스젠더 여성 간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자주 모호하게 만든다.

스포츠 협회에서 이 이슈에 대한 서면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지 않은 주라고 할지라도, 학교와 교육구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스포츠 팀에 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불행히도 학교에서는 때로 트랜스젠더 학생, 특히 트랜스젠더 여성 청소년이 다른 선수보다 경쟁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일치하는) 여성 팀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 오해하곤 한다. 이런 경쟁 우위에 대한 우려들은 근거가 없을 뿐더러,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능력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하곤 한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인식된 차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시스젠더 남성과 시스젠더 여성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자주 모호하게 만든다. 더욱이, 트랜스젠더를 포용하는(transgender-inclusive) 자격 규정의 적용을 받은 극소수의 트랜스젠더 학생 운동 선수들은 팀 동료들의 규모와 기술 수준에 잘 통합되기 때문에 이런 경쟁 우위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트랜스젠더 여성 청소년들은 태어날 때 남성이라는 성별로 지정 되었을 수는 있지만, 여성 동료들이 갖추고 있는 여러 운동 능력을 비슷하게 갖고 있다 (she still falls within the wide range of athletic abilities of her female peers).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 학생선수들의 참여는 그 자신이나 다른 학생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 각 스포츠의 안전 규칙은 선수들이 어떤 규모든 어떤 능력치를 갖췄든 보호하고, 트랜스젠더 및 시스젠더 학생선수들의 안전에 관한 모든 우려를 적절하게 무화(neutralize)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몇몇 학교 및 스포츠 협회는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스포츠 팀에 참가하려면 먼저 성기 수술을 비롯한 특정 의료적 조치를 받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점점 더 많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오기 전에 트랜지션을 시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몸이 잘못된 사춘기를 겪지 않도록 하는 의약품을 복용한다. 이는 다시 말해 이들은 생식 기관을 제외하고는 시스젠더 포래들과 호르몬 수치 등 모든 면이 같다는 이야기다. 사춘기를 미루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방법이 되고 있지만, 지금도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높은 비용, 보험 적용의 미비, 적절한 지원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트랜지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락커가 부족해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자주 언급한다. 공간 접근권은 이들이 체육 교과 과정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는 것 중 주요한 요인이고, 이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장벽이 될 수 있다.

또한 의료적 조치를 받고자 하는 것은 학교의 영향 없이 당사자와 의료인 사이에 논의되어야 하는 매우 개인적인 결정이다. 때문에 스포츠 참여를 위해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 보건 및 체육 수업

여러 이유들로 일부 학교들에서는 보건과 체육 수업을 성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트랜스젠더 학생을 학교환경에 통합하는 방법 중 하나는 트랜스젠더 학생을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일치하는 수업에 배치하는 것이다. 특히 트랜스젠더 학생이 개인적으로 트랜지션을 하고 있는 경우, 잘못된 보건, 체육 수업에 배치되었을 때 바로 또래들에게 정체성이 알려져 괴롭힘과 따돌림을 겪게 될 수 있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체육 교과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로 탈의실의 부족을 언급하곤 하며, 이는 졸업 요건 충족에서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 괴롭힘과 폭력을 경험했어요. 내가 시스젠더이고 이성애자였다면

이 모든 고등학교 생활이 훨씬 쉬웠을 거예요.”

- HRC 재단에서 수행한 2012 청소년 조사 참여자의 언급

## 홈커밍, 프롬 & 기타 학교의 전통 행사들

학교의 전통은 많은 학생들에게 중요하며 트랜스젠더 학생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다.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성별로 나뉜 행사를 비롯한 모든 학교 전통 행사들에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래들에게 진정한 자신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홈커밍이나 프롬 킹/퀸 출마 같은 전통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트랜스젠더를 프롬 킹이나 퀸으로 뽑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교육자들은 이런 허용이 전체 학교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행사들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또래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차별과 혐오 & 괴롭힘

각 학교들에는 트랜스젠더, 젠더퀴어(gender-expansive)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공간을 누릴 수 있게끔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은 이 학생들이 겪는 차별이나 괴롭힘, 폭력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적절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개인의 실제의/인지된 트랜스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은 다른 차별 및 괴롭힘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모든 교육구는 성별정체성을 다루는 비차별 및 괴롭힘 정책을 가져야 하지만,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육구는 또한 연구 기반 개입을 통해 따돌림과 괴롭힘을 해결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학 및 퇴학 등 학생을 교육환경에서 퇴출시키는 “무관용” 조치를 하는 징벌적 정책은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에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학 및 퇴학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대신에 부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데,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진 이유인 LGBTQ 유색인종, 장애 학생에 대해 불균등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괴롭힘에 맞서 싸우는 LGBTQ 학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과 긍정적인 행동 개입과 지원은 학교 분위기를 개선하고, 괴롭힘과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대안의 두 가지 사례이다. 괴롭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 전체에 포용과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 장은 재학 중에 트랜지션을 하는 학생들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보다 복잡한 상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지지적이지 않은 부모나 보호자

불행하게도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높은 수준의 가족 거부를 경험한다. 가족 지지의 결여는 장기적, 단기적인 정신 건강과 웰빙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GB 청소년의 가족 거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성적 순응(gender conformity)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의 젠더 표현을 바꾸고자 하는 부모의 높은 압력은 청소년의 높은 수준의 우울증과 관련이 있으며, 이 경우 청소년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약 4배 더 높고, 불법 약물 사용과 HIV에 걸릴 위험 또한 두 배 이상 높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이 종종 LGB 청소년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유, 즉 지정성별과 관련된 고정 관념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저는 오직 학교 사람들에게만 내 정체성을 밝혔어요.

가족한테는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요.”

- HRC 재단에서 수행한 2012 청소년 조사 참여자의 언급

학교는 청소년이 가족 거부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장소일 수 있다. 트랜스젠더 학생이 지지적인 부모를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안전한 학습 장소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은 지지자를 찾기 위해 관리자(administrator)나 교육자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함부로 가족과 논의하여 실수로 청소년을 더 큰 피해의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하고, 괜찮은지를 학생에게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학교는 학생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고, 학교에서 학생이 지지를 구해야 할 필요성과 집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협력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이슈들과 상황을 다룬다.

- 학생이 원하는 조정 또는 변경사항들 (예: 다른 이름, 대명사 사용이나 성별로 구분된 시설 사용).
- 부모/보호자와 서면 및 구두로 의사소통할 때 학생을 언급하는 방식.
- 형제자매와 의사소통할 때 학생을 언급하는 방식.
- 교사 등 교내의 다른 비청소년들과 공유할 정보.
- 동료의 질문에 대처하는 방법 (학생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비밀이 아닌 경우).
- 학생이 가족의 지지 결여에 대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학교에서 학생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훌륭한 단기 해결책이다. 그러나 가능한 경우 목표는 가족이 자녀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지원하고, 학생과 가족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기회를 찾는 것이어야 한다. 자녀가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부모가 처음에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은 대개 성별정체성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거나, 그것이 자녀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 이런 반응은 종종 사랑과 보호의 마음에서 나오며 자녀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아닐 수 있다. 거부는 보호를 위한 잘못된 시도일 수 있는 것이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이런 반응을 거부로 경험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가족이 행동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교는 학생이 커밍아웃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고, 온 가족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트랜스젠더/젠더퀴어(gender-expansive) 당사자나 부모 또는 지역사회 자원에 연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의 수용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가족 구성원에게 자녀의 성별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받게 될 심각한 결과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자가 관찰했던 바, 가족의 거부가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강조하는 것도 부모의 태도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자녀의 성별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

가족 거부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부모가 자녀의 성별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특히 이러한 갈등이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의 맥락에서 발생한 경우 더욱 악화된다. 부모 두 명이 모두 지지적이지 않은 경우와 같은 상황은 학교가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지만, 학생의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요구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양육권 변경을 원하는 부모는 최소한 자신의 요구가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 기준은 유연하며, 가정 법원의 판사가 각 자녀의 필요에 맞는 양육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불행히도 양육권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학 관계로 인해 이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방법이 모호해질 수 있다. 또한 법원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필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이 과정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법원이 부모에게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이때의 돌봄 기준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부모가 판사에게 아동의 성별정체성을 지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 교직원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돕고, 이런 노력이 실패할 경우

#### 학생의 필요(needs)에 대한 목소리를 넘어서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혼의 정서적 고통과 신뢰 부족 때문에 자녀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자녀가 정작 필요한 것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정체성 문제를 이용해 자신과 자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킨다고 믿곤 한다. 그러나 자녀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조차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랄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와 같은 중립적인 전문가가 아동의 요구를 평가, 인식하고, 이러한 조치를 권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상황을 풀어나가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따로 또는 함께 부모를 만나서, 교육자가 본 것을 바탕으로 이런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시간은 지지적이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교육자들은 비판단적 태도로 부모의 이유를 듣고, 그 이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나 우려에 대해 침착하게 응답하고, 가족 거부로 인해 청소년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재학 중에 트랜지션을 할 때(또는 트랜지션을 못할 때) 학생의 수행도나 태도, 행동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관찰한 결과는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다. 마지막으로 교육자(school personnel)는 학교가 자녀의 요구(needs)를 충족시키고 자녀의 성취를 돕기 원하는 방법을 짧게 설명하는 명확하고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된 권장 사항을 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은 학교와 지지적이지 않은 부모 간에 협력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부모 간의 부족한 신뢰를 보충할 수도 있다.

교육자와 학교 행정실(school administrators)은 또한 가족에게 관련 지식이 많은 정신 건강 전문가 또는 의료인, 지지 집단과 지역 비영리단체와 같은 지역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지역 자원들이 학교에서 직접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나 지원을 보완해줄 것이다.

**학교 관계자(School officials)는 매일 학생과 상호 작용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는 교직원으로 하여금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대한 고유한 시각을 제공한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요구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학교는 정기적으로 학생의 상태를 점검하여 추가적인 지원과 지지를 제공하고, 적절하다면 학부모와 논의한 정도를 학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학교는 가족이 합의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으며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학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취를 얻을 수 있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학부모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교육자나 행정실(school administrator)이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호출될 수 있다.

학교 관계자는 매일 학생과 상호 작용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직원은 학부모가 가질 수 있거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편견 없이 학생의 필요에 대한 고유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학생이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기 전후에 학교의 경험을 공유하면, 그 이의 성별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판사에게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직원이 관찰한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변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증언이 힘을 얻을 수 있고, 판사가 아동의 필요와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완전한 이해를 얻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자녀의 성별(gender)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반응은 종종 사랑과 보호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자녀를 해칠 의도가 없을 수 있다.**  
**거부는 보호를 위한 잘못된 시도일 수 있는 것이다.**

특수 교육법(트랜스젠더 학생을 받아들이지만 일부만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뿐인 명시적인 학교정책)은 앞으로 배우고 성취해나갈 강한 트랜스젠더 학생을 대체할 수 없다!



##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IEP 또는 504 계획 개발

특수 교육법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때의 어려움이 꼭 학업적인 필요는 없으며, 사회적·정서적 웰빙과 발달도 의미할 수 있다. 일부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을 감안할 때, 이 법은 가족과 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고유한 욕구를 해결하고, 그 이가 성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잠재적인 도구가 된다. 트랜스젠더 학생은 젠더 디스포리아(gender dysphoria) 때문에도 특수교육의 기준을 충족하지만, 삶의 여러 면에서 정체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생기는 불안과 우울 등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 때문에도 해당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 교육법(IDEA)과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의 504항(Section 504)은 두 가지 주요한 특수 교육법이다. IDEA는 개별 교육 계획(IEP)의 수립과 구현을 관장하고, 504항은 504항 계획에 대한 규칙을 만든다. 이 법들은 비슷한 목적을 수행하지만, 학교가 제공해야 하는 지원, 서비스 및 편의의 정도가 IDEA 상의 기준이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504항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학생에 대한 법적 보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트랜스젠더 학생은 또한 IEP 기준을 맞추는 학교에서 보다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학부모와 학교는 IEP가 있는 학생이 특수반에 다녀야 한다는 등의 오해 때문에 특수 교육법의 시행을 꺼리곤 한다. 사실상 특수 교육법은 학생이 별도의 교육환경이 필요하다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반 수업에 배치하고자 한다. 이 법은 학생의 발달을 방해하는 사회적, 정서적, 학업적 어려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특수 교육법은 지원과 서비스,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미래 기회를 확대하고, 성취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특수 교육 계획을 통해 학교는 학생이 선택한 이름과 적절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같은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IEP나 504항 계획은 학교에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휴식 시간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 해도 IEP나 504항 계획을 통해 해당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학교, 교육구의 행정 바뀌는 경우에도 일관적인 지원을 받게끔 할 수 있다.

IEP나 504항 계획의 한 가지 잠재적인 단점이 있다면 트랜스젠더 여부를 실수로 공개할 수 있는 또 다른 학교 기록을 만들어낸다는 것으로, 이는 다른 교육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와 학교 관계자가 비공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일부 학생들이 특수 교육 및 법적으로 정의된 장애에 대한 낙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트랜스젠더 학생은 성별위화감 때문에 특수교육법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성별정체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불안이나 우울 등의 문제 때문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IEP나 504항 계획의 잠재적 낙인과 이점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여부는 학생, 교육자, 부모/보호자가 협력하여 고려해야 하는 결정이며, 부모와 학생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특수 교육의 평가와 자격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E를 참조하라.

## 6장 법적 배경

이 가이드라인 전반에 걸쳐 언급된 바와 같이, 학교의 모든 이해 관계자가 협력하여 트랜스젠더 친화적인(gender-inclusive) 학교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다양한 연방법 및 주법에 대한 논의 없이는 불완전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장들에서 언급되는 각각의 법들은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안전망(layers of protection)을 제공한다. 주법이 다양하기에 어떤 주에서 온 학생들은 다른 주보다 더 많은 안전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교육구에 어떤 안전망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은 안전하고 지지적이며 차별이 없는 교육환경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한다.

### 교육법 IX 1972년 개정안

1972년 개정된 교육법 장 IX(Title IX)는 연방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성차별금지에 대한 장 IX가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정체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모든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해석과 유사하게 미국 법무부(DOJ)는 G.G. 대 Gloucester 카운티 교육 위원회 소송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의 편에서 학교에서 남성 청소년들의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옹호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제출한 서류에서 법무부는 “학생이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일치하는 화장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장 IX 성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 금지된다”고 결론지었다. 미국 교육부의 시민권 사무소(OCR)도 장 IX에 따라 각 교육구가 화장실, 탈의실, 야간 견학처럼 성별로 구분된 공간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성별정체성에 따라 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5년 7월, DOJ와 OCR이 아카디아(Arcadia) 통합 교육구에서 제시된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평등 및 비차별 정책을 승인한 바 있다. 이 정책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성별로 구분된 시설 및 활동에서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privacy)를 비롯한 다른 중요한 보호 조항들과 함께 “개인의 성별정체성을 결정할 책임은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명확한 지침을 포함한다. 간단히 말해 타이틀 IX는 모든 연방의 기금을 받는 학교들과 프로그램이 모든 측면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별정체성을 존중하도록 요구한다.

### **가족의 교육권 및 개인 정보 보호법**

가족의 교육권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은 트랜스젠더 학생을 보호하는 또 다른 연방법이다. FERPA는 학생이 18세 이상인 경우에 학교가 학부모나 학생의 허락 없이 당사자의 이름 같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밝히는 것을 금지한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정의는 학교 커뮤니티에 속하는 사람이 특정 사람을 알아챌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정보들에 적용된다. FERPA는 “정당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학교 직원에게 학생의 정보를 논의할 재량권을 부여하지만,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대부분 이러한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

### **주 차별금지법**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또한 주의 차별금지법에 의해 학교에서의 차별로부터 보호받는다. 14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학교에서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정체성에 대한 명시적인 보호가 없는 주에서도, 장 IX의 사례처럼 트랜스젠더 학생을 포함하여 성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또한 장애 차별을 금지하는 주의 차별금지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주 차별금지법을 학교가 교육의 모든 측면에서 학생의 성별정체성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판례들은 적절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괴롭힘이나 의복 규정을 포함해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 **연방 및 주 헌법 보호**

보호의 마지막 토대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특히 중요한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privacy)와 평등한 보호에 대한 미국 헌법의 권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컨대 학교는 학생의 외모가 학교에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한, 의복 규정을 넘어서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외모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의무사항이다. 마찬가지로 학교는 학교 규정을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 학생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 학생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별 고정관념을 사용할 수 없다. 학교는 법적으로 트랜스젠더 여성 청소년에게 남성 청소년의 복장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다른 학생들의 불만을 살피면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호소하는 괴롭힘 피해를 무시하거나, 동일한 학교 규칙을 어긴 시스젠더 학생보다 트랜스젠더 학생을 더 가혹하게 징계할 수 없다.

특히, 많은 주의 헌법에는 연방의 헌법 보호를 반영하는 조항이 있다. 어떤 주의 법원은 이러한 조항들을 미국 헌법보다 많은 보호를 위한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

한 명의 학생이 얼마나 많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법원은 모범 사례와 학교가 취한 행동의 정당성을 검토해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가이드라인에 실린 모범 사례, 그리고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별정체성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피해에 대한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차별을 옹호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 대신 학교는 학생,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모든 학생을 위한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비용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학생의 사회적, 정서적, 학업적 성장과 웰빙을 위한다는 학교의 사명과 일치하는 것이다.

## 결론

### 모두를 위해 지지적인 학교 만들기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트랜지션이 여정인 것처럼, 트랜지션을 지원하고 긍정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과정도 하나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있는 정보의 양은 벽차 보일 수 있지만, 트랜스젠더 학생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은 학생이 지지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진정한 성별(gender)이 존중되는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귀결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전에 거의, 또는 아무런 지침도 없이 이 같은 과정을 거친 교육자, 학부모 그리고 옹호자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우리가 제안하는 접근은 반복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었다. 계획을 세우는 건 필수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항상 예상되거나 어려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러한 노력의 최전선에서 교육자들이 헌신하는 동안 학생의 궁극적으로 성취를 거두는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얼마나 협업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트랜지션이 하나의 여정인 것처럼, 그 이의 트랜지션을 지원하고 긍정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과정도 하나의 여정이라 할 수 있다. 한 학생이 사회적으로 트랜지션을 거친 지 몇 년이 흐른 후에 또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 상담사, 행정가, 학부모나 트랜스젠더 학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지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밟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 팀으로 일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으며 결국 당사자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다른 학생들, 교육자나 지역 사회의 사람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 부록 A

### 사춘기 & 의학적 트랜지션

사춘기가 시작되면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신체가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2차 성징이 시작되면서 젠더 디스포리아(gender dysphoria)가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또래들에게도 가시적이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일치하는 신체로 보일 수 있기를 바라며 발달 중인 몸을 숨기기 위해 특정한 예방 조치를 취하곤 한다. 예컨대 자신을 남성이라고 여기는 청소년은 의복과 여러 보형물을 사용해 가슴의 윤곽을 평평하게 만든다. 이런 보형물은 딱딱하고 조이거나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기는 불쾌감이 단점보다 훨씬 크다.

사춘기는 또한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가족이나 의료인과 함께 의료적 트랜지션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이다.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를 지연시키는 의약품이 복용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의약품은 일시 중지 버튼 역할을 하며, 지정성별에 따른 원치 않는 신체적 특성이 발달하는 고통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청소년은 가족이나 의료인과 협력하여 계획을 세워나가게 된다.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일치하는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른 지정성별의 호르몬을 복용할 수도 있다.

이런 유형의 의료적, 사회적 트랜지션(예를 들면 법적 이름 변경)에는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어떤 경우에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의료적 트랜지션의 특정 조치를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트랜지션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이가 표현하는 성별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 부록 C

### 말하기 포인트

모든 학생들을 위하여 젠더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교육자들은 일련의 공통된 의문과 우려를 마주한다. 다음의 문답법은 그런 문제를 마주한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 우려에 대응하기 :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하기

“학교가 도대체 왜 이런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죠? 이곳에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있길래?”<sup>145)</sup>

● 저희가 선생님<sup>146)</sup> 자녀의 신상정보를 함부로 떠벌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적체성과 같은 다른 학생 개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도 역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생님이나 선생님 자녀가 마주한 젠더 관련 문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요?

● 많은 사람들은 교육의 영역에서 젠더에 기반을 둔 차별<sup>147)</sup>이 불법이며, 젠더가 많은 주(州)와 도시에서 인종이나 종교, 장애와 같이 보호받아야 하는 영역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젠더퀴어 학생들은 다른 학생이나 직원, 그리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서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호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145) Appendix C는 학교 내의 교육자들이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의문과 우려를 마주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를 문답의 형식을 빌려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번역문에서는 구어체로 이루어진 원본의 문장을 따옴표로 표기하여 번역하였다.

146) 원문에서는 “you”이다. 그러나 Appendix C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학교’ 내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너”나 “당신”보다는 “학부모”라는 번역어가 맥락상 적절해 보인다. 본 번역문에서는 이를 맥락에 맞추어 “학부모” 혹은 “선생님”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147) 원문의 ‘Title IX’는 1972년 교육 개정안의 일부로 통과된 미국의 연방시민법이다.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 또는 여타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https://en.wikipedia.org/wiki/Title\\_IX](https://en.wikipedia.org/wiki/Title_IX)). 번역문에서는 법령의 제목을 그대로 쓰는 대신 문맥과 해당 법안의 내용에 맞추어 “교육에서 젠더에 기반을 둔 차별”로 번역했다.

● 아시다시피 PTA<sup>148)</sup>와 NEA<sup>149)</sup>, 그리고 CSBA<sup>150)</sup>와 교육자 및 상담사들, 기타 해당 관련 기관의 관리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공신력 있는 협회들은 트랜스젠더와 젠더퀴어 학생들의 학교 내 안전을 위해 명확한 지침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 물론 저는 선생님과 같은 많은 분들께 있어서 이러한 영역이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달라진다는 것은 정말 도전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선생님과 이 문제에 대한 몇 가지의 정보를 같이 나누며 선생님의 그 도전에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누가 내 아이를 보호하고 있나요?”

● 선생님의 자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가요?

● 이 학교 내에서 모든 학생이 안전해야 한다는 것은 제게 주어진 최우선적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자녀가 불안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그런 상황이나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저희들은 학교 내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프라이버시와 신체적 경계를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학생의 행동이 다른 학생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저희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자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행동이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자녀가 더 편안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148) Parent-Teacher Association. 학부모와 교직원에 의한 교육 관련 단체. 개별 학생의 성장보다는 기부금을 모으거나 교직원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전체 및 모든 학생들에게 유익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https://ko.wikipedia.org/wiki/%ED%95%99%EB%B6%80%EB%AA%A8\\_%EA%B5%90%EC%82%AC\\_%EC%97%B0%ED%95%A9%ED%9A%8C](https://ko.wikipedia.org/wiki/%ED%95%99%EB%B6%80%EB%AA%A8_%EA%B5%90%EC%82%AC_%EC%97%B0%ED%95%A9%ED%9A%8C)).

149)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미국 최대의 교직원 노조. 공립학교 교사를 비롯한 공립학교 교원과 대학의 교직원 및 직원, 은퇴한 교육자,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대표한다. 공교육의 정의(正義)와 우수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Education\\_Association](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Education_Association), <https://www.nea.org/about-nea>).

150) 캘리포니아 주의 선출직 공무원들로 대표되는 비영리 교육협회. 주(州)내 학령 아동의 교육과 안녕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옹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https://www.csba.org/en/About/AboutCSBA>).



수 있을까요? 만약 선생님의 자녀가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는 선생님과 선생님의 자녀와 함께 보다 화장실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sup>151)</sup>

**“그렇다면 어떤 학생이 트랜스젠더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어느 날 어떤 남자가 학교에 와서 자신을 여자라고 말하고 여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겠다고 하면 어떻게 막겠다는 거예요?”**

● 학교는 다채로운 방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지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젠더와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학교는 필요한 지원이 매우 신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써왔습니다. 다대한 주의와 계획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 전국의 모든 학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가볍게 논의되지 않습니다.

● 특히 트랜스젠더 학생은 어떤 부적절한 목적으로 자신을 트랜스젠더라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트랜스젠더 무언가를 회피하거나 이것을 꾸며내려고 하지 않습니다.<sup>152)</sup> 그들이 왜 그럴지 한번 생각해보시겠어요? 한편, 트랜스젠더인 척 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수립한 정책계획 과정에서 쉽게 식별될 것입니다.

● 트랜스젠더 학생<sup>153)</sup>을 향한 우리의 정책은 이성(異性)<sup>154)</sup>의 학생이 허가되지 않은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151) 직역하자면 “만약 어떤 이유로든 당신의 학생이 화장실의 이용 또는 변경과 같은 프라이빗한 공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와 함께 이것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작업할 것이다.”이다.

152) 원문(빨간색)에서 “something”과 “this”가 지시하는 바를 명확히 의역하기 어려움.

153) 원문에서는 “transgender students consistent with their gender identity”라고 쓰여 있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들의 성별정체성과 일치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이지만, “트랜스젠더”에 그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므로 “consistent with their gender identity”의 의미를 삭제하여 번역했다.

154) 원문에서는 “of the opposite sex”라고 쓰여 있다. 정확한 번역어가 “이성(異性)의”이지만, “of the opposite sex”가 그 앞의 “consistent with their gender identity”와 대응되는 낱양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의 “consistent with their gender identity”를 “트랜스젠더”로 번역한 것과 같이 “of the opposite sex”를 “시스젠더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려에 대응하기 : 젠더에 대해 가르치기

### “왜 내 아이가 학교에서 젠더에 대해 배워야 하는 거죠?”

●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자신과는 다른 타인을 존중함으로써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다양한 젠더에 대해 배우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일부입니다. 더 많은 관용으로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학교환경이란 모든 학생들에게 고정 관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용한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잘못된 것에 저항하고 그리하여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 또한 우리는 본인이 원하는 성별로 여겨지지 않는 학생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과 마주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 그리고 폭력은 매우 흔히 나타는 현상들입니다. 이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수의 주(州)(2014년 기준 14개)와 교육구들이 학생들의 젠더표현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폭력을 특히 금지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방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은 젠더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더 다양한 젠더를 이해하고 돕도록 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은 우리 교육구에 주어진 법적 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모든 학생들에게 있어 더 안전하고 더 포용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sup>155)</sup>.

### “제 아이가 젠더에 대해 배우기에는 너무 어린 것이 아닐까요?”

● 학생들은 이미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젠더에 대한 메시지는 어디에나 있고, 학생들은 그 메시지에 따라 '남자가 됨'과 '여자가 됨'에<sup>156)</sup> 대한 매우 명확한 "규칙"을 전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위반'했을 때 자신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다가올 것인지

155) 원문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있어 더 안전하고 더 포용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while working to create a safer, more supportive learning environment for all students) 우리 “교육구”에 주어진 “법적 의무”를 충족(school districts meet those legal obligations)시킨다고 적혀있다. 앞 문장들에서 연방법에서 자치법(federal, state and municipal laws)에 이르기까지 교육구(school districts)에 영향을 미치는 법들이 있다고 언급했으므로, 이 문장에서도 그들의 즉 교육구의 법적 의무를 지키는 바를 중요히 언급하는 맥락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문단의 질문이 “왜 내 아이가 학교에서 젠더에 대해 배워야 하는 거죠?”에 대한 물음임으로, “while”을 통해 ‘법적 의무가 있어서 그렇다’는 내용에 무게를 신기 보다는 그 앞 문단의 대답과 수미상응으로 ‘학생들에게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대답에도 무게를 실어 번역했다.

156) 원문에서는 ““rules” for boys and girls”라고 쓰여 있다.

또한 알고 있습니다.<sup>157)</sup>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젠더의 다양성에 대해 배운다는 것은 학생들이 더 다양한 관심사와 생각들, 그리고 활동들을 탐구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네 성별에 맞게 행동하라"<sup>158)</sup>는 압박감을 해소시켜 줍니다. 모든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재능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이 마땅히 주어 져야 합니다.<sup>159)</sup>

●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든 안에서든 다채로운 젠더 표현을 보이는 다른 학생들을 마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되돌아본다면 우리 모두가 사실 어린 시절에 이미 마주했던 친구들입니다. 톰보이나 수줍고 예민한 남자 아이들은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젠더 표현에 저항하는 학생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지지받는 교육환경을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학생들은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젠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은 재생산과 섹슈얼리티<sup>160)</sup>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뜻 아닌가요?”

● 간단히 답해드리자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젠더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싶어 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지, 그리고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자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섹슈얼리티라 할 수는 없습니다. 섹슈얼리티란 육체적인 친밀감과 성적인 끌림을 포

157) 원문에서는 앞의 문장과 함께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앞선 맥락에서 젠더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인해 벌어지는 폭력들을 언급한 바 있고, 해당 텍스트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보호'와 '존중'이다. 따라서 이들이 처한 현실을 좀 더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위하여 문장을 둘로 나누었다.

158) 원문에서는 "the pressure of "doing gender correctly,""로 쓰여 있다. 직역하자면 "'젠더/성별을 올바르게 행동하라'라는 압박감"으로 할 수 있겠으나,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을 위하여 "'네 성별에 맞게 행동하라'라는 압박감"으로 해석하였다.

159) 원문의 뉘앙스는 이보다 은근하다. 원문은 "(젠더에 대한 교육이)모든 아이들을 위하여 '네 성별에 맞게 행동하라'라는 압박감을 해소시키고, 그들을 위하여 새로운 재능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간이 창조된다." 라고 쓰여 있다. 좀 더 강한 주장의 뉘앙스를 담아 의역했다.

160) 원문에서는 "reproduction and sexuality"로 쓰여 있다. "재생산과 섹슈얼리티"로 번역했지만, 문맥상 이와 같은 번역어를 선택하는 것이 약간은 어색해 보인다. 이 텍스트에서 '질문자'라는 캐릭터는 학교(혹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젠더 교육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질문자'의 캐릭터가 "재생산과 섹슈얼리티"라는 번역어를 선택했다는 것은 해당 캐릭터성에 배반된다는 느낌이 있다. 그와 같은 번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캐릭터가 해당 번역어에 전문적이지 않을 리 없고, 해당 이슈에 대해 폭넓고 진보적이며 그래서 긍정적이지 않은 이해를 하고 있을 것으로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 맥락상 더 정확한 번역어는 "낙태와 성교" 정도라고 생각한다.

괄합니다. 젠더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젠더 정체성<sup>161)</sup>이란 스스로가 느끼기에 젠더 스펙트럼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꼭 들어맞는지에 대한 내면의 감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포함됩니다<sup>162)</sup>.

● 신체적인 성(性)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고, 그래서 대답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프라이빗한 부분이다"와 같은 대답으로 문답이 진행될 것입니다. 해부학적 용어로 거론되더라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에서 재생산이나 섹슈얼리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이러한 질문을 함부로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미 젠더의 다양함과 복잡성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섹슈얼리티는 더 이상 그들의 이해를 난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복잡하게 이해하고 어렵게 사고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간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구분하여 생각해보지 못한 우리들 즉, 어른들일 것입니다.

**"젠더 다양성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가요?<sup>163)</sup>"**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느 집단에 속하든지 간에 서로 다른 믿음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성을 배워야 하는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 주변의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우리 학생들의 단짝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다양한 성별정체성을 배우게 하는 목적에는 학생들에게 '남자'가 되거나 '여자'가 되는 길이 유일하지 않으며, 따라서 모두가 그 자체로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성별정체성이나 젠더 표현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에 대한 그들의

161) 합의를 거쳐 "Gender identity"를 "성별정체성"으로 번역하기로 하였으나, 앞 문장들("This is not sexuality. Sexuality involves physical intimacy and attraction. Gender is about self-identity.")에서 이어져 점층적으로 강조되는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되어 '젠더'를 살려 "젠더 정체성"으로 번역했다.

162) 원문은 'This includes all kids, "typically" gendered or not'

163) 정확한 번역어는 "당신은 내 아이에게 이러한 가치들을 거부하도록 가르치려는 건가요?"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번역해보았다.

생각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학생들, 즉 다른 성별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을 놀린다거나 괴롭힌다거나 해쳐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젠더 다양성 교육은 학생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살고 같이 일하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모든 이들을 마땅히 친절과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는 매우 간단한 합의에 스스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아이가 혼란스러워 하지는 않을까요?”**

● 충분한 정보와 경험에 의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학생들은 나이가 어떠한지 간에 현재 우리 사회가 인지하는 두 성별 범주 이상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적절히 설명할 수만 있다면, 학생들에게 젠더 다양성이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 자녀분과 젠더에 대해 대화하는 순간이 온다면 선생님께서는 젠더 스펙트럼 속에서 헤엄치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로써 정해진 성별 규범을 벗어나 더 다채로운 젠더 표현을 구사하는 선생님의 자녀분을 새롭게 알게 될 것입니다.<sup>164)</sup> 물론 자녀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스스로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 지가 선생님을 매우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부모들에게 그런 대화가 개방적이고 탐구적인 분위기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젠더퀴어 학생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학대, 정서적인 문제, 방치, 이혼이나 별거, 혹은 과도한 부모의 간섭이 젠더에 순응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의 트랜스젠더와 젠더퀴어 학생들이 엄청난 사회적 학대와 부모의 거부감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인들이 그들의 젠더 정체성이나 젠더 표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채로운<sup>165)</sup> 젠더표현과 젠더 아이덴티티를 가진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지지받지 못함으로써 외로움과 낮은 자

164) 해당 문장을 직역하자면 "이는(부모와 젠더에 대해 토론하기) 그들(자녀들)이 이해하는바(누구나 전형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다양한 젠더 표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 everyone may have some variation of gender expression that fits outside of stereotypical norms)를 보여준다."이다.

165) 원문에서는 “atypical”로 쓰여 있다. 따옴표를 붙여 “비전형적”으로 해석해야 옳겠으나, 답변자의 응답이므로 보다 긍정적인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다채로운”으로 번역했다.

존감, 그리고 다른 여타의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배제적이고 적대적인 환경이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파괴적인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수많은 통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젠더퀴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인 고통은 그들이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주했을 법한 폭력의 결과<sup>166)</sup>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더 긍정적이고 더 나은 환경이 제공되었을 때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크게 줄어들거나 해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sup>167)</sup>입니다.

### “아이들이 비전통적인 젠더 표현을 하게 내버려둠으로써 놀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 물론 젠더퀴어 청소년들이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많은 양의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젠더 포용적인 교육이 그러한 괴롭힘을 감소시키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sup>168)</sup>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학생들이 '자기 자신' 때문에 좋지 않은 경험을 겪고 있다면, 그 해결법을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되물어야 합니다. 그러한 결과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기표현에 대한 억압과 정상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은 이 모든 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궁극적인 길<sup>169)</sup>일 것입니다.

### “젠더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제 아이를 트랜스젠더로 만들지는 않을까요?”

●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그들의 자녀를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가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

166) 원문에서는 “a response to the mistreatment”라고 쓰여 있다. “학대에 대한 반응”이겠지만, “폭력의 결과”라고 번역했다.

167) 원문에서는 “It is not at all uncommon”이라고 쓰여 있다. “전혀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라고 번역했다.

168) 원문에서는 “body of knowledge”라고 쓰여 있어 “지식의 본체”가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되지만, “연구 결과”라고 번역했다.

169) 원문에는 “a long way”라고 쓰여 있다.

습니다. 젠더에 순응하도록 강요하는 부모의 압력은 자녀분들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고,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나 위험도가 높은 행동을 초래하게 하는 상당한 예측 변수가 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50%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자살시도율은 바로 이런 현상을 지적하는 주요한 통계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그들이 실제로는 거의 이루기 힘들 정도로 편협하게 정의된 자기표현의 압박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젠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압박감의 많은 부분을 해소하는 데에 분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만약 트랜스젠더들이 그렇게 ‘정상’이라면, 왜 일부 가족들은 그것에 대해 그렇게 숨기려 하는 것<sup>170)</sup>일까요?”

● 그것은 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가족들은 자신들이 타인과 얼마나 많은 부분을 공유할 것인지를 놓고 서로 함께 논의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 내면의 성별정체성을 반영하는 젠더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청소년은 자기 자신을 '트랜스젠더 여성' 혹은 '트랜스젠더 남성'이 아닌 '여성' 혹은 '남성'으로 명명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뜻입니다.<sup>171)</sup>

● 일부 청소년과 가족들은 그들 삶 속의 모든 사람들과 이를 공유할 정도로 개방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이를 완전히 공유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두 가지의 접근법 사이에서 적절한 혼합을 찾으려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러한 결정은 청소년과 그들의 보호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며, 때때로 의료 및 정신 건강, 혹은 해당 분야의 기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결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 만약 자녀가 자신의 사생활을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바를 존중하고자 하는 가정이라면, 보기에는 무엇인가를 '숨기려 하는<sup>172)</sup>'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170) 원문에서는 “private”이라고 쓰여 있다. “은밀히 하려는”, “공개하지 않으려는” 등으로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대화의 맥락에 맞게 “숨기려 하는”으로 번역했다.

171) 원문은 ‘For example, the child would identify themselves as a girl or boy as opposed to a transgender girl or boy.’

172) 원문에서는 “this can have the appearance of secrecy”라고 쓰여 있다. 직역하면 “이것은 비밀스러워 보일 수 있다”이지만, 매끄러우면서 동시에 질문자의 질문에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질문자가 언급한 표현인 “숨기려 하는”으로 번역했다.

것은 현실에서 잠재적인 낙인을 피하려는 노력일 수도 있는 동시에, 또는 단순히 개인적인 주제를 비밀로 두기위한 노력일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이미 심어준 성별에 대한 인상을 바로 잡거나 수정할 수 있을까요?”**

●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자녀에게 말해주고, 어른들이 그들만큼이나 늘 배우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녀와 함께 대화함으로써 선생님의 세계를 넓히려는 것은 멋진 일이 될 것입니다.<sup>173)</sup> 물론 선생님의 육아를 위태롭게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자녀분께 알려줬다고 생각해봅시다. 선생님께서는 그 잘못된 정보로 자녀분께 심어진 인상을 바로잡으려 할 것입니다. 성별/젠더 문제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젠더 다양성은 사회와 과학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더 깊게 이해해야 하는 영역입니다.<sup>174)</sup> 함께 살펴보고, 서로 대화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아이의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선생님께서도 이에 대해 배우고 있는 중이라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종류의 대화를 시작하기 이전에 선생님 본인의 감정을 먼저 마주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자녀분들은 이런 주제에 대한 선생님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선생님께서 젠더 다양성에 대한 불편함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면, 스스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을 갖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독서를 하고, 다른 이와 대화를 나누어보고, 그렇게 더 나아가 자신 스스로를 가르쳐보세요. 선생님께서 더 나은 이해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을 때,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자녀와 대화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자녀분들의 질문에 간단히 대답하고, 자녀분들이 그 대화를 더 깊게 이끌고 갈 수 있

173) 원문에서는 “Having conversations with your children that reflect your growing understanding is wonderful.”라고 쓰여 있다. 직역하면 “당신의 아이와 당신의 증가하는 이해도를 반영하는 대화를 가진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이겠지만, 좀 더 의역하여 번역하였다.

174) 원문에서는 해당 문장에서 단락이 종결된다. 앞 문장에서 ‘잘못된 이해를 아이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른으로서 그것을 바로잡으려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나왔고, 그 뒤에 ‘젠더와 관련한 지식도 마찬가지다.’ 라는 뉘앙스의 문장이 나왔으므로, 해당 문장 뒤에 원문에 없는 문장을 추가하여 좀 더 자연스럽게 단락이 끝나도록 처리해보았다.



도록 주도권을 내어주길 바랍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그러한 접근법에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부터 선생님을 안내하며 대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일어나는 복잡한 질문들은 거의 따져 묻지 않은 채 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어찌면 그 세계를 수월하게 헤쳐 나가는 자녀분들을 마주하며 매우 놀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더 넓은 세계를 열어보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건네어 보시길 바랍니다. “흐음, 그래. 나도 이것에 대해 이제 막 배우고 있단다. 만약 내가 더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도록 할게. 물론 네가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이다. 아마도 우린 이 대화를 함께 나누어볼 수 있을 거야.”<sup>175)</sup>

175) 많은 부분을 의역하고 다듬었다. “You may be surprised...(생략)”에서 마지막 문장까지의 텍스트를 그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당신은 어찌면 얼마나 간단하게 자녀가 그 영역을 향해하는지에 대해 놀랄 수도 있을 것이다. 몇몇 부모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찾아낸다. “흐음, 나는 이제 내 스스로 이에 대해 배우고 있단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 지 네게 말해주도록 할게. 물론 네가 더 알고 싶다면 말이야. 아마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이는)더 많은 논의를 위한 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부록 D

### 젠더 서포트 계획과 트랜지션 계획

다음 페이지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는 과정을 계획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찾을 수 있다. 학생 젠더 서포트 계획은 트랜스젠더 또는 젠더퀴어 학생의 학교 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이는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모두 함께하여 해당 학생의 구체적이고 성별에 기반한 요구가 어떻게 충족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트랜지션 학생 계획은 학교 내에서 해당 학생이 트랜지션을 어떻게 겪을 수 있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해당 학생이 타인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이해하고 인정하기를 바라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조치되어야 할 다양한 단계를 파악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한다.

- Confidential / 기밀사항 -

#### Gender Support Plan / 젠더 서포트 계획

본 문서는 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진정한 젠더가 설명되고 지원되는 방법에 대하여 공통된 이해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직원과 간병인, 그리고 학생은 본 문서를 완성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각 섹션을 완성한 후, 다 함께 각 섹션을 검토하고 해당 계획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공유된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학교에 학생의 공식적인 트랜지션을 계획하는 별도의 서류가 있음을 유의하라.

학교/지역 _____	오늘 날짜 _____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 _____	법적 이름 _____
학생의 젠더 _____	출생 시 지정된 성별 _____ 학생의 학습 레벨 _____
생년월일 _____	형제자매/관계 _____ / _____ / _____
부모/보호자/간병인/학생과의 관계	
_____ / _____	_____ / _____
_____ / _____	_____ / _____
현 회의 참가자 : _____	

#### 학부모/보호자의 개입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학생의 트랜지션을 인지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_\_\_\_\_에 \_\_\_\_\_아니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해당 계획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



---

#### 기밀, 개인정보 보호와 공개

해당 학생의 젠더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공개되거나 비공개되어야 합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체크하십시오)  
\_\_\_\_ 구(區)의 직원(관리자, 학생 지원 책임자, 지역 심리학자 등)

- \_\_\_ 특별히 지정할 직원 :  
\_\_\_ 현장 수준의 리더십/행정력(교장, 상담사 등)
- \_\_\_ 특별히 지정할 직원 :  
\_\_\_ 교사 및/또는 타 학교의 직원
- \_\_\_ 특별히 지정할 직원 :  
\_\_\_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지 않았으나, 해당 학생의 젠더를 알고 있는 몇몇의 학생들
- \_\_\_ 특별히 지정할 학생 :  
\_\_\_ 해당 학생은 젠더에 대해 타인(성인 및 동료)에게 공개적임
- \_\_\_ 기타-설명 : \_\_\_\_\_

만약 학생이 프라이버시의 강도를 주장한 상황에서 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을 시, 해당 기관이 하고 있는 예측은 무엇입니까? 교사와 교직원들은 해당 학생의 젠더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다른 학생들은? \_\_\_\_\_

교직원들은? \_\_\_\_\_

학부모/커뮤니티의 경우? \_\_\_\_\_

**학생의 안전**

학교 내에서 학생의 성인의 도움을 받을 때, 해당 성인은 누구인가? \_\_\_\_\_

만약 해당 성인이 부재중일 시, 학생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_\_\_\_\_

학생 및/또는 가족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면 무엇인가? \_\_\_\_\_

해당 학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무엇이고, 해당 경우 시 어떻게 신호를 보내기로 하였습니까? :

수업 중인 경우 : \_\_\_\_\_

운동장인 경우 : \_\_\_\_\_

건물 안인 경우 : \_\_\_\_\_

기타 : \_\_\_\_\_

다른 안전 문제 / 논의사항 : \_\_\_\_\_

**이름과 대명사, 그리고 해당 학생 관련 기록들**

학생정보시스템(SIS)에 입력된 이름/성별 \_\_\_\_\_

학생을 지칭할 때 사용할 이름 \_\_\_\_\_ 대명사 \_\_\_\_\_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과 성별표기를 학생정보시스템(SIS)에 반영할 수 있는가? \_\_\_\_\_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해당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엇을 조정할 수 있는가? \_\_\_\_\_

위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_\_\_\_\_

적합하지 않은 이름과 대명사가 사용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_\_\_\_\_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해당 학생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설명되고 유지될 수 있는가?

입학서류 작성 시 : \_\_\_\_\_

입학등록 완료 시 : \_\_\_\_\_

대체교사와 함께 있을 경우 : \_\_\_\_\_

표준시험 시 : \_\_\_\_\_

학교 제출 사진 : \_\_\_\_\_

IEP<sup>176)</sup>를 비롯한 다른 서비스 : \_\_\_\_\_

학생생활기록부<sup>177)</sup> : \_\_\_\_\_

방과후 프로그램 : \_\_\_\_\_

점심식사 대기 시<sup>178)</sup> : \_\_\_\_\_

출석확인 시 : \_\_\_\_\_

교원평가서 : \_\_\_\_\_

학교-가정 간의 공식 커뮤니케이션 : \_\_\_\_\_

학교-가정 간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학부모회/기타) : \_\_\_\_\_

타 지역 직원 및 보호자 : \_\_\_\_\_

교무실로 소환 시 : \_\_\_\_\_

졸업앨범 : \_\_\_\_\_

학생증 및 도서관 이용증 : \_\_\_\_\_

교내 우편물 목록<sup>179)</sup> : \_\_\_\_\_

교재 및 기타 학용품 배포 시 : \_\_\_\_\_

IT 계정<sup>180)</sup>의 배정 시 : \_\_\_\_\_

공지사항 알림 시<sup>181)</sup> : \_\_\_\_\_

만약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해당 학생의 젠더를 인지하고 않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면, 학교와 가정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까?

176) Appndix E의 주석 참조.

177) Student cumulative file. 학생 누적 파일.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해당 학생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서류 파일을 의미하는 뜻함.

178) Lunch lines.

179) Posted lists.

180) IT account. 학생 개인의 학교인터넷 계정을 의미하는 뜻 함.

181) PA announcement.

해당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과 젠더 표기가 잠재적으로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들 중 학교에 요구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며, 해당 사항의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까?

**시설 이용 관련**

해당 학생이 사용하게 될 화장실 \_\_\_\_\_

해당 학생이 사용하게 될 탈의실 \_\_\_\_\_

만약 해당 학생이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고민사항이 있을 경우, 누구에게 연락을 취해야하는가? \_\_\_\_\_

수학여행 시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무엇을 고려해야하는가? \_\_\_\_\_

숙박이 필요한 일정에서 객실 예약과 관련하여 무엇을 고려해야하는가? \_\_\_\_\_

시설에 대한 타 학생의 접근과 관련하여 우려 사항이나 질문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가? \_\_\_\_\_

**교과 외 활동들**

해당 학생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가? \_\_\_\_\_

위 프로그램에서 해당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_\_\_\_\_

해당 학생이 참여할 교과 외 프로그램이나 활동(스포츠, 연극, 동아리 등등)은 무엇인가? \_\_\_\_\_

위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해당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_\_\_\_\_

질문 및 참고할 사항 : \_\_\_\_\_

**다른 고려 사항**

다른 학생이나 가족, 또는 교직원들과 함께 논의되거나 설명되어야 할 어떤 특별한 사회적 관계가 있는가? \_\_\_\_\_

해당 학생은 학교에 형제가 있는가? \_\_\_\_\_ 해당 형제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가?

해당 학교에는 복장 규정이 있는가? \_\_\_\_\_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가? \_\_\_\_\_

올해 이루어질 수업과 단원, 내용과 기타 활동들(성장과 발전, 사회 정의의 단위, 이름 프로젝트, 댄스 교육, 프라이드 행

사, 학교 댄스 등)<sup>182)</sup>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가? \_\_\_\_\_

학교가 젠더퀴어 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어떤 훈련에 참여해 역량을 신장시켜야 하는가?

다른 질문이나 우려 사항, 또는 논의해야 할 이슈가 있는가? \_\_\_\_\_

**지원 계획 검토 및 개선방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 계획은 어떻게 모니터링될 예정인가? \_\_\_\_\_

학생과 가족, 또는 학교가 본 계획의 어떤 부분을 재논의하길 원하거나 새로운 요구를 추가하길 원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논의하기로 하였는가? \_\_\_\_\_

본 회의에서 나온 구체적인 후속 및 확인 조치는 무엇이며, 누가 이를 책임지기로 하였는가?

다음 회의의 날짜 및 시간 \_\_\_\_\_ 장소 \_\_\_\_\_

182) growth and development, social justice units, name projects, dance instruction, Pride events, school dances etc. 미국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활동들이라 생각됨. 직역하여 기재하였음.

- Confidential / 기밀사항 -  
Gender Transition Plan / 트랜지션 계획

이 문서는 해당 학생의 공식적인 트랜지션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지원한다. 그 목적은 성공적인 경험을 위해 가장 호의적인 조건을 조성하고, 학생과 학교, 가족 또는 다른 지원자들이 취할 구체적인 행동을 알아보는 것이다.

학교/지역 _____	오늘 날짜 _____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 _____	법적 이름 _____
학생의 젠더 _____	출생 시 지정된 성별 _____
학년 _____	학생의 학습 레벨 _____
생년월일 _____	형제자매/관계 _____ / _____ / _____
부모/보호자/간병인/학생과의 관계 _____	
_____ / _____	_____ / _____
_____ / _____	_____ / _____

학생은 무엇으로 트랜지션을 진행하는가(MTF, FTM, 성별표현의 변화 등등)

트랜지션에 대한 해당 학생의 요구는 얼마나 긴급한가? 해당 학생이 현재 성별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부모 및 보호자의 참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이 트랜지션을 인지하고 지지하고 있는가? \_\_\_\_\_에 \_\_\_\_\_아니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하는가? \_\_\_\_\_

**초기 계획을 위한 회의**

초기 계획을 위한 회의는 언제 개최하는가? \_\_\_\_\_ 어디에서 개최되는가? \_\_\_\_\_  
해당 학생의 트랜지션을 지원하기 위한 팀원으로는 누가 선정되었는가?  
 학생 \_\_\_\_\_  
 부모(들) \_\_\_\_\_  
 교직원 \_\_\_\_\_  
 기타 \_\_\_\_\_

**해당 학생의 세부 정보 변환에 대하여**

다른 학생(혹은 특정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특별한 정보가 있다면 무엇인가? \_\_\_\_\_  
 \_\_\_\_\_  
 특별한 요청이 있다면 무엇인가? \_\_\_\_\_  
 \_\_\_\_\_

위 정보는 언제, 누구와 공유되어야 하는가?

오직 학생이 트랜지션 중일 당시의 학급 친구들 날짜 : \_\_\_\_\_

- 해당 학생의 학년 또래들 날짜 : \_\_\_\_\_
- 해당 학생 학교의 일부 혹은 모든 이(지정) \_\_\_\_\_ 날짜 : \_\_\_\_\_
- 기타(지정) \_\_\_\_\_

해당 학생의 발표를 중심으로 한 수업 및 활동은 누가 지도할 것인가? \_\_\_\_\_  
 그러한 수업 및 활동은 무엇이 있는가? \_\_\_\_\_

트랜지션에 대한 강의나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해당 학생이 참석할 것인가? \_\_\_\_\_  
 만약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원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_\_\_\_\_

해당 학생에게 위 정보가 공유될 때 어떤 변수나 기대치를 설정할 것인가?<sup>183)</sup> \_\_\_\_\_

기타 참고사항, 고려사항 또는 질문 \_\_\_\_\_

**해당 학생의 트랜지션 이전에 결정할 주요사항들**

**다른 가정과의 소통**

해당 학생의 트랜지션에 대하여 다른 가정 구성원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정보가 공유될 것인가?  
 누구와 함께: \_\_\_\_\_ 해당 학생 학년의 가정들 \_\_\_\_\_ 학교 전체 \_\_\_\_\_ 기타(지정) \_\_\_\_\_  
 누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될 것인가? \_\_\_\_\_ 언제 해당 사실을 배포할 것인가? \_\_\_\_\_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배포할 것인가? \_\_\_\_\_  
 공유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무엇인가\*? \_\_\_\_\_

질문사항/참고사항: \_\_\_\_\_

\*샘플 문서를 참조하라

**교직원을 위한 교육**

해당 학생의 트랜지션에 대하여 교직원을 향한 구체적인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가? \_\_\_\_\_ 언제인가? \_\_\_\_\_  
 누가 해당 교육을 담당하기로 하였는가? \_\_\_\_\_ 해당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 될 것인가?  
 \_\_\_\_\_

질문사항/참고사항: \_\_\_\_\_

**젠더 다양성에 대한 학부모 정보의 밤**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가? \_\_\_\_\_ 언제인가? \_\_\_\_\_

183) 원문은 “Once the information is shared, what parameters/expectations will be set regarding approaching the student?”



누가 해당 교육을 담당하기로 하였는가? \_\_\_\_\_ 해당 학생의 트랜지션을 참고할 것인가? \_\_\_\_\_  
 해당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 될 것인가? \_\_\_\_\_

질문사항/참고사항: \_\_\_\_\_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급 모임**

트랜지션 중인 해당 학생의 학급 친구들의 가족들과 어떤 모임이 계획되어 있는가? \_\_\_\_\_ 언제인가? \_\_\_\_\_  
 누가 해당 모임을 주관하는가? \_\_\_\_\_ 해당 모임에는 누가 참석할 예정인가? \_\_\_\_\_  
 해당 모임의 목적은 무엇이 될 것인가? \_\_\_\_\_

**앨라이 학부모의 확인과 참여**

해당 학생의 트랜지션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하고 싶은 지역사회에 어떤 학부모/성인이 있는가? \_\_\_\_\_  
 만약 그렇다면, 누구인가? \_\_\_\_\_  
 언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계획인가? \_\_\_\_\_ 당신은 무엇을 요청할 것인가? \_\_\_\_\_

질문사항/참고사항: \_\_\_\_\_

**앨라이 학생들의 확인과 참여**

해당 학생의 트랜지션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하고 싶은 다른 학생들이 있는가? \_\_\_\_\_  
 만약 그렇다면, 누구인가? \_\_\_\_\_  
 언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계획인가? \_\_\_\_\_ 당신은 무엇을 요청할 것인가? \_\_\_\_\_

질문사항/참고사항: \_\_\_\_\_

**형제·자매**

해당 학생은 학교에 다른 형제가 있는가? \_\_\_\_\_ 그들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학급(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_\_\_\_\_ 정서적인지지? \_\_\_\_\_

질문사항/참고사항: \_\_\_\_\_

**타임라인**

다음 중 해당 학생의 트랜지션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며, 언제 시행되고, 누가 이를 책임지는가?

활동	날짜	담당자
<input type="checkbox"/> 초기 계획을 위한 회의	_____	_____
<input type="checkbox"/> 다른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 및 활동	_____	_____

- 다른 가정들과의 소통 \_\_\_\_\_
- 교직원을 위한 교육 \_\_\_\_\_
- 젠더 다양성에 대한 학부모 정보의 밤 \_\_\_\_\_
-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급 모임 \_\_\_\_\_
- 엘라이 학부모의 확인 및 참여 \_\_\_\_\_
- 엘라이 학생의 확인 및 참여 \_\_\_\_\_

본 회의에서 나온 구체적인 후속 조치 및 확인 사항은 무엇이며, 누가 이를 책임지기로 하였는가?

후속 조치 및 확인 사항	책임자	기한

## 부록 E

### 특수 교육을 위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사정(査定)<sup>184)</sup>

어떤 학생이 'IEP'<sup>185)</sup> 또는 '섹션504계획'<sup>186)</sup>에 적합한지 결정하는 것은 사정 과정을 포함한다. 사정이 정확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과정은 반드시 학생 개인의 성별정체성을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을 그들이 선택한 이름과 대명사로 지칭하는 것 이상으로, 사정관은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관련된 문헌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것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요구를 더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정관은 학생들의 성별정체성을 바꾸려 의도하기 위해서라거나, 또는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어떠한 지원도, 서비스도, 또한 숙박시설도 권유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학생이 특수 교육의 적격성을 확립받기 위하여 학교에 자신의 특수한 필요를 설명하는 충분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는 사정 과정을 생각하고 IEP 또는 섹션 504 계획의 수립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에는 학생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서신이나, 학생이 이미 받고 있는 교육 관련 서비스의 기록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이 상당한 수준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그 필요성이 시급한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정이 완료된 후, 학교는 학생의 부모와 교육자를 포함한 팀을 구성하여 해당 학생이 특수 교육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지, 만약 자격이 있다면 어떤 지원과 서비스, 그리고 어떤 숙소가 필요한 지를 결정할 것이다. IDEA<sup>187)</sup>에 따른 적격성은 법에 의해 정의된 특정 범주에 의하여 결정된다. 504 계획을 위한 적격 기준은 IDEA보다는 덜 엄격하고 합리적인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이른바 "경감 조치(완화조치)"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의 성별정체성이 확인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학생이 필요

184) 원문에서는 'Assessing'

185)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Individualized Educational Program.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함.

186) 초·중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 아동의 성공적인 학업을 보장하고, 학습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숙박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함.

187) 장애인 교육법.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장애 아동의 고등학교 졸업 혹은 21세까지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 주(州)와 공립학교에 두 가지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함. 그 중 첫 번째는 교육구가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공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학교 내에서의 장애 아동 부모의 발언권을 보호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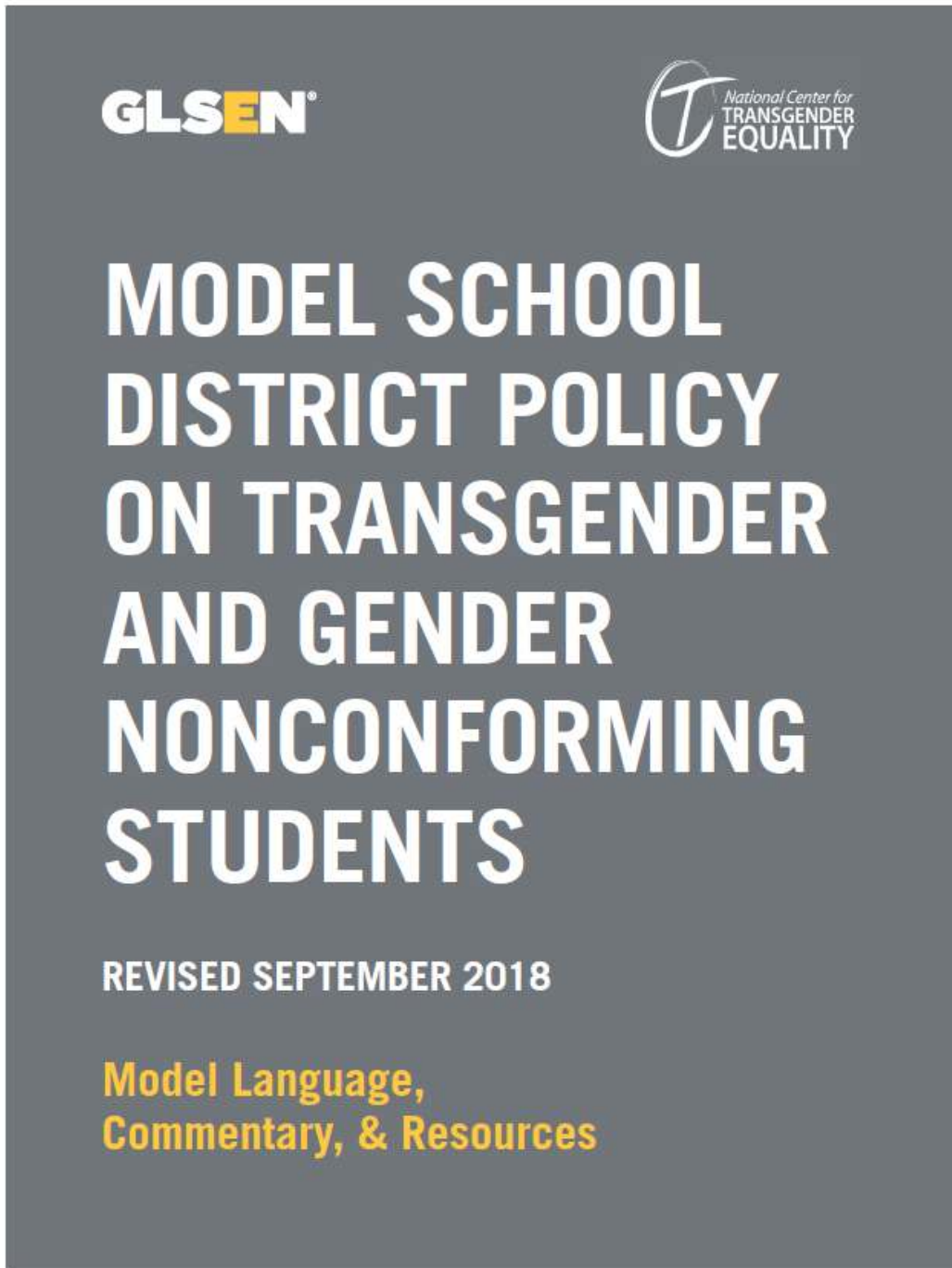
로 하는 모든 편의시설과 개선 사항들을 시행해 온 학교의 트랜스젠더 학생은 여전히 섹션 504 계획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변화가 없었다면 해당 학생은 불안이나 우울, 학교 공포증과 같은 쇠약해진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며 학습 능력이 저하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기의 팀이 작성한 IEP 또는 504계획은 본 출판물에서 언급된 개선사항과 편의시설이 포함된 트랜스젠더 학생의 고유한 필요성에 맞춰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선사항과 편의시설 즉,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있어 "최소한 어느정도는 보장이 된 환경"<sup>188)</sup> 이 포함된 IEP 또는 504계획은 학교가 학생들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보장한다. 성별정체성이 지정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심리적인 고통이 없다면 트랜스젠더 학생은 일반 교육에 참여하며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그들의 동료들만큼이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이미 IEP 또는 504계획의 지원을 받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도 적용된다. 해당 학생의 다른 교육적 요구와 관계없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별정체성을 존중하고 확인하는 것은 학교 내에서 학습하고 자신을 계발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학생의 성별정체성에 따른 개선사항과 편의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IEP나 504계획의 교육프로그램은 해당 학생에 대한 학교의 법적 의무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188) 원문은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참고자료 3] 미국 - 트랜스젠더와 성별비순응 학생에 대한 학교정책 모델



## 도입

본 문서는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순응 학생들에 대한 우리의 학교정책 모델 정책을 제시합니다. 이 정책은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순응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포용되며,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요약합니다. 이 모델은 몇 가지 정책 목표, 핵심 사항 및 고려해야 할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정책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각 학군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여기에 제공된 정책 용어는 학군 정책, 학군 규정 또는 둘의 조합에 가장 적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다양한 주들의 학군 정책들을 검토하고, 각 주들이 제공한 안내 지침(guidance) 및 미국 국내의 상황을 위한 모범 사례들을 도출함으로써 개발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각 학군 정책을 초안하기 위한 모델 언어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모델 정책 언어는 흰색 배경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주석 언어는 노란색 배경(모델이 흑백으로 인쇄된 경우에는 회색 배경)으로 표시됩니다.

본 문서는 각 학군의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순응 학생들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공하지만, 해당 언어는 주 법과 기존의 학군 정책을 준수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GLSEN과 NCTE의 정책 전문가가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GLSEN의 공공 정책 부서(202-347-7780) 또는 이메일(202-642-4542), 이메일(202-642-4542), 이메일(ncte@transequality.org)로 문의하십시오.

GLSEN은 모든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선도적인 국가 교육 단체입니다.

1990년에 설립된 GLSEN은 모든 어린이가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젠더 표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세상을 구상합니다. GLSEN은 차이가 보다 활기차고 다양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긍정적인 기여로 평가되는 학교 분위기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국립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 NCTE)는 트랜스젠더들에게 중요한 국가적 문제에 관한 교육과 지지 활동을 통하여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종식에 헌신하는 국립 사회 정의 단체입니다. NCTE는 트랜스젠더들과 NCTE의 조력자들이 정책 입안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줌으로써 워싱턴과 미국 전역에서 트랜스젠더 평등을 위한 강력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이 정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성별정체성이나 젠더 표현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열려있으며, 낙인과 차별이 없는 교육환경을 촉진합니다.
- (2) 괴롭힘, 학대, 프라이버시 및 차별에 관한 지역법, 주법 및 연방법의 준수를 돕습니다.
- (3) 모든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진실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 **용어에 대한 주의**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 청소년들은 그들의 삶과 성별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차별화 되는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와 언어는 지역, 언어, 인종 또는 민족, 나이, 문화 및 기타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예로는 트랜스 걸, 트랜스 보이, 논바이너리, 젠더 퀴어, 젠더 플루이드, 투 스피릿(Two Spirit) 등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종종 다른 것들을 의미하거나 젠더(성별)에 대한 다른 경험들을 나타냅니다. 교직원들과 교육자들은 이러한 학생들이 자신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용해야 하며,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용어들을 피해야 합니다.

## 용어들

이러한 용어들의 정의는 학생들에게 라벨을 붙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 정책(GLSEN의 정책)과 학교 및 학군 직원들의 법적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됩니다. 학생들은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경험을 묘사하기 위해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괴롭힘:** 공립 학교나 지역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만연한 전자 통신을 포함한 문자, 언어 또는 신체적 행위; 적대적이거나 학대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언어, 비언어 또는 신체적 공격이나 협박의 행위를 포함하여 학생의 교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학생의 실제 또는 인식된 인종, 피부색, 국가 기원, 성별, 장애, 성적 성향, 성적체성 또는 표현, 종교 또는 다른 구별되는 특징에 바탕을 둔 괴롭힘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또한 친구, 가족 구성원, 또는 학생이 연관된 다른 사람이나 그룹의 특성 때문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도 포함합니다. 왕따는 차별금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징과 관련될 때 괴롭힘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것은 학생의 실제 또는 인식된 인종, 피부색, 국가 기원, 성별, 장애, 성적 성향, 성정체성 또는 표현, 종교 또는 다른 구별되는 특징에 바탕을 둔 괴롭힘을 포함합니다. 또한 친구, 가족 구성원, 또는 학생이 연관된 다른 사람이나 그룹의 특성 때문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도 포함합니다. 괴롭힘은 차별금지법들(non-discrimination laws)에 의해 보호되는 특징과 관련될 때 학대(harassment/ 미국의 차별금지법의 내용 파악 필요)로 자주 언급됩니다.

**성별표현:** 한 사람이 행동, 옷, 헤어스타일, 활동, 목소리 또는 매너(행위 양식; mannerisms)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젠더를 나타내거나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성별정체성:** 한 사람이 자신의 성별(젠더)에 관해 내면 깊숙이 간직하는 지식으로서 여성, 남성 및 이 외의 성별이거나 성별이 없이 존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은 한 사람의 정체성 중에서 선천적이며 대개는 융통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성별정체성은 태어날 때 부여된 성별과 같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별정체성을 결정할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비록 개인이 성별정체성을 이해하고 표현하게 되는 나이는 각 개인의 사회적, 가족적 발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4세가 되면 그들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젠더 비순응(GENDER NONCONFORMING):** "여성스러운" 남자아이들, "남성적인" 소녀들, 또는 어떤 식으로든 안드로기너스로 인식되는 사람들과 같이 젠더 표현이 고정관념적인 기대와 다른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대부분의 젠더 비순응인(gender nonconforming people)들은 트랜스젠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짧은 머리를 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비 트랜스젠더(non-transgender) 소녀가 젠더 비순응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젠더 비순응"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성정체성이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논바이너리/젠더퀴어:** 이러한 용어들은 스스로를 남성 또는 여성과 같은 하나의 특정 성별이 아닌 젠더로 규정하거나, 성별이 없는 이들을 포함하여 전적으로 남성이거나 여성이 아닌 이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성별정체성의 결정



성별정체성은 개인 정체성의 핵심적 측면입니다. 모델 정책은 개인만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에 기초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현행 모범 사례와 주 및 연방법과 일치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성정체성을 존중하기 위해 의료적, 법적 또는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트랜지션(성별정정 또는 확정)의 일부로서 특정한 의학적 치료를 받는 것은 학생과 그 가족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겨야 하는 매우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그러한 요구는 지나치게 침해적일 뿐만 아니라, 트랜지션(성별정정 또는 확정) 관련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려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많은 장벽들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원 명령이나 정부 발행 신원 확인 서류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합니다. 더욱이, 일부 학생들은 치료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상이한 주 및 연방 정책들로 인하여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종종 정부가 발행한 신원 확인 서류 및 다른 기록들을 그들이 선택한 이름과 적절한 성별에 맞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일부 주에서는 성별 표기의 수정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주에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의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만 신원 확인 서류에 있는 성별 표기를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은 실제로 학생이 의학적 또는 법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와 관계 없이 정말로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간혹 학교 관리자가 학생이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전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한다고 의심하는 경우, 관리자는 학생의 필요와 목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적지향:**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등과 같은 성별 또는 이 외의 성별의 사람들에 대한 한 사람의 로맨틱하거나 육체적인 끌림을 뜻합니다.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인들은 어떠한 성적지향도 가질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태어났을 때 통상적으로 결부되는 성별과는 다른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묘사하는 형용사입니다. 트랜스젠더 소녀는 태어났을 때 남성으로 간주되었던 소녀입니다. 트랜스젠더 소년은 태어났을 때 여성으로 간주되었던 소년입니다. 몇몇 트랜스젠더들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일 수 있으며, 그들의 성별을 설명하기 위해 논바이너리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션(성별정정 또는 확정):** 태어날 때 간주되었던 성별이 아닌, 개인 스스로의 성정체성에 따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트랜지션은 사람마다 다른 과정이며 사회적, 법적 또는 물리적 변화를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정체성을 긍정하고 존중 받기 위해 개인이 거쳐야만 하는 하나 또는 일련의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범위

이 정책은 학교, 학교 소유지, 학교 후원 행사 및 활동, 스쿨 버스 또는 차량, 학생의 등하굣길 및 버스 정류장에서의 행위를 포함하며, 학교, 학교 소유지, 학교 후원 행사 및 활동에서 발생하는 전자 통신의 사용과도 관련됩니다.

또한 스쿨 버스 또는 차량, 버스 정류장, 학교 컴퓨터, 네트워크, 포럼, 메일링 리스트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활동에 참여하거나 특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전자 통신에도 해당됩니다. 이 정책은 교육자, 학교 및 학군 직원, 학생, 학부모 및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전체 학교 커뮤니티에 적용됩니다.

## 괴롭힘, 학대, 그리고 차별

성정체성이나 표현에 따른 차별, 괴롭힘 및 학대는 학군 내에서 금지됩니다.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환경을 갖도록 하는 것은 각 학교와 모든 직원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책임의 범위에는 모든 차별, 괴롭힘 또는 학대 관련 사건에 즉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함께 사건 조사,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한 조치, 학생과 교직원에게 적절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괴롭힘 방지 정책의 시행은 배제를 위한 규율보다는 교육과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학생의 실질적 또는 인식되는 성정체성이나 표현에 근거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내세우는 주장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여타의 다른 차별, 괴롭힘 및 학대를 주장하는 행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학교 관리자들은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 학생들을 그들 본래의 학교현장에서 지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학은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순응 학생 학대에 대한 학교의 최선 또는 우선적인 대응이 되어서는 안되며, 전학생의 보호 또는 개인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혹은 학생, 학부모,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우 드물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 또는 그 보호자는 이러한 전학에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 연방법적 보호

Title IX는 성별에 기반한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연방 교육법입니다. Title IX는 구체적으로 "트랜스젠더" 또는 "성정체성 또는 젠더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미국 전역의 법원은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인들에 대한 학대와 차별이 불법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2017년, 교육부는 Title IX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지침 문서를 철회했습니다. 이 과정은 학교의 법적 의무에 관해 어느 정도 혼란을 야기했지만 Title IX의 의미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지침서가 철회된 후에도 법원은 계속해서 반(反) 트랜스젠더 차별이 Title IX 하에 금지되어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많은 법원들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미국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에 따라 차별로부터 보호 받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보호들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프라이버시/비밀보호

학교는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순응 학생들과 관련된 모든 개인 식별 가능 및 의료 정보를 해당 주, 지역 및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교직원들은 법적으로 요구되거나 학생이 그러한 공개를 허가하지 않는 한, 학부모나 보호자 및 기타 교직원 등 다른 사람에게 학생의 트랜스젠더 상태(transgender status)를 드러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학교가 학생의 트랜스젠더 상태를 공개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가능하다면 학교는 학생들 스스로가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 학생들은 자신의 성정체성과 표현을 공개적으로 의논하거나 표현하고 언제, 누구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개인 정보를 공유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이 다른 이름을 사용하거나, 학교에서 트랜지션을 하거나,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에게 트랜스젠더 상태를 공개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교직원 등이 학생의 개인 신상 정보나 의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트랜스젠더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이름과 그들의 성정체성에 해당하는 대명사를 사용할지 또는 그들의 법적 이름을 사용할지 여부를 물어

봐야 합니다. (아래의 "학생 트랜지션"을 참조하십시오.)

#### 학교안전법

많은 주와 컬럼비아구(워싱턴 D.C.)는 성적체성과 표현에 기초하여 학생들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괴롭힘 방지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들은 또한 교육에 있어서 성적체성과 젠더 표현에 기반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들에서는 이 모델 정책의 많은 요소가 이러한 주법을 실행하는 정책 또는 규정에 명시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에 따라, 많은 주에서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순응 학생들과 관련된 학군 지침 문서를 개발했습니다. 리소스 섹션에 몇 가지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법이 성적체성과 표현을 명시적으로 다루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트랜스젠더 및 젠더비순응 학생들은 타이틀 IX 및 주 성차별 법에 따라 보호되며 장애 차별에 관한 주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도 있습니다.

학군은 모든 학생의 수용, 존중 및 안전과 모든 연방 및 주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명백한 비차별 및 괴롭힘 방지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따돌림, 괴롭힘 및 차별에 관한 정책 언어는 포괄적이지 않으며, 학군은 보다 포괄적인 권장 정책 언어를 위해 GLSEN의 모델 지구 따돌림 및 괴롭힘 방지 정책을 참조할 것을 권장합니다.

#### 학생 프라이버시

학생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가 있고, 이것은 학교에서 트랜스젠더의 지위를 비공개로 유지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학생의 트랜스젠더 상태, 법적 이름 또는 출생 시 부여된 성별에 대한 정보는 개인 신상 및 의료 기밀 정보로 구성됩니다. 이 정보를 다른 학생, 부모 또는 다른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 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연방 가족 교육권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과 같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를 공개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트랜스젠더 또는 젠더 비순응 학생들에게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동료에 의한 따돌림과 괴롭힘, 교직원들에 의한 차별 또는 가족 거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 및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학교 또는 학군은 성적체성 또는 젠더 표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언론 또는 지역사회

회와 의사소통할 때 이를 다루기 위한 전담 대변인 1명을 둡니다. 다른 학군들 및 교직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직접 논평을 하기보다는 학부모 및 언론을 지정된 대변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순응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대변인과 모든 직원의 최우선 사항이 되어야 하며, 모든 개인 신상 정보와 의료 정보는 지역, 주 및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이름, 대명사 및 학교생활기록부**

모든 학생은 학생의 성정체성에 해당하는 이름과 대명사에 의해 불려질 권리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나 젠더 비순응 학생이 법적으로 그들의 이름이나 성별을 바꾸었는지에 상관없이, 학교들은 그러한 학생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선택된 이름과 성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학교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트랜스젠더나 젠더 비순응 학생들에게 수업 중 및 학교와 부모/보호자 간의 의사소통에서 어떻게 호명되고 싶은지 물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부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 청소년들은 "그(he)" 또는 "그녀(she)"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요청하기도 하며, 다른 청소년들은 "그들(they)"이나 "ze"와 같은 성중립 대명사를 사용하거나 대명사 없이 그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가장 편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이전에 다른 이름으로 학교에서 알려졌었다면, 학교 행정 기관은 교직원들에게 학생이 선택한 이름과 적절한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관리자와 교직원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이 선택한 이름과 적절한 성별 표시로 학생 교육기록부(출석보고서, 대체수업명부, 학교신분증, 성적증명서, 전자기록부 등)를 즉시 업데이트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학교 관리자는 현재 출생 증명서와 같은 문서에 나타나는 학생의 이름이나 성별을 법적으로 기록하도록 특별히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 교직원 및 관리자는 실수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기밀 파일에 이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행한 문서와 일치하도록 법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모든 기록은 학생의 요청이 있을 시 갱신되어야 합니다.

#### **미디어 요청을 다루기**

학교와 학군은 트랜스젠더 학생 또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

의는 지역 미디어가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순응 학생에 대한 정책 전환 또는 채택에 관한 정보를 접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 개개인에 대한 부당하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관심을 피하기 위해 학교와 학군 직원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LSEN과 NCTE와 같은 단체들은 이러한 유형의 언론의 조사를 접하는 활동가들과 교직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또는 학군이 새로운 정책의 채택이나 트랜스젠더 학생의 존재와 관련된 언론 문의에 응답하기로 선택한 경우, 지정된 대변인이 해당 문제에 대해 언론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대화 포인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와 학군은 학생 개개인의 신상정보나 신상정보를 공개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나 학군은 공청회나 언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특정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학교와 학군은 피해를 주는 발언을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계획이 있다면 학생 및 지지적인 가정이 이를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디어 요청에 대한 대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 K-12 학교의 트랜스젠더 학생 지원을 위한 가이드 (Schools in Transition: A Guide to Supporting Transgender Students in K-12 School)s를 참조하십시오.

## 성별분리 활동 및 시설에의 접근성

모든 화장실, 락커룸, 탈의실에 관한 한, 학생의 성정체성에 부합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성정체성과 일치하는 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가 허용한다면 남학생과 여학생을 위한 별도의 화장실, 탈의실 또는 탈의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논바이너리 학생들을 포함한 학생들은 어떤 시설이 그들의 성정체성과 부합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성별분리적 공공 시설을 사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학생의 요청에 따라 안전하고 낙인에서 자유로운 대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전용 칸막이 또는 커튼을 추가하거나, 근처의 개인 화장실 또는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유동적인 일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대안들은 해당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학생에 한하여 제공되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나 젠더 비순응 학생들에게 그들의 희망에 반하여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들을 낙인 찍고 그들의 트랜스젠더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는 위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이 그들의 성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성별분리 시설을 사용하도록 요구되어서

는 안 됩니다.

학교는 한 번에 한 명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기존 시설을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또는 젠더 비순응 학생들이라고 하여 1인용 시설을 사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신축 또는 개조 작업에 1인용 시설과 더 큰 범위의 프라이버시를 통합하고, 기존 시설에서 모든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하도록 권장됩니다.

### **체육수업, 학내 및 학교 대항 스포츠**

모든 학생은 성정체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체육 수업과 교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학생들은 학교 대항 주립 협회가 제정한 지침에 따라 그들의 성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학교 대항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델 정책은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성정체성에 따라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모든 학교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모델 정책은 또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공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여기에는 트랜스젠더 학생, 장애 또는 신체적 차이가 있는 학생, 트랜스젠더 학생 또는 이 외의 학생들과 함께 시설 사용을 꺼리는 학생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델 정책은 요청이 있을 시 안전하며 낙인이 없는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성별 기반 활동, 규칙, 정책 및 관행**

일반적으로 학교는 교실 활동, 학교의 각종 기념 행사 및 학교 사진을 포함한 모든 성별 기반 활동, 규칙, 정책 및 관행을 평가하고 중요한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만 유지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부합하는 규칙, 정책 또는 관행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 코드**

학교는 학군 정책에 따라 복장 규정을 시행할 수 있지만 성별 또는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복장 규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채택한 복장규정의 제약



안에서 성중립적인 외모를 유지하는 등 자신의 성적체성과 젠더 표현에 따른 복장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 교직원들은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순응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보다 더 엄격하게 학교의 복장 규정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 학생 트랜지션

학교는 학생 개개인이 주장하는 성적체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의학적 또는 정신적 건강 진단이나 치료의 수준(treatment threshold)은 없습니다. 그 주장은 그들의 성적체성과 부합하는 성별로 일관되게 인정받기 위해 표현되는 욕구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트랜지션을 위한 준비가 된 학생들은 그들의 이름, 대명사, 복장을 바꾸고 그들의 성적체성에 부합하는 젠더 관련 프로그램, 활동 및 시설에 접근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학생들은 트랜지션을 위한 독특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 개개인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 **대안적 드레스 코드(복장 규정)**

점점 더 많은 학교들이 성별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는 복장 규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복장 선택권을 가질 수 있으며, 복장 규정을 준수한다면 특정 성별과 연관된 옷을 입는 것에 대해 징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복장 규정은 "여자아이들은 무릎 위로 2인치 이상 올라가는 치마를 입지 않아도 된다" 대신 "스커트나 반바지는 무릎 위로 2인치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수정헌법 제1조와 성별, 성적정체성,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따른 책임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우리는 학교가 성 중립적인 복장 규정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지만, 성별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정책은 학생들이 그들의 성적체성과 젠더 표현에 부합하는 복장 규정을 준수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더 나아가 학생 트랜지션

학교에서의 트랜지션에 관한 학생의 필요(need)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의 관심을 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어린 학생들을 위해 부모나 보호자는 학교나 학교 관리자



들에게 자녀의 트랜지션에 관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자는 학부모와 학생을 만나 학생의 트랜지션을 지원하는 학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트랜지션 시기, 교직원 및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계획, 학생부에 있는 학생 정보 수정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만남은 가족이나 학생이 특별히 참석을 요청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 한 별도의 학교 관계자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도 학교에서 트랜지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자와 교육자들은 학생들을 위해 안전하고 자기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관리자와 교육자들은 많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상당한 수준의 가족 거부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부모 동반 없이 트랜지션을 상담하는 상황에서는 부모, 보호자,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참여시키기 전에 학생과 대화하여 이러한 트랜지션이 안전한지 여부 및 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지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학생이 가족이 지지적일 것이라고 믿는다면, 관리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 학생의 트랜지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가족과의 만남을 주선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만남의 계획에는 학생이 만남 중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기 위해 학생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학생이 트랜스젠더 상태를 스스로 공개하기를 원하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학생이 만남에 참석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나리오든, 관리자는 이 문제가 학교에서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및 학생의 장단기 복지에 있어 가족 수용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록 학생의 가족이 지지적이지 않더라도, 학교는 반드시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자기긍정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자는 적절한 화장실 접근권의 제공이나 학생이 선택한 이름의 사용 등 학교가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학생과 만나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또한 가정에서의 학생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학군이 할 수 있는 일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는 가족들이 아이의 욕구(needs)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자원과 가족이 무심코 아이의 트랜스젠더 상태를 알게 될 가능성에 대한 비상 계획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는 가족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의 성정체성이나 젠더 표현을 존중해야 합니다.

## 부모, 가족과의 협력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 학생들의 부모와 보호자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학교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더 이른 나이에 커밍아웃하고 트랜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건강한 의사소통을 확립하고 종종 취약한 학생들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항상 지지적인 부모들 및 보호자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일부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순응 학생들은 학대또는 가정에서 쫓겨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족의 거절에 직면합니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와 함께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델 정책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부모와의 협력적 참여를 장려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직원들은 학생이 학교와 가정 모두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와 공유할 정보의 결정,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를 지원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자원(resources) 확인, 학생의 형제자매와 직원 및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한 전략 결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 학생들에게 수용의 장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그들의 성별을 완전히 표현하는 데 편안함을 느끼는 유일하게 안전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보호자의 승인은 학생이 선택한 이름과 대명사를 포함한 학생의 성정체성을 존중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학교는 상담 및 학교 GSA를 통한 동료 지원, 그리고 외부 자원으로서의 소개와 같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이 가족의 거절에 대처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학교 교직원은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 학생들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의 이해와 수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순응에 대한 가족 수용의 중요성과 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섹션의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 K-12 학교의 트랜스젠더 학생 지원 가이드(Schools in Transition: A Guide to Supporting Transgender Students in K-12 Schools)" 및 "실무자의 자원 가이드: LGBT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 지원(A Practitioner's Resource Guide: Helping Families to Support Their LGBT Children)" 을 참조하십시오.

## **교육 및 전문성 개발**

학군은 교원, 관리자, 상담사, 사회복지사, 보건 관계자 등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라 이들의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정책과 관련된 정보는 신규 교직원들을 위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군은 자금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의 괴롭힘, 학대, 차별을 예방, 확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성 개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되 이들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i)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체성, 젠더 표현 및 젠더 다양성에 관한 용어, 개념 및 현재의 발달 이해
- (ii) 성 정체성 및 젠더 표현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학생들 및 학부모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발전적으로 적절하며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전략
- (iii)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한 괴롭힘 사건들을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해 개발적으로 적절한 전략
- (iv) 교육자들이 그들의 교실에 적용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보다 젠더 포용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교실 관리 실천 방법, 커리큘럼 및 리소스
- (v) 괴롭힘, 학대, 차별, 자살예방 및 교직원의 책임에 관한 학교 및 학군 정책들

## **출판**

이 정책은 매년 학생, 부모, 보호자 및 교직원에게 배포될 것이며, 학생 행동 강령, 규율 정책, 학생 핸드북 및 학교 웹 사이트에도 포함될 것입니다.

##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 학생들에 대한 차별**

차별은 종종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 학생들에게 학교환경에 온전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하며 이들의 학습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차별은 계속되는 괴롭힘과 학대를 무시하거나 대응에 실패하는 형태, 학생에게 엄격하거나 불합리한 학교 복장 규정을 강요하는 것, 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 학생들이 적절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 교원 및 교직원들이 학생들에게 학대 및 차별적인 규율을 강제하는 것(잘못된 이름과 대명사의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사용 포함), 더 나아가 트랜스젠더라는 것과 관련된 이유로 학

생을 정학시키거나 퇴학시키는 것과 같은 형태를 띠 수 있습니다. 이 모델과 같은 정책들을 채택함으로써, 학군들은 모든 학생들을 위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형태의 차별을 피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은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 학생들이 직면하는 괴롭힘, 학대, 그리고 차별이 종종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GLSEN의 전국 학교환경 조사(National School Climate Survey/리소스 섹션 참조)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상당수(76%)가 그들의 성별(gender) 때문에 학교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65%는 언어적 학대를 경험했고, 25%는 물리적 공격을 당했으며, 12%는 젠더 표현 때문에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래 학생들에 의한 피해에 더하여,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높은 비율로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차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 학교환경 조사(National School Climate Survey)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절반 이상(51%)이 학교에서 자신이 선택한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60%가 정부 발급 신분증상의 성별에 해당하는 화장실이나 라커룸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트랜스젠더 학생의 28%가 정부 발급 신분증상의 성별에 근거하여 부적절하게 간주되는 옷을 입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비슷하게, 미국 내 약 28,0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2015년 트랜스젠더 조사에 따르면 K-12학년에서 트랜스젠더라고 밝히거나 트랜스젠더로 인식된 이들 중 77%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부적절한 대우(mistreatment)를 받았고 그 중 17%는 심각한 수준의 학대로 인해 탈학교 하였으며 6%는 퇴학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적대적인 학교 여건은 교육과 취업에서부터 장기적인 성취와 복지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삶의 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트랜스젠더 서베이(Transgender Survey)는 학교에서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노숙을 경험하고, 자살을 시도하거나 다른 부정적인 경험들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는 또한 부정적인 학교 여건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학교를 결석하고, 낮은 점수를 받고, 대학 진학을 계획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이러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같은 교육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정책은 트랜스젠더 학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기대가 모두에게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지원하는 공식 정책이 있는 학교나 학군의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성정체성에 따라 옷을 입는 것을 금지당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동

등한 기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들의 성별에 일치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젠더 관련 차별을 덜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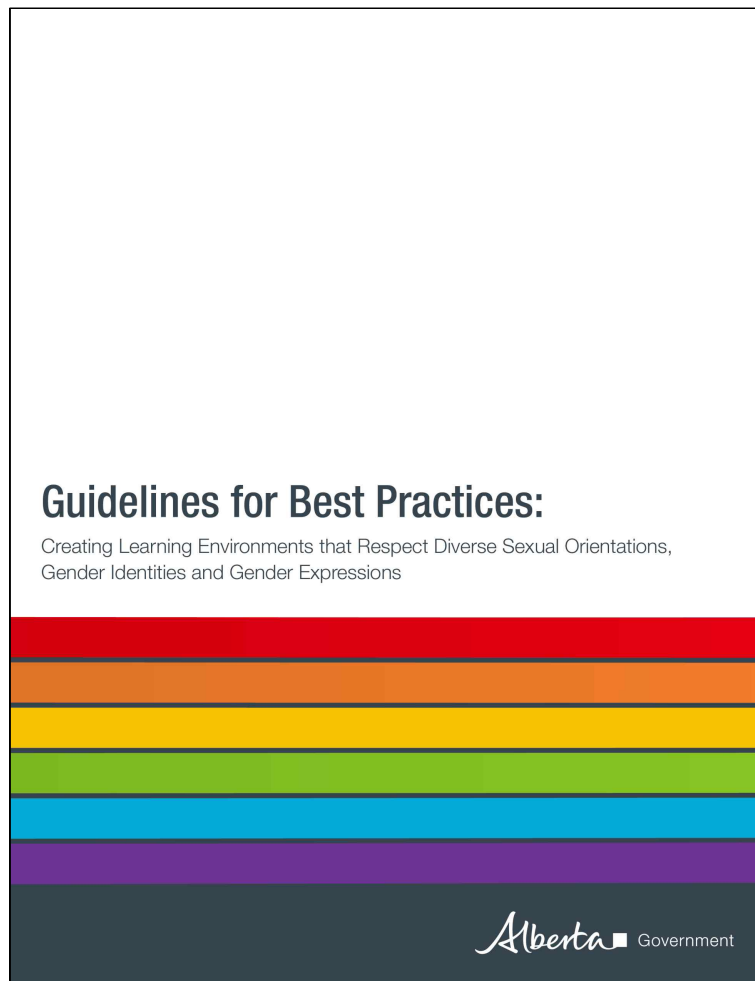
[참고자료 4] 캐나다 앨버타주 - 학교현장 실천 가이드라인: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존중하는 학습환경을 만들기 위해

### 학교현장 실천 가이드라인: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존중하는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 자료 설명: 캐나다 앨버타 (Alberta) 주는 *School Act, Alberta Human Rights Act, 2015-2016 Guide to Education: ECS to Grade 12* 등에 근거하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본 자료는 앨버타의 LGBTQ 포용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12가지 모범 실천을 요약, 번역하였다. 각 실천의 구체적 예시는 알버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education.alberta.ca/media/1626737/91383-attachment-1-guidelines-final.pdf>)



## 도입

앨버타 주는 세계적으로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를 위한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두를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공정하고 포괄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가진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학교 안팎의 삶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내는데 필요한 교육적 기회와 지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으로 포용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가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안전, 소속 및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증거 기반 전략을 확인하고 이행해야 한다.

## 실천 지침

1.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라.
2.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별을 정체화할 수 있도록 존중하라.  
예) 자신이 선택한 이름과 호칭으로 불릴 수 있도록 존중하고, 학생의 신원 확인 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라.
3. 학생의 사생활과 기밀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학교 기록을 유지하라.  
예) 학생의 법적 출생 이름을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학교 직원은 학생의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고, 학생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부적절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교복 규정이 학생의 성별정체성과 성별표현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라.  
예) 성별에 따라 분리된 교복 규정을 강요하지 않도록 해라.

**5. 성별분리된 활동을 최소화해라.**

예) 학습이나 스포츠 활동, 장기 대회에서 “남자”와 “여자” 팀으로 나누어 경쟁하지 않도록 해라.

**6.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 안팎의 교육 커리큘럼 활동에 온전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예) 성교육 시간에 학생들을 성별에 따라 나누지 않는 것이 좋다.

**7. 화장실과 탈의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예) 학생들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예) 학교는 접근이 쉬운 성중립 화장실, 1인 화장실을 제공해라.

예) 가능하다면, 학교 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성중립 화장실을 하나 이상 배치하는 것이 좋다.

예) 탈의실 또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사적 공간을 만들어라.

예) 트랜스젠더 및 젠더퀴어 학생과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공유하기를 거부하는 학생에게는 대안적인 시설을 제공해라.

**8. 성소수자 학생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직원의 능력을 강화하는 전문성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라.****9. 괴롭힘이나 폭력을 방지하고 또 건강한 관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통합적인 학교 전체 참여형 접근법을 사용해라.**

예) 학생 행동강령은 학교 직원, 학생, 가족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개발해야 한다.

예) 차별이나 폭력에 대한 항의는 모두 진지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10.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속감과 자아존중감을 기를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학생들이 일조할 수 있도록 교육해라.**



11. 학생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학교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환영 받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라.

예) ‘어머님’, ‘아버님’보다 ‘보호자’, ‘가족 구성원’ 등 성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라(원문: Parents/guardians, caregivers, families, partners, “student” or “their” instead of Mr., Ms., Mrs., mother, father, him, her, etc.).

12. 학교 직원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으로 인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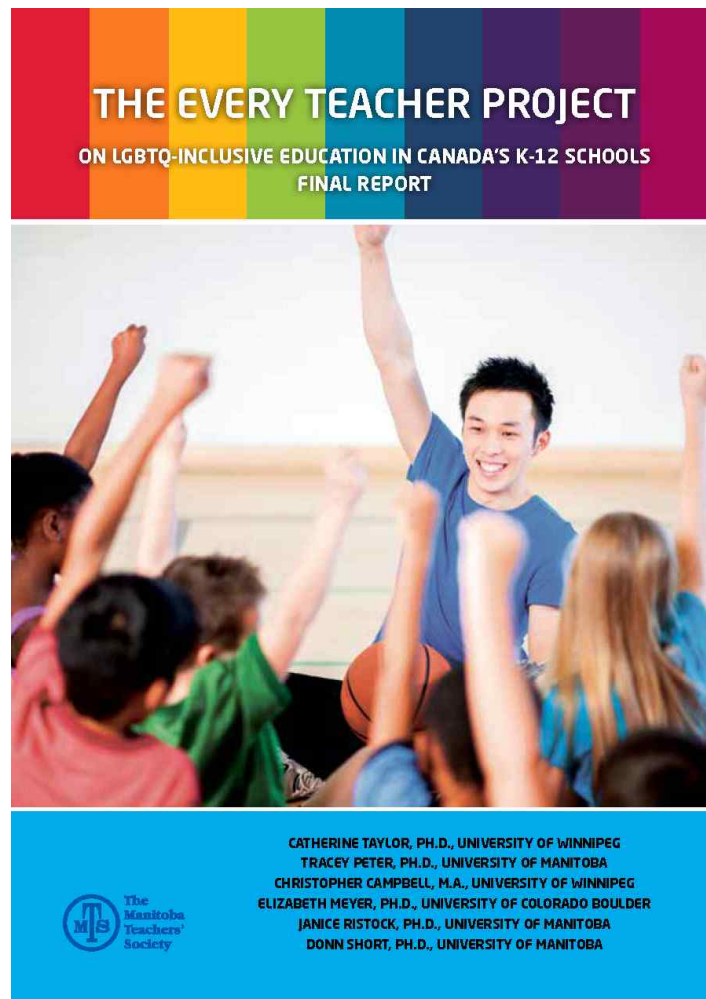
[참고자료 5] 캐나다 - LGBTQ 포용적 교육을 위한 모든 선생님 프로젝트 보고서

### 캐나다의 LGBTQ 포용적 교육을 위한 ‘모든 선생님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 자료 설명: 본 자료는 수 천명의 유치원~고등학교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The Every Teacher Project (이하 ETP) 온라인 설문조사 (2012년~2013년) 결과를 담은 보고서다. ETP 온라인 설문조사는 LGBTQ 포용적인 교육 커리큘럼, 정책 등에 대한 교육자들의 관점과 경험을 측정했다.

※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발췌, 번역하였다. 원문은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mbteach.org/mtscms/2016/01/16/final-national-report-on-lgbtq-education-released/>)



## 도입

이 보고서는 [GSD-포괄적 교육이라고도 알려진] 젠더(gender) 및 성적 다양성(sexual diversity)과 관련된 주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정책, 그리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두 개의 영혼(Two Spirit), 그리고 퀴어에 관한 긍정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LGBTQ-포용적인(LGBTQ-inclusive)” 교육인 ‘모든 선생님 프로젝트(Every Teacher Project)’에 관한 캐나다 K-12(189) 교육자들의 인식과 경험에 대하여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교육은 전형적으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두 개의 영혼과 퀴어 학생들, 또 부모나 친구, 또는 각자가 친애하는 이들이 LGBTQ인 여러 학생들, 또는 직간접적으로 호모포비아, 바이포비아, 트랜스포비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스젠더 이성애자(CH; Cisgender Heterosexual) 학생들에게 적대적인 학교환경에 의해 소외되는 학생들을 포용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3년 6월말에 학기가 종료되는 학교의 교육자 수천 명을 조사했다. 우리는 ‘모든 선생님 프로젝트’의 그룹 조사 결과에 대해 2016년에 보고할 것이다.

## 연구 배경

모든 선생님 프로젝트는 분산된 전문성들과 참여자들의 통찰을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지식 동원(190)’으로 인식되었다. 그러한 것으로서, 모든 선생님 프로젝트는 LGBTQ 포용을 위해 전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교육자들의 다양한 맥락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들 중 몇몇은 도움을 주는 동료와 학교 행정가들(school officials)과 일을 하고 있지만, 몇몇은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환경 속에서 홀로 일하고 있다. 또 몇몇은 개인 스스로의 믿음 체계를 위반하거나 자신의 고용 상태를 위협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LGBTQ 포용적으로 일할 수 없음을 느끼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189) K-12는 “Kindergarten to grade-12”로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고등학교 3학년과 유사)까지의 학생들을 모두 일컫는다.

190) 원문은 ‘mobilization’

## 용어 정의

### 교육 용어

저학년 / 중학년 / 고학년

유치원 전에서부터 4학년까지 / 5학년에서 8학년까지 /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교육자

이 리포트에서 사용된 것처럼 “교육자”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지도 상담사 (Guidance Counsellors), 행정 교직원, 교육 보조자(education assistants) 등을 가리킨다.

게이-이성애 동맹

대개 LGBTQ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이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가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학교 내 동아리나 지지 그룹

학생 지도 상담사

학생 지도 상담사, 학교 사회 복지 요원, 그리고 학교 심리학자 등을 포함한다.

동성애혐오적 괴롭힘에 관한 정책

교직원에게 성적지향에 기반한 희롱이나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정책

포용적 교육

이 용어는 수십년 간 캐나다의 교사 교육의 ‘대들보’였기 때문에 교육자들에게 익숙한 용어일 것이다. 넓게 정의하자면, 포용적 교육은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함과 존중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아이들이 제공받는 교육 서비스가 그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설계된 교육학적인, 교육과정에서의, 계획적인 실천들이다. 포용적 언어의 사용은 학교정책과 법률 제정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좁게 정의되어 괴롭힘에서 보호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존중감을 느끼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널리 퍼진 인식이 존재한다. 예컨대 매니토바 주에서 2013년에 개정된 공립학교법(The Public Schools Act)은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들”로 명명되었고, 괴롭힘을 포용적이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학교환경의 문제로 위치시킨다.

### LGBTQ-포용적인 교육

우리는 LGBTQ-포용적인 교육을 젠더와 성적 다양성(GSD)의 문제와 관련되어 GSD-포용적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두 개의 영혼, 퀴어, 그리고 퀘스처너리에 관하여 긍정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포함한 교육과정, 정책, 실천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다.

### 트랜스혐오적 괴롭힘에 관한 정책

교직원에게 트랜스젠더나 젠더 정체성 또는 젠더 표현에 기반한 희롱이나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정책

### 정체성 용어

#### CH

시스젠더 이성애자

#### 시스젠더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대한 관습적인 사회적 기대와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 (예: 시스젠더 남성은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하고 출생 시 남성(male) 성별로 지정된 사람) (이 리포트에서, “male”과 “female”은 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 “man,” “woman” and “transgender”는 젠더 정체성을 의미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된다)

#### FNMI

캐나다의 토착민들: 퍼스트 네이션, 메티스<sup>191)</sup>와 이누이트. 몇몇 문헌과 연방정

부에 의해 “원주민”이라 불리는 이들. 이 보고서는 FNMI, 다른 인종화된 그룹, 그리고 백인으로 분류하여 인종적 차이를 분석한다.

### 젠더

젠더는 자주 지정성별에 근거해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해 사회적 맥락에서 실행되는 체계이다. 여러 맥락에서 젠더는 “남성(man)” 또는 “여성(woman)”이라는 이분법적 분류의 형태를 취한다. 다른 맥락에서는 더욱 넓은 스펙트럼을 포함한다. (이 리포트에서, “male”과 “female”은 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 “man,” “woman” and “transgender”는 젠더 정체성을 의미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된다.)

### 젠더 표현

한 사람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젠더를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 젠더는 의상, 말투, 신체적 언어, 헤어스타일, 목소리, 신체적 특징이나 행동에 대한 강조 또는 강조하지 않음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자주 ‘남성성(masculinity)’과 ‘여성성(femininity)’과 연관된다. 젠더가 표현되는 방식은 문화적으로 구체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는 종종 젠더 제시(gender presentation) 또는 젠더 수행(gender performance)를 의미한다.

### 젠더 정체성

한 사람이 내적으로, 개인적으로 깊이 느끼는 젠더의 경험. 이것은 ‘남성(man)’, ‘여성(woman)’, ‘안드로진(androgynous)’, 어떤 젠더도 아니거나 몇몇 다른 젠더가 되는 내적인 감각을 포함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젠더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연관된 사회적 기대에 부합할 수도,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확인된 젠더(affirmed gender)”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정체화하는 젠더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이 리포트에서, “male”과 “female”은 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 “man,” “woman” and “transgender”는 젠더 정체성을 의미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된다.)

191) 메티스: [캐나다에서는] 프랑스계 백인과 인디언의 혼혈아를 의미함.

## 이성애자

전통적으로 이성애성(heterosexuality)은 섹스와 젠더의 이분법이 정확하다고 가정했고 개인의 “반대되는(opposite)” 성별에 관한 배타적인 끌림을 가리켰다. 다시 말해, 이성애적 성적지향이란 시스젠더 남성의 시스젠더 여성에의 끌림, 또는 그 반대를 가리켰다. 몇몇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그리고 간성인 사람들도 이성애자라 정체화할 수 있다. (또한, 이걸 흔히 “스트레이트(straight)”라고 불린다.)

## 동성애자

이성애자와 달리, 동성애자라는 용어는 모든 선생님 프로젝트 5 - 의료적, 법적, 그리고 종교적 담론에서처럼 병리화하고<sup>192)</sup> 억압적인 의미와 강력히 연관되어 있고, LGBTQ 커뮤니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 리포트에서는 머리글자말(두문자어)인 ‘LGB’를 사용한다.

## 토착민

캐나다에서 퍼스트 네이션, 메티스, 또는 이누이트라 정체화하는 사람들. 이 용어는 공식 연방정부 용어인 “원주민(Aboriginal)”보다 FNMI들이 더 많이 선호한다.

## LGBTQ

레즈비언(L), 게이(G), 바이섹슈얼(B), 트랜스젠더(T), 두 개의 영혼, 퀴어(Q)와 의문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단어이다. 이러한 용어들과 머리글자말인 “LGBTQ”는 연구에서 시스젠더 이성애성의 지배적인 문화적 규범과 다른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은 젠더와 섹슈얼리티와 연관된 넓은 범위의 정체성을 포함하기 위한 의도이다. 우리는 이 용어들을 분석에서의 편의를 위해 상용하지만, 개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감각을 묘사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self-select)할 수 있는 다양한 많은 용어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개인의 성별 또는 젠더 정체성이 이러한 분류보다 훨씬 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스펙트럼에 걸쳐 존재하는 섹스 그리고/또는 젠더에 대한 끌림의 잠재성을 인식하거나 섹스/젠더 이분법에

192) pathologize: regard or treat (someone or something) as psychologically abnormal or unhealthy.

도전하기 위해 “바이섹슈얼”이라기보다는 “판섹슈얼(pansexual)”이라 정체화할 수 있다. 또 누군가는 “트랜스젠더”라는 단어가 섹스/젠더 이분법 파라미터에 의해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생각해 “젠더프리”라거나 “에이젠더(agender)”라 정체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직접 입력하는(write-in) 정보(option)에 “다른”이나 “답하지 않음”을 거의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참여자들이 광범위하게(broad-stroke) 제시된 카테고리에서 스스로를 바라보았음을 시사한다.

### 인종화된 그룹

“인종”이란 피부색, 억양, 방언, 이름, 의복, 식이, 믿음과 관행, 여가 선호, 출신 기원 등과 같은 물리적이고 문화적인 특성들에 근거하여 만들어낸 하위 분류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인종화(racialization)란 “사회가 인종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삶에 중요한 방식으로 실제적이고, 다른 것이며, 동등하지 않은 것으로 구성하는 과정” (온타리오 인권 위원회, 2005, 11면)이다. 인종이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인지하며, 이 연구는 사람들을, 더 오래되고 부정확한 “소수 인종,” “가시적 소수자”<sup>193)</sup> 또는 “비-백인”이라는 용어 대신 “인종화된 사람들” 또는 “인종화된 그룹”으로 묘사한다. FNMI 참여자들의 데이터는 따로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인원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았다.

### 성별/지정성별

사람을 염색체, 호르몬, 외부 성기와 생식 기관과 같은 생물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남성(male), 여성(female) 또는 간성(intersex)으로 분류하는 것. 자주 성별은 출생 시 의학 전문가에 의해 지정되며 외부 성기에 대한 시각적 평가를 근거로 이뤄진다.

### 섹스/젠더 이분법

남성(male)/여성(female)의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하고 남성(man)/여성(woman)의 두 가지 젠더만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두 가지가 반대되고 구분되며 단일한 분류로, 남성(male)/남성성(man)과 여성(female)/여성성(woman)이 자연

193) A visible minority is defin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as “persons, other than aboriginal peoples, who are non-Caucasian in race or non-white in colour.” (Wikipedia)



적으로 일치한다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젠더는 성별(sex)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 성적지향

성적지향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적인, 지적인, 영적인, 친밀한, 낭만적인, 또는 성적인 잠재적 관심(흥미, interest)을 자주 성별 그리고/또는 젠더에 의거해 분류한다. 또한 ‘끌림’이라고 알려진 성적지향은 개인의 정체성 (예: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헤테로섹슈얼(이성애자) 등) 그리고/또는 행동의 측면들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They(주어로서) / Them(목적어로서) / Their(소유격으로서)

이 리포트는 한 사람의 젠더 포용적인 대명사로서 “그들,” “그들을” 그리고 “그들의”라는 복수 형태의 대명사를 사용하는 점차 증가하는 관행을 따른다. (예: “교사는 그들의학급을가르쳤다.”) 이는 특히 언어적으로 구성되는 젠더이분법에 관한 논의의 확장을 추구하는 언어의 진화를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 트랜스젠더 또는 트랜스

출생 당시 지정된 성별과 관습적으로 관련된 젠더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정체화하지 않는 사람. 트랜스젠더 (또는 트랜스)는 종종 넓은 범위의 젠더 정체성과 표현을 나타내는 포괄적 용어(umbrella term)이다. (예: 출생 당시 남성(male)으로 지정되고 여성성을 표현하며 여성(woman)으로 정체화하는 사람, 젠더퀴어 또는 젠더 플루이드로 정체화하는 사람)

### 트랜스섹슈얼

출생 당시 지정된 성별과 관습적으로 관련된 젠더로 정체화하지 않는 사람. 이 용어는 흔히 젠더 이분법의 한 면에서 다른 쪽으로의 움직임<sup>194</sup>과 대부분 관련되어 있다. 많은 트랜스섹슈얼들은 물리적으로 그들의 몸을 바꾸기 위해 의학적 트랜지션에의 접근의 필요성을 느낀다. (예: 호르몬 치료 그리고/또는 성전환 수술<sup>195</sup>) 몇몇 이들에게는 다양한 젠더(gender-diverse)의 사람들의 병리화와 관

194) “movement from one side of the gender binary to the other”

195) gender-affirming surgeries

련되어, 그리고 사람의 젠더 정체성은 의학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는 함축과 관련되어 낙인을 찍는 단어로 느껴지기도 한다.

## 두 개의 영혼

다양한 토착민 언어들에서 젠더, 섹슈얼리티, 커뮤니티(공동체), 문화, 그리고 영성(spirituality)을 포함하여 정체성의 여러 측면의 상호관련성(interrelatedness)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많은 단어들을 반영한 포괄적 용어. 유럽 식민자들에게 의한 섹스/젠더 이분법의 강요(imposition) 이전, 많은 토착 문화들은 두 개의 영혼의 사람들을 공동체의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인식했고 그들을 그들이 남성적이고(masculine) and 여성적인(feminine) 관점을 이해하고 둘 사이를 옮겨 다닐 수 있는 독특한 능력에 기반해 선지자(visionaries), 힐러(healers) 그리고 의학적인 사람들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수여했다. 몇몇 토착민들은 LGBTQ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것 대신에, 또는 정체화하는 것에 더해 두 개의 영혼으로 스스로를 정체화하기도 한다.

## 특권과 소외의 시스템에 관한 용어들

### 바이포비아

주로 혐담, 괴롭힘, 배제, 편견, 차별, 폭력행위 등으로 나타나는 바이섹슈얼에 대한 증오 그리고/또는 두려움. 양성애자인 또는 양성애자라 간주되는 누구나, 그리고 다양한 성(sex) 그리고/또는 젠더(gender)들에 끌림을 경험하는 누구나 바이포비아의 타겟이 될 수 있다. 바이섹슈얼들이 경험하는 적대감은 보호 요소로 간주되는 이성애적 끌림과 함께 동성애적 끌림에만 종종 한정되는 것으로 격하되었다.<sup>196)</sup> 하지만 이전 연구들은 (비록 몇몇 방식에서 다르긴 하지만) 게이와 레즈비언들을 겨냥한 적대감에 종속되는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주: 우리는 바이섹슈얼 참여자들의 경험을 향후 보고서에서 분석할 것이다.)

### 시스젠더 규범성 / 젠더 규범성

시스젠더 정체성과 젠더 규범을 특권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시스젠더이며 관습적

196) 정확한 번역이 힘든데, 양성애자들은 이성애에 끌림을 느끼는 건 괜찮고 동성애에 끌림을 느낄 때만 적대감을 경험한다는 뉘앙스인 듯.

인 규범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젠더를 표현할 것이라고 가정함으로써 트랜스 정체성 그리고/또는 젠더 다양성을 무시하거나 과소표시(underrepresent)하며, 종종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편견

#### 이성애규범성

이성애(heterosexuality)를 특권화하고 모든 사람이 이성애자일 것이라고 가정함으로써 끌림과 행동의 다양성을 무시하거나 과소표시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편견

#### 이성애성차별

이성애성에 우호적인 선입견과 차별. 이는 이성애성을 더 우월하고 바람직한 끌림의 유형으로 추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동성애혐오<sup>197)</sup>

LGB들이나 그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동성애혐오는 종종 개인적인 태도에 관한 것으로 본능적으로 감정적인 호모포비아와 구분된다.

#### 호모포비아

LGB들을 향한 경멸, 두려움 또는 증오와 같은 적대적 감정. 주로 혐담, 괴롭힘, 배제, 편견, 차별, 폭력행위 등으로 나타나며 호모포비아는 LGBTQ인 또는 LGBTQ로 인식되는 누구든 겨냥한다. 호모포비아는 한 때 그릇된 섹슈얼리티를 향한 자연적인 반감에 기인한 것이라 여겨졌지만, 호모포비아는 자주 LGB 정체성을 강력하게 낙인 찍는 커뮤니티와 개인 간의 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캐나다와 미국의 투표는 호모포비아가 일반 인구 집단에서 다소 빠르게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의 맥락에서 호모포비아는 희롱이나 배제를 통해 폭력적으로 개인을 겨냥하는 행동들을 가리킨다.

#### HBTP

호모포비아적인, 바이포비아적인, 그리고/또는 트랜스포비아적인.

197) 본 보고서는 아래의 'homophobia'와 'homonegativity'를 구분하고 있음. 호모포비아와의 구분을 위해 '동성애혐오'로 번역함.

### 교차성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치의 다양한 측면--예컨대 종교, 계급, 젠더, 장애 유/무 그리고 성적지향 등--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효과가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 역사적으로 많은 연구들은 하나의 카테고리 내에서 서로 다르게 위치한 사람들의 경험들을 비교함으로써 수행되었다. (예: 성의 카테고리 내에서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는 것) 이것은 다른 중요한 차이들을 간과(gloss over)한다. (예: 가난한 여성들 vs. 부유한 여성들) 더욱 최근에는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교차하는 현실의 삶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 (예: 부유한 여성들은 가난한 여성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성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 트랜스혐오

남성-남성성/여성-여성성 관습 범위 밖에 있는 트랜스젠더들이나 젠더 표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트랜스혐오는 종종 개인적인 태도에 관한 것으로 본능적으로 감정적인 트랜스포비아와 구분된다. 이 보고서의 맥락에서, 트랜스혐오는 그 효과들이 의도적인 것이든 아니든, 트랜스젠더들에게 모욕적이고 적대적인 환경에 기여하는 언어들 특징화하기(characterize) 위해 사용된다.

### 트랜스포비아

주로 혐담, 괴롭힘, 배제, 편견, 차별, 폭력행위 등으로 나타나는 인식된 젠더 규범의 어떠한 일탈에 대한 증오 그리고/또는 두려움. 트랜스 그리고/또는 젠더 다양성을 가진 이, 또는 그렇다고 인식되는 이는 트랜스포비아의 타겟이 될 수 있다. 지정성별에 대한 관습적인 기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동성애자”라거나 “호모”와 같은 말로 벌을 받을 때 보이는 것처럼 호모포비아와 트랜스포비아는 강하게 연결돼 있다. (예: 남성적인 소녀, 집에 있는 아빠) 이 보고서의 맥락에서, 트랜스포비아는 희롱이나 배제를 통해 폭력적으로 개인을 겨냥하는 행동들을 가리킨다.

## 방법론

### 설문 개발

교육학, 젠더학, 법학 그리고 사회학 등의 연구진들로 구성된 학제적 팀으로 일하면서 우리는 온라인 설문을 구성하는 공통적인(multi-modal) 연구 프로그램과 “LGBTQ-포용적인 교육에 관한 캐나다 교육자들의 경험과 관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조사하기 위한 포커스 그룹을 만들었다. 설문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는 영어권 국가의 관련된 모든 이전 연구들에 관한 문헌조사를 진행했고 우리 스스로의 연구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들로부터 관련된 발견들을 반영한 문항 초안을 만들었다. 우리는 MTS(\* 주1) 직원, 관리직 그리고 회원들을 포함한 Manitoba 교사 모임의 구성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함께 설문이 학교 시스템과 그와 관련한 이슈에 대한 지식을 반영하도록 몇 가지 버전의 문항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설문을 개발하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교사 조직의 구성원들이 교실에서 수업하는(classroom) 교사들이긴 하지만, 다른 이들은 전문가, 카운셀러, 교육 보조자, 행정 업무를 하는 교사들임을 염두에 두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자들을 그들의 직군과 관련이 있는 하위문항으로 지시할 수 있는 설문을 개발했다(15개 하위그룹 이내). 하위그룹과 교차성 분석을 위해 설문은 정체성이나 사회적 위치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20개의 개인 인구통계적 질문들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LGBTQ 학생들을 위한 학교환경의 인식과 경험, 그들의 직업 속에서 LGBTQ-포용적인 교육 실천에 대해 다루는 70개의 추가 문항을 포함하였다(70개 중 10개는 자유 응답식의 문항). 이 질문들은 학교 안전과 괴롭힘 발생을 포함하는 다양한 범위의 주제들을 요구하였다; LGBTQ 권리와 LGBTQ 포용적인 교육; LGBTQ-포용적인 교육 실천; LGBTQ 가시성(visibility);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지지; 괴롭힘, 안전 그리고 포용에 관한 현장에서의 정책들; 그리고 LGBTQ-포용적인 정책과 교육 실천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의 정도. 그리고 카운셀러와 사회 복지 요원, 그리고 심리학자에게는 5개의 추가 질문이 주어졌다. 짧은 설문을 모두 마친 응답자들

은 57개의 추가 질문 (그 중 6개는 자유 응답식의 문항)에 답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두 번째 문항 세트 (“긴” 버전)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지만 교육자들의 인식과 경험에 관해 더 세부적인 것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섹션은 교육자 훈련, 안전한 학교와 안전한 학교 위원회에 관한 더 세부적인 정보, 학교에서의 LGBTQ 학생 참여 등에 관한 것들을 포함했다. 이 보고서는 짧고 긴 버전의 설문들에서의 발견 사항들을 제시한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추가 보고서를 통해 추가적인 분석도 제시할 것이다.

설문은 FluidSurveys에 의해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영어와 프랑스어 모두 제공되었다. 질문지를 보여주기 전, 우리는 프로젝트 리더인 The University of Winnipeg의 Catherine Taylor’s institution, 팀 구성원 소속기관인 the University of Manitoba(Peter, Ristock, Short 박사)와 Concordia University(Meyer 박사)들에 연구 윤리 승인을 신청했고 이들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 우리는 설문 구조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특별히 철저하게 설문을 사전 시험하였다. 가장 먼저 MTS 회원들의 자문위원회, 그 후 Egale 캐나다 인권 신뢰 교육 위원회(Canada Human Rights Trust Education Committee), 마지막으로 70명의 K-12 교사 그룹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그 후 우리는 누락되는 패턴이나 질문의 명확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문지를 수정했다.

## 데이터 수집 및 구인

데이터는 학교 연도 2012-13년 사이에 수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10월 11일에 수집을 시작해 2013년 7월 7일에 완료되었다.) 설문 참여자들은 캐나다 전역의 회원들로부터 설문 참여자 구인에 동의한 국가 단위(national), 주 단위(provincial), 그리고 지방 단위(territorial)의 교사 조직들과의 직접적인 연락을 통해 모집되었다. 교사 조직은 직접 이메일을 보내거나 웹사이트 홍보, 뉴스레터나 정보 공개 또는 말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연락했다. 참여자들은 설문에 접근하기 위한 조직별 링크를 받았다. 우리는 조직별로 참여자들을 모니터링했고 과소표시가 수정되어야 하는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추가 연락 요청을 위해 지정된

직원과 소통하였다.

### 표집 크기 및 참여자 인구통계

3400명의 교육자들이 표준 설문에 참여했으며 데이터 정화(data cleaning) 이후 3319개의 샘플이 확보되었다. (이 가운데 52%인 1725명은 “긴” 버전의 설문 문항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성했다.) 여러 측면에서 참여자들의 수준은 우리가 캐나다 교사 인구통계에 대해 아는 것과 비슷하다.

→ 71%가 여성으로 정체화했고, 26%가 남성으로 정체화했으며 3%가 트랜스젠더였다. 교육자들은 평균 나이는 41.4세였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75%가 여성이고 평균 나이가 45세인 캐나다 교사 인구와 매우 가깝게 나타난다 (Canadian Teacher, 2014).

→ 응답자의 3%는 트랜스젠더였다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 젠더뉴트럴, 젠더 프리로 정체화 그리고/또는 여성으로 정체화했고 출생 당시 남성으로 지정된 것처럼 지정성별과 다른 젠더를 나타낸 사람들)

→ LGBTQ 교육자는 커녕 LGBTQ 캐나다인에 대한 신뢰할 만한 인구 통계가 없지만, 가중되지 않은(unweighted) 16%의 설문 참여자라는 통계는 LGBTQ 인구 최상단 추정치와 일치하고 분석에 매우 강력한 하위집단을 구성한다. (\*주 1)

→ 토착민 구성은 캐나다 인구 구성과 비슷하게 7%이다 (캐나다 인구 구성은 4%). 다른 인종화된 그룹은 다소 과소표집되었다 (캐나다 인구의 19%와 비교해 4%) (Canada, 2013). (우리는 토착민 또는 다른 인종화된 캐나다 교사 집단에 대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부재해 캐나다 인구 통계를 비교 기준으로 삼는다.)

→ 참여자들은 유치원 전에서부터 12학년까지 고루 분포되었다. 국가 전역에서 각 학교의 전형적인 학년 구분은 다르지만,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분석을 위해

때로 참여자 그룹을 저학년(유치원 이전에서 4학년까지), 중학년(5학년에서 8학년까지), 고학년(9학년에서 12학년까지)로 구분한다.

→ Manitoba 교사 모임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인해 Manitoba는 샘플에서 과대표상되었다. 데이터들은 캐나다 교사 인구 비율을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 주별 또는 지방별 교사 인구를 가중하였다 (지역별 또는 주별/지방별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가중되지 않은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퀘벡 주에서 예상하지 않은 설문도 동시에 수행되었는데 퀘벡의 인구 통계보다 낮게 수집되었다. (퀘벡 데이터는 이 보고서의 지역별 분석에서 Atlantic 데이터와 결합되었다.)

## 분석

양적 데이터들이 일변량 빈도 분포 (적절한 중심 경향의 관련 측정과 함께, \*주 1)와 다양한 참여자들의 그룹의 반응을 비교한 이변량 기술 통계 (예: 크로스 탭과 평균 차이) 를 통해 분석되었다. (예: LGBTQ와 시스젠더 이성애자)

최대한 많은 범위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 보고서는 기술 통계만 제시하고 전체 수만 나타낸다. (메모: 합계 속 또는 합계들 간의 불일치는 반올림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차이는  $p < 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통계적 분석과 그 결과에 대한 추가적 정보는 이 보고서 끝에 위치한 동료 리뷰된 출판물들을 보라. (Meyer, Taylor, & Peter, 2014; Taylor, Peter, Meyer, Ristock, Short, & Campbell, 2015 등을 참고할 것.)

## 생성 변수

모든 선생님 프로젝트의 목적 중 하나는 교육자들의 LGBTQ-포용적인 교육에 관한 경험과 인식이 영향을 미친 각기 다른 맥락과 개인적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광범위한 이변량 분석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물었다. 우리의 비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 LGBTQ vs 시스젠더 이성애자(CH)
- 시스젠더 남성 vs 시스젠더 여성 vs 트랜스젠더
- 백인 vs FNMI vs 인종화된 집단
- 교육자의 연령
- 교사 vs 학교 지원 상담가/심리학자/사회 복지 요원 vs 학교 행정가 (교장, 교감 및 지원 인력)
- 고용 상태 (영구계약 vs 단기, 특정, 임시 또는 대체 상태)
- 도시 또는 교외 지역 (10만 이상의 도시 또는 교외) vs 소도시 또는 멀리 떨어진 마을 (1만에서 10만까지의 도시 또는 작은 마을 또는 10만 명 이상 인구이며 도시에서 150킬로 미터의 이내 시골) vs 먼 지역/시골/보호지(reserve)/AFB (1만 미만으로,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며 도시에서 150km 이상 떨어진 곳, 시골, 보호지 또는 군사 기지 [AFB])
- 학생 수에 따른 학교 크기 (250명 이하 학생 vs 251~500명 학생 vs 501~750명 학생 vs 751~1000명 학생 vs 1000명 초과 학생)
- 저학년 교육자/학교 (유치원 이전에서 4학년까지) vs 중학년 교육자/학교 (5학년에서 8학년까지) vs 고학년 교육자/학교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 호모포비아적 괴롭힘에 관한 정책이 있는 학교 vs 정책이 없는 학교
  - ▶ 그러한 정책에 대한 교육의 정도 (없거나 불충분함 vs 어느 정도 있었으나 더 필요 vs 충분한 교육 및 준비가 매우 잘됨)
- 트랜스포비아적 괴롭힘에 관한 정책이 있는 학교 vs 정책이 없는 학교
  - ▶ 그러한 정책에 대한 교육의 정도 (없거나 불충분함 vs 어느 정도 있었으나 더 필요 vs 충분한 교육 및 준비가 매우 잘됨)

으나 더 필요 vs 충분한 교육 및 준비가 매우 잘됨)

→ 저소득 가구의 학생 비율 (10% 미만 vs 10~24% vs 25~49% vs 50~74% vs 75% 이상)

→ 학교의 인종적 구성

▶ FNMI 비율 (10% 미만 vs 10~24% vs 25~49% vs 50~74% vs 75% 이상)

▶ 인종화된 집단의 비율 (10% 미만 vs 10~24% vs 25~49% vs 50~74% vs 75% 이상)

▶ 백인 비율 (10% 미만 vs 10~24% vs 25~49% vs 50~74% vs 75% 이상)

→

학교에서 교육에 사용되는 주 언어 (영어 vs 불어 vs 영어 및 프랑스어)

→ 가톨릭 학교 vs 세속 (예: 비종교) 학교

▶ 메모: 가톨릭이 아닌 종교 학교에서 일하는 참가자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 연구의 소교구/세속 분석은 가톨릭 vs 세속 학교에만 집중한다.

모든 선생님 프로젝트 설문은 응답자의 현재 종교적 소속과 관계된 세부적인 일련의 질문들을 물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또는 일신교적 종교 (예: 기독교 (Christianity), 이슬람, 유대교) 인들에게는 응답자의 구체적인 종교를 기록하기 위해 후속 질문을 하였다 (예: 기독교 - 개신교 재침례파). 우리는 모두 합쳐 52개의 서로 다른 종교적 소속을 확인하였으며 여기에는 무교,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영적인 측면(비종교적으로), First Nations 영성, Pagan/earth-based, 유니테어리언 교도, 동방 교, 바하이 신앙, 불교, 힌두교 그리고 시크교 등이 포함된다. 우리가 현재 종교적 소속에 관해 이러한 매우 세부적인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자들의 현재 종교가 일반적으로 동성결혼(same-sex marriage)을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에 기반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냈다. 그에 대한 응답은 다음으로 나뉜다: 찬성, 섞인 견해, 반대, 공식적인 종교 없음, 그리고 종교

적이지만 특정한 종교는 알려져 있지 않음. 다른 분석들에서, 우리는 자신의 종교적 종파가 가톨릭인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그리고 (영국 국교회를 포함하여) 개신교인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위에 언급된 변수들 이외에도, 몇 가지 개인적인 태도에 관한 질문들이 독립 변수로 포함되었고, 이변량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질문들과 각각에 대한 응답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LGBTQ-포용적인 교육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응답들은 “찬성,” “중립” 그리고 “반대”를 포함했다.

→ 당신의 종교적인 또는 영적인 믿음이 LGBTQ 이슈에 관한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응답들은 “매우 강하게 미친다,” “약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를 포함했다.

괴롭힘의 발생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호모포비아, 바이포비아 그리고 트랜스포비아 (HBTP) 괴롭힘의 복합 측정 도구가, 교육자들이 다음의 기준들 중 하나의 근거해 언어적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의 숫자를 통해 측정되도록 만들어졌다: LGB인 것, LGB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 트랜스젠더인 것, “너무 여자처럼” 구는 남자인 것, 그리고 “너무 남자처럼” 구는 여자인 것. 두 번째 측정은 동일한 기준으로 신체적 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역적 분류(breakdowns)를 제시하며, 이들은 가중되지 않은 데이터에 근거한다. 몇몇 경우에서 우리는 각 주와 지역을 따로 보고한다; 그러나 표본 크기의 제약으로 대부분의 비교는 지리적 지역에 따라 수행되었다. 이 지역은 다음을 포함한다: British Columbia; Alberta and Saskatchewan; Manitoba; Ontario; Quebec and the Atlantic provinces; and the three territories plus Labrador. 퀘벡 주의 낮은 참여로 인해 퀘벡은 대서양 지역에 포함되어야만 했다. 반대로 Manitoba는 너무 참여자가 많아, 그 지구 그대로 남겨두었다.

## 결론

교사들은 안전이 포용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몇몇 구역에서는, 특히 과거에, 학교 관리들이 괴롭힘 방지에 대해 시스템적인 개입에만 더욱 좁게 초점을 맞추었고, 때로는 그저 (자주 냉담하게 실행되며) 안전을 학생들 자체가 학교의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학교환경의 보안과 통제와 동치시킨 적도 있었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의 Columbine이나 Taber, Alberta에서의 교내 총기 사건을 거치면서, 학교 안전과 관련된 논의들에서 폭력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강조가 뿌리내렸다. 그러한 논의들은 형평과 포용의 요소가 두드러지는 더 넓은 안전개념의 형상을 무시했다. 그 이후에 학교 안전에 관한 대화가 극단적인 학교폭력과 무관용 원칙의 담론 속에서 멈추고 말았다.

시간이 바뀌었다. 이제 학생의 안전을 포용 관점에서 제시하는 관리들과 정치인들을 찾는 것이 매우 흔해졌다. 예를 들어 Manitoba 주의 법 18, 공립학교 개정법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은 안전과 포용의 언어를 나란히 사용하며 양자가 상호 의존적임을 강조한다. 교사 조직으로부터의 모두의 선생님 프로젝트를 향한 열광적인 지지는 LGBTQ-포용적인 교육을 그들도 지지함을 보여준다. 모든 선생님 프로젝트의 결과 또한 전국의 매우 많은 교사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설문 결과로부터 제기되는 한 가지 큰 도전은 LGBTQ-포용적인 실천의 수준을 교육자들의 LGBTQ-포용적인 교육에 찬성하는 수준과 맞추기 위해서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 것이냐이다. 무엇이 교육자들로 하여금 LGBTQ-포용적인 가치들을 행하는 것을 붙잡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LGBTQ-포용적인 학교에 대한 미디어의 설명(characterization)은 종교적 신념과 LGBTQ 포용에 관한 충돌을 마치 두 개의 힘이 늘 반대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 관리들과 입법자들은 캐나다 교사들의 LGBTQ 포용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 교사들에는 캐나다 가톨릭 학교의 많은 교사들도 포함된다. 전국의 교사들은 모든 선생님 프로젝트에 그들이 LGBTQ-포용적인 교육에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찬성하며 그렇게 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그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지지받지 못하거나 그 실천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부족하다는 두려움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being held back). 우리가 모든 선생님 프로젝트에서 배운 것은 그들이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흔히 추측되는 종교적 믿음이나 도덕적 충돌 때문이 아니라 훈련의 부족과 백래시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거대도시(metropolitan cities)에서부터 멀고 작은 마을(small remote towns)까지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거대한 진전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학교가 LGBTQ 학생들과 직원들이 학교에서의 일상에서 안전하고 의미있는 참여로부터 배제되고 있음을 다루는 것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행동의 부족은 캐나다 학교에서의 호모포비아, 바이포비아, 트랜스포비아에 관한 첫 번째 전국 환경 조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기를 꺾을 뿐만 아니라(demoralizing) 치명적인 수준으로 너무 많은 젊은이들을 전 영역에 걸친(run the gamut) 적대적인 학교환경에 갇히게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제안들이 모든 선생님 프로젝트로부터 나타난다. 그것들은 교사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모든 캐나다의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포용적이고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매우 필요한(much-needed) 시스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한 일들에 관한 것이다.

## 행동 제안

### 정부와 교육구를 위한 제안

1. 교사와 상담가들에게 학교 시스템의 모든 수준에서 LGBTQ-포용적인 교육에 대한 지지의 보증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제공할 것. 여기에는 학교 관리, 교육구 행정 및 교육부도 포함한다. 연구 결과는 참여자들이, 불만이 발생했을 때 학교 시스템 리더십이 그들을 지지해줄 것이라는 데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많은 참여자들이 전혀 자신할 수 없었다. LGBTQ-포용적인 교육과정을 포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두에 나선 교사-지도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2. 의미있는 포용과 개인적 안전을 다루는 LGBTQ에 관한(LGBTQ-specific) 법률과 지역구 정책을 마련할 것. 우리는 교사들이 매우 강력하게 LGBTQ-포용 교육을 지지한다는 것과 학교의 안전이 학교 생활에서 의미 있는 포용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했다. 많은 주들 (Alberta, Manitoba, Ontario)이 학생이나 교사가 요청했을 때 학교가 게이-스트레이트 동맹(GSAs)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든 주와 지방에서 그들의 교육 법령을 GSAs와 반-괴롭힘 정책을 넘어서서 모든 공적 자금이 투입된 학교에서 LGBTQ-포용적인 교육을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3. 모든 학년에서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사들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LGBTQ-포용적인 내용을 의무화할 것.

4. LGBTQ에 관해 공공연하게 또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부정확하고 경멸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적대적인 학교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교사에 관해 대응할 수 있는 개입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것. 이러한 계획들은 그러한 발언을 계속할 경우 어떤 징계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5.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교육과정 자원을 제공할 것. 교사들은 지식과 자원의 부족이 LGBTQ-포용적인 교육을 실천하는 데에 장애물이 됨을 확인했다. 출판사와 교육구, LGBTQ 인권 옹호 단체 (게이 레즈비언 이성애자 교육 네트워크, 인권 캠페인, Eagle Canada Human Rights Trust 그리고 프라이드 교육 네트워크), 그리고 교사 조직들이 이미 존재하지만 우리의 연구 결과는 많은 교사들이 이것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6. LGBTQ-포용적인 교육 전문가 개발을 제공하고 모든 LGBTQ-포용 전문가 개발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상황에 특히 관심을 기울일 것. 학교환경 조사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LGB 학생들보다 학교에서 훨씬 더 괴롭힘을 당하고 안전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모든 선생님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느꼈다.

7. 공적자금이 투입된 모든 학교가 학생들이 요청하면 GSA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단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법률과 학교 이사회 정책을 만들고 다른 학생 단체와 상응하는 수준의 자원을 제공할 것. 만약 그 단체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적절한 회원 수가 없다면, 전문적인 개발이 필요한 양을 맞추기 위해 몇몇 또는 모든 학교 직원에게 주어져야만 한다.

### **학교 행정가들을 위한 제안**

1. 교사들과 상담가, 그리고 행정가들이 현재의 입법과 교육구 정책을 알도록 하게 하고, 그 안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 학생들이 현장에서 GSA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것.
3. LGBTQ 직원과 가족 구성원을 환영한다고 소통하는 포용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을 학교 생활 속으로 평등하게 통합할 것.

4. LGBTQ-포용적인 교육에 관한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젠더 다양성과 트랜지션 중인 학생에게 지지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
5. 게시물을 전시하고 (게시판, 도서관 서적, 테마 이벤트 등) 자원들 (책, 포스터, 전단지, 팸플릿 등), 정책들을 업데이트하고 공유함으로써 LGBTQ 포용에 관한 지원이 가시화 되도록 할 것.
6. 교사들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 지식과 자원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교사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오해를 처리하는 것, 이런 일을 하는 교사들의 전통적인 고립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동료가 LGBTQ-포용적인 교육에 찬성하여 불만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들을 도울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또한 똑같이 중요하다.
7. 전문성 개발 및 자원 제공을 포함하여 LGBTQ-포용적인 교실 만들기에 분명한 지지를 제공할 것.

### 교사 조직들을 위한 제안

1. LGBTQ-포용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인 법률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할 것. 교사 조직 구성원들은 그들이 이러한 일을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지만 교육 시스템의 모든 수준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2. LGBTQ-포용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 교육구와 적극적으로 협업할 것.
3. 이러한 일을 하는 구성원과 특히 LGBTQ 교육자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수준이라도) 지지를 확인하고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 것. 우리는 교사 조직이 대단히 지지하는 주에서도 그러한 지지에 대한 자신감이 70% 정도



인 것을 확인했다.

4. LGBTQ 직원과 학생들에 적대적인 환경에 기여하는 교사들에 대응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
5. 구성원들을 위해 GSA나 그에 상응하는 단체를 만들 것.

####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제안

1. 교육학 학사 과정의 수업내용에 LGBTQ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
2. 이미 교육 시스템에 있는 교육자들을 위해 LGBTQ-포용적인 교육에 관해 바깥로레아 이후 그리고 대학원 과정을 제공할 것.
3. 교수진과 현장 조연가들이 어떻게 LGBTQ 내용이 강의와 현장 경험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4. 교육부, 교육구, 그리고 교사 조직과 협력하여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표준 교육과정이 젠더와 성적 다양성을 모든 학년에서의 교육내용에 포함되도록 할 것.
5. LGBTQ-포용적인 교육과 새로운 입법을 공적으로 장려함으로써 교육구와 공동체에 리더십을 제공할 것.
6. 교육 학생들을 위한 GSA를 만들 것.

#### 모든 학교 시스템 고용주들을 위한 제안

1. 교육자와 학교 관리 후보에 LGBTQ-포용 교육에 있어서 전문가인 이들을 자산으로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

2. 지원되도록 특히 장려되는 그룹에 지원할 수 있도록 LGBTQ 사람들이 포함되도록 할 것. 이는 “LGBTQ 사람들”을 여성, 가시화된 소수자들과 함께 학교 시스템 채용 공고를 내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 LGBTQ 학생들이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성인 LGBTQ를 롤모델로 삼고, 다른 학생들이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LGBTQ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LGBTQ 교사들이 직업에 지원했을 때 주로 학교 관리직에게는 “커밍아웃”하지 않고 소수의 신뢰하는 동료나 행정가에게만 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모든 수준의 교사들이 개방적으로 LGBTQ로 정체화할 수 있다는 것에 공식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LGBTQ 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다른 학생들과 동료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것. LGBTQ 응답자들이 학교에 아는 다른 LGBTQ가 매우 적다는 것은 LGBTQ들이 학교에서 완전히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4. LGBTQ 직원들이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할 것. 예를 들어, LGBTQ 직원들의 파트너에 대한 배우자 보너스를 다른 배우자 보너스와 계약 및 조건이 일치하는 수준으로 완전히 지급할 것.

### **종교단체를 위한 제안**

1. LGBTQ 포용을 종교적 신념과 LGBTQ 권리 사이의 대결로 보는 혼란 오해를 재고할 것. 많은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교사들을 포함한 종교적인 교사들은 LGBTQ-포용적인 교육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있다. 많은 다른 이들도 그러기를 원한다.

2. 종교적인 이유로 LGBTQ 포용에 반대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LGBTQ 학생들이 안전하고 포용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 LGBTQ 인권이 종종 종교적인 권리와 충돌한다는 사실이 교사들이 동성 결

혼과 젠더 다양성이 잘못되었다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LGBTQ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학교에서 포용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 또한 아니다.

3. 종교 지도자와 다른 종교인들이 LGBTQ-포용적인 교육에 대한 지지에 대해 더욱 솔직히 말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

4.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세속 그리고 종교학교에서 LGBTQ-포용적인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모든 수준에서의 노력에 관한 지지를 제공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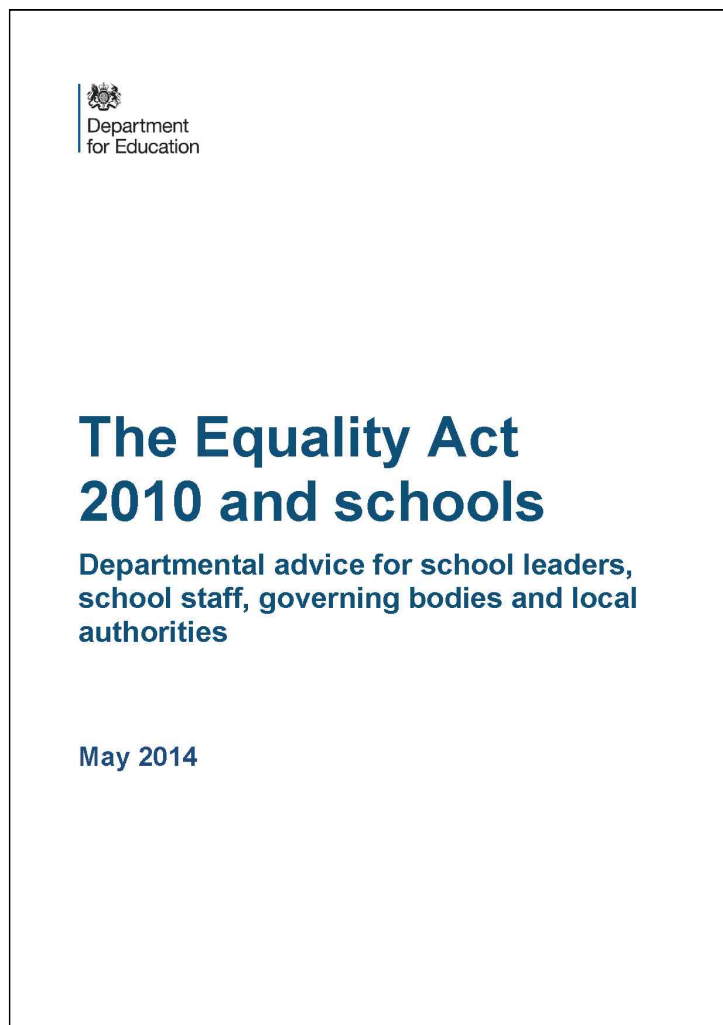
[참고자료 6] 영국 - 2010년 평등법과 학교 - 학교 관리자 및 직원, 학교 및 학원의 관리 기관, 그리고 지방 정부 당국을 위한 영국 교육부의 조언

### 2010년 평등법과 학교 - 학교 관리자 및 직원, 학교 및 학원의 관리 기관, 그리고 지방 정부 당국을 위한 영국 교육부의 조언 (2014)

※ 자료 설명: 영국에서 제정된 2010년 평등법은 영국의 성소수자 학생을 지원해야 하는 법적 근거임. 본 자료는 성별, 인종, 장애, 성적지향, 성별 적합 수술 등으로 인해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영국 평등법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음. 차별금지 예시가 구체적이며 한국 상황과 비교하여 고민해볼 지점이 있다.

※ 전체 자료 중 일부를 발췌, 번역하였다. 전문은 영국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quality-act-2010-advice-for-schools>)



## 1장. 평등법의 개괄

2010년 제정된 평등법은 여러 차별금지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법안이며, 불법적인 차별행위를 거의 모두 다룬다. 평등법은 기존 차별금지법안들의 비밀관성과 오점들을 제거하여 법안 자체를 좀 더 간소화했다.

평등법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영국과 웨일스에서의 평등법은 모든 공립/사립학교, 공립/사립 특수학교에 적용된다. 스코틀랜드의 평등법 또한 모든 공립/사립학교 등에 적용된다.

평등법은 학교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학교 주체’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학생을 차별하거나, 괴롭히거나, 공격할 경우 평등법을 위반하게 된다:

- 입학과 관련하여
-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 혜택, 시설, 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 학생을 배제하거나 학생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평등법이 말하는 ‘학교 주체’란 영국과 웨일스 공립 학교의 경우 학교 관리 기관이나 지방 정부 당국을 지칭하며, 스코틀랜드 공립 학교의 경우 교육 당국을 말한다. 사립 학교의 경우 학교의 소유주를 지칭한다. 실질적으로는,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 주체를 대신해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든 평등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평등법은 학교가 학생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한 법안이며, 학생 간의 관계는 평등법이 다루는 범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학생들 간의 동성애 혐오나 인종주의와 같은 이슈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동성애 혐오와 관련한 혐의를 묵살하거나 트랜스젠더 학생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실패했다면, 그 학교 주체는 평등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평등법은 무엇을 보호하고 금지하는가?

- **특성 (Protected characteristics)**

- 성별
- 인종
- 장애
- 종교 또는 믿음
- 성적지향
- 성별 적합(전환)
- 임신 또는 출산

- **연관성 (Association)**

학생과 관계 있는 사람의 성별, 인종, 장애, 종교 또는 믿음, 성적지향, 성별 적합(전환) 여부로 인해 차별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예를 들어, 학교는 학생의 부모가 게이나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학생의 입학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백인 학생이 흑인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인종 차별이다.

- **인지 (Perception)**

만약 당신이 잘못 생각했더라도, 당신이 추측한 특성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그것 또한 평등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교사가 어떤 학생을 지속적으로 게이라고 생각하고 차별한다면, 그 학생이 게이이든 아니든 교사는 성적지향으로 인해 차별한 것이 된다.

- **불법적 행동 (Unlawful behavior)**

평등법은 불법적 행동을 네 가지로 정의한다. 1) 직접적 차별, 2) 간접적 차별, 3) 공격 (harassment), 4) 희생을 강요하는 괴롭힘 (victimization).

### 3장. 평등법이 보호하는 특성 관련 이슈

#### 성별 적합(전환) (Gender reassignment)

학교에서 성별 적합(전환) 여부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2010년 제정된 평등법에 새롭게 추가된 조항이다. 즉, 학교가 학생의 성별 적합 여부로 인해 학생을 차별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된 첫 번째 사례가 된 것이다.

평등법에서의 성별 적합(전환)이란 성별 적합(전환) 과정 - 생리학적 특성 혹은 다른 속성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 - 을 현재 밟고 있거나, 밟았거나, 혹은 밟을 예정이 있는 사람에게 모두 적용되는 용어다. 다시 말해, 평등법에 근거해 보호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 반드시 의학적 절차를 밟지는 않아도 되지만, 반대의 성으로 살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거나 밟을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 단성 교실 (Single sex classes)

어느 한쪽 성만 우대하여 교육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성별 적합(전환) 과정을 거치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이 정체화하는 성별에 맞는 단성 교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성적지향과 결혼, 시민 동반자법

학교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학생들 또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부모에게서 자란 학생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가 한 학생이 게이라는 이유로 그가 반장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평등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공립 중등 학교는 성교육을 할 때 ‘결혼의 속성’에 대해 가르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때, 학교는 학생들에게 동성결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 물론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나이와 발달 단계, 이해 수준에 적합해야 한다.

### 성적지향과 종교 또는 믿음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와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 간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꽤 많은 사람들의 성적지향에 대한 의견은 종교적 믿음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종교적 믿음과 상관없이 동성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우려하는 교사들이 있다. 반대로, 종교적 색채가 짙은 학교들이 성소수자 학생이나 학부모에 비우호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만약 학교의 종교적 믿음이 교육적 맥락에서 Sex and Relationships Education (SRE) 지침과 Religious Education (RE) 지침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면, 해당 학교는 평등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가 종교적 믿음을 장황하게, 특정 학생이나 특정 학생의 그룹을 괴롭히거나 질책하는 방식으로 나타낸다면,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평등법 아래 차별을 행한 것이 된다.

또한 교사가 성적지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적절한 방식과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예컨대 학생의 질문에 답할 때 혹은 종교 교육 시간 등 - 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 교사는 매우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행동과 책임은 평등법 이상으로 더 넓고 깊음을 인지해야 한다. 교사가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군가를 차별하는 정도로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의 gender reassignment란 반드시 신체의 생리학적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성별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삶의 계획들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7] 일본 문부과학성 -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세심한 대응의 실시  
지침

트랜스젠더<sup>198)</sup>,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관련된 학생에 대한 세심한 대응 실시  
지침 (교직원용)

※ 자료 설명: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2015. 4. 30.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세심한 대응의 실시 등’을 배포한 이후 1년 사이에 통지에 기반한 대응방식에 대해 학교, 교육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질문을 바탕으로 Q&A 형식으로 정리한 지침. 자료 중 실시지침 부분을 발췌, 번역하였다.

#### 4.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세심한 대응의 실시지침

##### 1)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특유한 지원

###### ① 학교에서의 지원체제에 관하여

- 트랜스젠더 학생의 지원은 먼저 상담(입학등에 있어 학생의 보호자가 요청한 상담을 포함)을 받은 사람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내외의 ‘서포트 팀’을 만들어 ‘지원위원회’(교내)나 케이스 회의(교외)등을 적시에 개최하며 대응을 진행할 것
- > Q2, Q3, Q4
- 교직원등 간에 있어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학생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가능한 한 비밀에 두고 싶은 경우가 있는 것 등에 유의하면서, 한편으로는 학교가 효과적인 대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등 간에 정보공유를 하여 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의도를 충분히 설명, 상담하여 이해를 얻은 뒤 대응을 진행할 것
- > Q5, Q6

198) ‘성동일성장해(性同一性障害)’를 일괄적으로 트랜스젠더로 번역하였음

②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대해

- 의료기관에 의한 진단이나 조언은 학교가 전문적 지식을 얻는 중요한 기관임과 동시에,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 보호자 등에 대한 설명자료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학생이 자신의 성에 위화감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생이 적절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애초에 트랜스젠더인지 그 외의 경향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가 지원을 행함에 있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본에서는 트랜스젠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전문의나 전문적인 의료기관에 관한 관련학회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 > Q7

-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있어, 당사자인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의 원천이나, 당사자인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구체적인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아닌 범위에서 조언을 얻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 > Q8

③ 학교생활의 각 장면에서의 지원에 관하여

- 전국의 학교에서는 학교생활에 각 장면에서 지원으로서 별지에 표기된 것 같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대응함에 있어 참고할 것.

항목	학교에서의 지원 사례
복장	정체화한 성별의 복장, 의복이나 체육복의 착용을 허용함
머리모양	표준보다 긴 머리모양을 이정 범위에서 허용함(호적상 남성일 경우)
탈의실	보건실, 다목적 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함
화장실	직원 화장실, 다목적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함
호칭	교내문서(통지표를 포함)를 학생이 희망하는 호칭으로 표기함 정체화한 성별로서의 명부에 기재

수업	체육 또는 보건체육에 있어 별도의 메뉴를 설정함
수영	상반신이 가려지는 수영복 착용을 허용함(호적상남성) 보충수업으로서 별도의 날에 실시, 또는 레포트 제출로 대체함
운동부의 활동	정체화한 성별에 맞는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함
수학여행 등	1인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 입욕시간을 엇갈리게 함

- 학교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에의 배려와 다른 학생들에의 배려의 균형을 맞추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 Q9, Q10

- 트랜스젠더 학생이 원하는 지원은 당해 학생이 갖고 있는 위화감의 강약등에 따라 다양하며, 또, 그 위화감은 성장에 따라 줄어드는 것을 포함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차원에서 선입견을 갖지 않고 그때그때 학생들의 상황 등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

- 다른 학생이나 보호자의 정보공유는 당사자인 학생과 보호자의 의향 등을 확인하여 개별 사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트랜스젠더의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도 청소년의 고민이나 불안에 기대어 지원하는 관점에서 의료기관과의 상담상황, 청소년이나 보호자의 의향 등을 감안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 ④ 졸업증명서 등에 관하여

- 학적부의 기재는 학령부 등의 기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졸업후에 법에 따른 호적상 성별의 변동등이 있는 사람이 졸업증명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호적을 확인한 후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할 것.

- > Q11

#### ⑤ 당사자인 아동의 보호자와의 관계에 대해

보호자가 그 아동의 성주체성에 관한 고민이나 불안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보호자가 긴밀히 연계하면서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의 고민이나 불안을 경감시켜 문제 행동을 미연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호자와 충분히 이야기하여 가능한 지원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 ⑥ 교육위원회 등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 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인권교육담당자나 학생지도담당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등의 활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학교의 관리직들도 연수등을 통해 적절한 이해를 하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 의사나 스쿨카운셀러의 연수 등에서 트랜스젠더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
- 트랜스젠더 학생이나 그 부모자로부터 학교에 대해 상담이 요청될 경우, 교육위원회로서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체제정비나 지원의 상황을 듣고,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등과도 상담하면서 ‘서포트 팀’의 설치 등의 적절한 조언 등을 받을 것

#### ⑦ 그 외의 유의점에 대해

이상의 내용은 획일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개별 사례에 있어 학교나 가정의 상황 등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2) 트랜스젠더 학생이나 ‘성소수자’학생에 대한 상담체제 등의 충실

- 학급, homeroom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따돌림이나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적절한 학생지도,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고민이나 불안을 안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의 토대가 된다.

#### - > Q12

- 교직원로서는 고민이나 불안을 안고있는 학생의 좋은 이해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고민이나 불안을 받아줄 필요성은 트랜스젠더 학생 뿐 아니라 성소수자 학생 전반에 공통하는 것이다.
- 트랜스젠더 학생이나 성소수자 학생은 자신의 그러한 상황을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 것 등을 이해하면서 학교에서는 평소에 학생이 상담을 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먼저 교직원 자신이 트

랜스젠더나 성소수자 전반에 대해 분별없는 언동을 삼갈 것은 물론, 예를들어 어떤 학생이 그 호적상의 성별로 보이는 복장이나 머리모양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트랜스젠더 등을 이유로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것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거나 야유하지 않는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 교직원이 학생으로부터 상담을 요청받은 때에는 당해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먼저는 고민이나 불안을 듣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 5.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섬세한 대응실시지침에 관한 Q&A

### Q1.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단계에서 진단의 유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성별에 관한 위화감에는 강약이 있어 성장에 따라 줄어드는 것도 포함하여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 중 어떤 위화감이 있는지를 당사자 학생이 명확하게 자각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관계학회의 가이드라인은 특히 15세 미만에 대하여는 진단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여 성주체성장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일부러 진단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학교단계에 있어 진단의 유무의 상황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 또,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기관과의 상담 상황,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향 등을 바탕으로 지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Q2. 학교내외의 서포트팀의 멤버는 어떤 사람이 상정되어 있습니까?

- 이미 대응을 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는 학교내 서포트팀으로 상담을 받은 사람, 관리직, 학급, 담임교사, 보건교사, 학교의사, 스쿨라운셀러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학교외의 팀으로는 교육위원회, 의료기관의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진학할 학교의 교직원, 스쿨소셜워커 등,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아동상담소나 지역담당국의 담당자 등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Q3. 서포트팀, 지원위원회, 케이스회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서포트팀은 트랜스젠더 학생을 교내외의 구성원에 의해 지원하는 조직, 지원위원회는 교내의 구성원에 의해 기동적으로 개최하는 회의, 케이스회의는 교외의 의료종사자 등의 식견을 구하는 때에 개최하는 회의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Q4. 서포트팀은 학생지도에 관한 기존의 조직, 회의의 활용으로도 괜찮은것인가요. 새로운 조직, 회의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 서포트팀의 역할은 학생지도 등에 관한 기존의 조직, 회의와 겹치는 부분도 있어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트랜스젠더 학생의 지원은 개별 사안에 따라 학생의 심정 등을 배려한 대응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대응이전의 문제로서,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학교차원에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할까요?**

- 트랜스젠더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성별정체성에 대해 다른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에게 대해서도 비밀로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스스로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에게 일방적인 조사나 확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학생은 자신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인상을 가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교육상의 배려라는 관점에서는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에서는, 교직원이 올바른 지식을 가져, 평상시부터 아동 학생이 상담하기 쉬운 환경을 정돈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6. 다른 학생에 대해 비밀로 하며 대응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까?**

- 2014년의 문부 과학성의 조사에서는, 약 6할의 아동 학생이 다른 아동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알리고 있지 않고, 그 중에는, 비밀로 하고 학교로서 가능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덧붙여 통지에서는, 다른 학생이나 보호자와의 정보의 공유는, 당사자인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향등을 근거로 해 개별의 사정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Q7. 관계학회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현재 트랜스젠더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 등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GID학회의 홈페이지에서 '트랜스젠더진단에 관한 정신건강 전문직의 소속시설'이 공개되어있습니다.
- (참고URL) <http://www.okayama-u.ac.jp/user/jsgid/>
- 또 지자체 등의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는 트랜스젠더 상담을 받고 있어 전문기관 등 필요한 정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과 연계를 해볼 수 있습니다.

**Q8.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데 트랜스젠더로 생각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을까요.**

- 의료기관과의 연계는 학교가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때 전문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한편, 최종적으로 의료 기관에서 진찰할지 여부는, 학생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 이 때문에,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진찰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그 판단을 존중하면서, 학교로서는 구체적인 개인정보에 관련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일반적인 조언등을 전문의 의료 기관에 요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Q9.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배려와 다른 학생에 대한 배려의 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대응은 중요하지만, 그 대응에 있어서는, 다른 학생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사용에 있어 직원용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는 등 다른 학생이나 보호자를 배려한 대응을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배려와 다른 학생이나 보호자에의 배려의 균형을 잡으면서 지원을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10. 건강진단의 실시에 대해 어떤 배려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 통지는, "학교에서는, 트랜스젠더 아동에 대한 배려와 다른 학생에게의 배려와

의 균형을 맞추면서 지원을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건강진단에 있어서도 본인 등의 의향을 고려한 후에 보건교사가 학교 의사와 상담하면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Q11. 졸업 후에 법에 근거한 호적상의 성별의 변경등을 실시한 사람으로부터 졸업 증명서등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경우, 학적부의 변경까지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 통지는, "학적부 기재에 대해서는 학령부의 기재에 근거해 행하면서, 졸업 후에 법에 근거하는 호적상의 성별의 변경등을 실시한 사람으로부터 졸업 증명서등의 발행을 요구받았을 경우는 호적을 확인한 다음, 해당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 학적부의 변경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12.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에 대해 당사자의 단체에서 학교에 강의를 실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학교교육에서의 취급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 일반론으로서 성에 관한 것을 학교 교육에서 취급하는 경우는 학생의 발달 단계를 밟는 것이나 교육의 내용에 대해 학교 전체에서 공통 이해를 도모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이해를 얻는 것, 사전에 집단지도로서 실시하는 내용과 개별 지도와의 내용을 구별해 두는 등 계획성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 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타인의 아픔이나 감정을 공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상상력 등을 육성하는 인권교육 등의 일환으로서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에 대해 다루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특히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영향 등에 대한 신중한 배려를 포함해 상기 성에 관한 교육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교육의 중립성 확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지도의 목적이나 내용, 취급방법 등을 적절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8]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정부 - 지원 및 위험관리 플랜<sup>199)</sup>

Sample Support and Risk Management Plan					
Student Name:		Number in group/class: Name of contact person: Contact number: Relevant staff:			
Name of school: Name of Principal:		Date(s) (and subject to regular review):			
Group/class:					
Activity/Issue	Hazard Identification & Associated Risk Type/Cause	Assess Risk use matrix	Elimination or Control Measures	Who	When
Record Keeping	Potential for identification of sex at birth	High	Amend all school information (including ERN and other electronic record systems maintained by the school) to reflect student's preferred name and identified gender once approved. Any card identifying the student (e.g. the school library card) should be reissued Bus and train passes adjusted to reflect preferred name and identified gender.	P	Now
Need for current information	School unaware of changes in the student's situation that place him or her at risk  School unaware of issues that may affect the wellbeing of sibling currently in Year X	High	One point of family contact to be established within school (Mr/Ms X). If Mr/Ms X is unavailable and matter is urgent contact to be made with the Principal.  Parents to keep school informed of any relevant developments and/or issues. Parents to contact school with concerns they may have regarding student or sibling. School to have access to relevant medical information including contact with health care professionals to support for student.	HT(W)  YA  P  P	Now  Ongoing  Monthly or as needed
Curriculum	Potential for student intolerance through a lack of understanding	Medium	Regular scheduled meetings to review plan and student issues with parent and student.  Review PDHPE curriculum Stage 4/5 to ensure that issues related to difference, gender,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re highlighted and addressed.	D(P,C)	Now and Ongoing

199) 해당 자료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정부 홈페이지에서 'Transgender Students in Schools' 라는 제목으로 공지하고 있는 지침의 일부이다. 본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학생이 학교 시스템 안에서 놓이게 되는 다양한 활동('운동장에서', '야간견학시' 등)이나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이슈('사춘기', '화장실 사용' 등), 학교 구성원의 역할 등을 분류하여 각각의 상황의 위기 정도를 높음, 낮음 등으로 분류하였고 의무이행자가 누구인지, 의무이행의 시기는 언제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본 자료는 약어와 해당 국가의 교육제도에 따른 용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전문적인 번역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지원과 위기 관리 플랜이 한국의 학교 현장에도 응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기 위해 실어둔다.

Activity/Issue	Hazard Identification & Associated Risk <small>Type/Cause</small>	Assess Risk <small>Use matrix</small>	Elimination or Control Measures	Who	When
Playground	Identification of biological sex Bullying of student and/or friendship group Bullying of sibling	Medium	Staff to monitor playground. Student given a safe place to go. Assist student and sibling in developing strategies to deal with comments from other students. Student made aware of contact person in the school and how this person can help them. Sibling given a safe place to go. Counsellor support available at the school.	All Counsellor Counsellor	Now and ongoing
Use of toilet and change rooms	Potential for identification of biological sex Potential for other students to be embarrassed or angered	High	Student to use male change room facilities Doors provided to change room cubicles of their identified gender Student must change in cubicle Staff to monitor length of time in change room Staff and student to report any incidents in the change room to Principal Student to use toilet of identified gender – strategies discussed with HT(W) as above Zero tolerance to “skylarking” in change rooms. Teachers to report to DP in the first instance	P Staff P	Now Ongoing Ongoing
Puberty	Potential for identification of biological sex	High	Access to separate toilet facilities in school administration block during monthly menstruation. Personal hygiene products kept in this facility exclusively for use by student. Separate change room facilities available during PE lessons at this time. Counsellor support available at school	Counsellor	Now Ongoing and as needed
Sport	Potential for identification of biological sex Issue of swimming	High	Discussion with student and family as appropriate about strategies to ensure confidentiality and safety when participating in sports such as swimming. Subsequent plan and strategies to be communicated to relevant school personnel.	P	Ongoing
Overnight Excursions	Potential for identification of biological sex	High	Student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overnight excursions – full risk management to incorporate strategies for supporting and maintaining confidentiality, including strategic discussions with and his family prior to the excursion and consideration to any health care needs.	P	As needed

Activity/Issue	Hazard Identification & Associated Risk <small>Type/Cause</small>	Assess Risk <small>Use matrix</small>	Elimination or Control Measures	Who	When
Peer group	Alienation from peer group where the group becomes aware of biological sex; dealing with sense of betrayal from those who did not know the student's birth gender.	High	Student to be involved with peers of his identified sex in any activities that may be segregated by sex such as sport and health education  Staff to be reminded of the school anti-bullying and anti-discrimination policies. Assist student in developing communication strategy with friendship group. New or revised risk management plan to be devised in response to situational changes or developments. Group discussions of differences and toleranc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f awareness of birth gender becomes an issue. Involvement of school counsellors in developing a process should the need arise.	DP(C) P  Counsellor P &  Counsellor  YA	Now & review T1 2019  As needed As needed As needed As needed
Staff	Inappropriate talk amongst students and/or staff Inadvertent discrimination	Medium	All staff briefed and made aware of the privacy legislation and the confidentiality of the information disclosed to them. Staff should also be reminded of their obligations under the Code of Conduct.  Staff briefed on group discussions and strategies in place should birth gender of student become common knowledge among students  Script developed (in consultation with Educational Services staff, Student Engagement and Interagency Partnership, and Legal Services) for staff in responding to questions from other students. Statement of school values made available to all staff including casual staff.	P  P  P/ Counsellor	Now, & beg. each semester  As needed  As needed  Now
Community	Disclosure of student's situation to students and community	High	Developed media strategy in consultation with DEC Media unit	P	Now

Plan prepared by: \_\_\_\_\_ Position: \_\_\_\_\_ Date: \_\_\_\_\_

Prepared in consultation with: \_\_\_\_\_ Communicated to: \_\_\_\_\_